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3. 음서제

Ⅳ. 관리 등용제도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고려시대의 관리 등용방식에 대하여《高麗史》권 73의 선거지 서문에는, "비록 名卿 大夫라 하더라도 반드시 科目으로 진출하는 것만은 아니었으니, 과목 이외에 또 遺逸의 薦擧와 門蔭에 의한 敍用, 成衆愛馬의 選補, 南班·雜路를 통한 陞轉 등이 있어 진출하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① 科學(科目),② 遺逸의 薦擧,③ 蔭敍(門蔭),④ 成衆愛馬의 選補,⑤ 南班을 통한 陞轉,⑥ 雜路를 통한 陞轉의 6가지 방식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벼슬길은 잘 알려진대로 과거와 음서였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따로이 마련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遺逸의 천거는 학식과 재능·덕행이 뛰어났으면서도 가세 등이 미약하여 仕官치 못하고 있는 인물을 천거에 의해 특별히 등용하는 제도였다. 그리하여 고려에서는 성종 11년(992) 이래로 가끔 敎令을 내려, 兩府宰樞・臺省의侍臣 및 지방관 등으로 하여금 경향 각지에 묻혀 있는 현량한 인재의 천거를 명하고 있는데,1) 하지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지는 의문시되는 점이 없지 않다. 강력한 문벌적 기반 위에 서 있던 당시 사회에서 그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기 어려웠을 뿐더러2) 시행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마 이제도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나 짐작된다.

다음 또 하나의 방식으로 들어진 成衆愛馬의 選補에 대해서 찾아 보면, 고

^{1)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凡薦擧之制,

²⁾ 金翰奎, 〈高麗時代의 薦擧制에 대하여〉(《歷史學報》73, 1977).

려 전기에는 成衆官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특수한 벼슬이 있었는데3) 그것을 통한 고위 관직으로의 진출을 거론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중관은 구체적으로 內侍를 비롯하여 茶房・司楯・司衣・司彛 등을 일컬었거니와,4) 이들은 궐내의 여러 일을 담당하는 宮官이었다. 예컨대 다방의 경우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茶의 출납을 관장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점5) 등으로 미루어 그와 같이 추측되는 것이다. 이 같은 근무지와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들의 선발 자체도 世籍과 才藝・容貌 등을 두루 살펴 뽑았지마는, 특히 내시는 글자 그대로 국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近侍職이었으므로 귀족의 자제 등이 주로 발탁되었다.6) 그리하여 이들 내시를 중심으로 하는 성중관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거쳐 쉽사리 관로에 들어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뒤에 고려와 몽고와의 관계가 긴밀하여지면서 저들의 숙위 임무를 맡은 애마와 성중관이 합쳐져 성중애마라는 칭호의 성립이 있게 된 것 같다.7) 아마 고려의 성중관들이 숙위의 일도 맡아서 성격상 몽고의 애마와 유사했으므로 두 칭호가 결합되어 그같은 말이 생겨나게 된 듯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成衆愛馬의 選補'는 고려 후기의 상황을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고려 전기부터도 그것이 관인 등용의 한 통로로 구실한 것은 사실이었다.

또 다른 통로로 지적된 南班과 雜路는 실제로 하급의 관원과 東屬의 仕路 였다. 즉 이들 중 남반은 왕명의 전달, 殿中의 당직 및 조회에서의 儀衛 등을 맡은 內僚職으로 掖庭局 소속의 內殿崇班(정7품) 이하의 직위가 그것이었는

³⁾ 朴孝信、〈高麗時代의「内侍」-ユ의 獨自性과 別稱-〉(《駿台史學》19, 1966).

^{4)《}高麗史》권 75, 志 29, 選舉 3, 銓注 成衆官選補之法. 이에 대해서는 曹佐鎬, 〈麗代南班考〉(《東國史學》5, 1957), 5~9쪽 참조.

⁵⁾ 周藤吉之、〈高麗初期의 内侍・茶房과 明宗朝 以後의 武臣政權과의 關係-宋의 内侍・茶房과의 關連에 있어서-〉(《東方學》55, 1977;《高麗朝官僚制의 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80, 473零).

⁶⁾ 金昌洙、〈麗代 内侍의 身分〉(《東國史學》11, 1969). 周藤吉力、위의 책.

朴漢男、〈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高麗前期 東萊鄭氏家門을 中心으 로ー〉(《首善論集》8, 成均館大 大學院, 1984).

⁷⁾ 金昌洙,〈成衆愛馬考-麗末鮮初 身分階層의 一斷面-〉(《東國史學》9·10, 1966), 24~25等.

韓永愚,〈朝鮮初期의 上級胥吏「成衆官」-成衆官의 錄事로의 一元化過程-〉 (《東亞文化》10,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1971), 8쪽.

데, 이들은 7품을 限職으로 하고 있었다.8) 그리고 雜路 역시 말단 이속인 注膳·幕士·所由·門僕·電吏·杖首 등 잡류의 仕路로서 이것도 品官線을 상한으로 하여 胥吏 신분에 묶여 있는 吏族의 진출로였던 것이다.9) 따라서 남반이나 잡로를 통한 陞轉이 고위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지 서문에 이것들이 名卿大夫로 진출하는 한 방안으로 든 것은 역시 고려 후기의 상황을 두고 한 설명인 듯싶다. 고려 후기에 접어 들어 관제의 문란과 함께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남반·잡류 출신들도 고위적으로 올라 가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지 서문의 설명은 실제 상황에 꼭 들어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는 고려 전기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관리의 등용 방식은 여기에서 거론된 것 이외에도 吏役을 통하거나 무공 등 특별 유공자들에 대한 서용을 비롯해 여럿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10) 이런 점에서 선거지 서문의 설명은 얼마간의 제약성을 지니는 것이지만, 그것들이관리 등용 방식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면 아래에서그 중 가장 으뜸되는 방식으로 지적된 과거부터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朴龍雲〉

2. 과 거 제

1) 과거제의 도입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국가고시제인 科學가 처음으로 도입, 실시된 것은 널리 알려진대로 광종 9년(958)이다. 이 때의 과거제 도입은 우리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채택한 정식 국가고시제였고, 외국인인 後周 출신 雙冀의 건

⁸⁾ 曺佐鎬, 앞의 글, 11~12쪽.

李丙燾,〈高麗南班考〉(《서울大論文集》人文 社會科學 12, 1966), 162等.

⁹⁾ 洪承基,〈高麗時代의 雜類〉(《歷史學報》57, 1973), 69~76쪽.

¹⁰⁾ 朴菖熙, 〈高麗時代「官僚制」에 대한 고찰〉(《歷史學報》 58, 1973), 49쪽.

의에 의해 중국의 제도를 이끌어다가 시행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수용·정착되어 이후의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던 이 과거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도입의배경부터 살피기로 하는데,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광종 9년 당시까지의 국내 정치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고려는 건국한 이래로호족과 그 출신의 武勳功臣들 세력이 매우 강하여 왕권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거니와, 광종은 그 같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정치를 단행하는데 과거제의 도입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는 한문학이나 유교 경전의 능력을 시험하여 그 성적에 따라 관인을 선발하는 제도였으므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커다란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무훈 공신들의 세력은 자연히 약화되는 대신에 군주에게 충성을 본분으로 하는 신진인사들이 기용되어 왕권은 안정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

더구나 이 제도의 시행을 건의한 쌍기가 군주권의 확립을 위해 제개혁을 단행한 후주 世宗의 혁신정치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데서 그 목적은 한층 뚜렷해진다. 이런 연유로 해서 과거 이외에도 광종이 시행한 여러 혁신적 정치에는 쌍기가 깊이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거니와, 2) 하여튼 그의 건의는 왕권을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시의 적절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광종은 그를 높은 자리로 발탁하여 과거제를 적극 추진시켜 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쌍기를 비롯한 중국의 귀화인들은 고려에 어떤 세력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혁신정치를 단행하여 가는 데는 안성마춤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왕권과 밀착된 가운데 개혁정치를 주도하는 한 세력으로 활약하였거니와, 과거제는 이와 같은 배경위에서 도입, 시행될 수 있었다.

과거는 중국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하여 온 제도였다. 거기에다 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에 대해 상당한

¹⁾ 金龍德, 〈高麗 光宗朝의 科擧制度 問題〉(《中央大論文集》4, 1959), 147~148쪽.

姜喜雄、〈高麗初 科學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 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261~267等.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출발부터 어느 정도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맨 처음 실시된 광종 9년의 科試에서 製述科(業)와 함께 明經科(業), 그리고 雜科(業)의 하나인 卜業의 及第者를 낸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광종은 처음 과거제를 도입한 때로부터 18년간 재위하면서 8회의 과시를 設行하였는데, 그 실시 상황과 급제자에 대해 간략하게 도표로소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3)

〈丑 1〉	光宗朝의	科擧	設行과	及第者

區分	考試官	科業別 及第者數		者數	集団金利 TA 対 大/3年 L)	
施行年	(知貢擧 등)	製述科	明經科	雜 科	製述科 及第者(進士)	
① 9년(958)	雙 冀	2	3	2(卜業)	崔暹(慶州 出身?) ⁴⁾ 晋兢(郷貢으로 及第.南原出身)	
② 11년(960)	"	7	1	3(醫業)	範(慶州 出身?) (內議令 弼의 子.利川出身)	
③ 12년(961)	"	7	1		王擧	
④ 15년(964)	趙翌	1	1	1(卜業)	金策(三重大匡 峻의 子. 光陽 出身)	
⑤ 17년(966)	王 融	2			崔居業	
⑥ 23년(972)	王融・金柅	4			楊演 柳邦憲(郷貢으로 及第.全州出身)	
⑦ 24년(973)	王 融	2			白思柔(稷山 出身)	
⑧ 25년(974)	"	2			韓藺卿(楊州 出身)	
?	?				崔亮(慶州 出身)	
계		27인	6인	6인	12인	

이상과 같은 광종대 과거제의 운영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급제자수가 극히 소수였다는 점이다. 보다시피 18년간 8회의 시행에서 進士인 제술과 급 제자가 27인이며, 명경과와 잡과의 급제자까지 합해도 39인에 지나지않고 있

³⁾ 이 도표는 《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選場條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姜喜雄의 위의 글 및 吳 星, 〈高麗 光宗代의 科擧合格者〉·金塘澤,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田柴科〉(《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의 두 논문과 필자가 작성한 〈科試 設行과 製述科 及第者〉(《高麗時代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一志社, 1990), 328~330쪽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⁴⁾ 崔暹에 대해 姜喜雄과 吳星은 각기 위의 글 278쪽과 33쪽에서 慶州출신으로 집작한데 비하여 金塘澤은 역시 위의 글, 49쪽에서 靈巖출신으로 추정하였다.

다. 이중 과시의 중심이었던 제술과 급제자를 가지고 따져 보면 1회 평균 3.4인이 급제하고 있는 셈이며, 年平均으로는 1.5인에 불과하여 고려 전기간 의 1회 평균 25.3인, 연 평균 14.6인과5) 비교해 아주 적은 숫자인 것이다. 이 러한 결과를 낳게 된 이유는 몇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급제자를 엄선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급제자의 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의미도 될 듯싶다.6) 한데 이러한 운영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급제자 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지역별로 보아 신라 계통의 경주 출신이 2~ 3인. 후백제 계통이 3인 내외, 그리고 近畿地方 출신이 3인으로 비교적 골고 루 분포되어 있고,7) 또 徐熙와 金策처럼 중앙의 고위관료 자손이 있는가 하 면 晋兢・柳邦憲처럼 鄕貢 출신도 있어 주목된다. 결국은 過去 적대적 관계 에 있었던 지역이나 또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정선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왕권은 이들에게서 물론 충성스러운 봉사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종래 국가에 공로가 많고 지위가 높은 관 료 자손 중심으로 사람을 쓰던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서 과거제 수용의 목 적이나 그 기능을 이런 데서도 살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당시의 급제자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은 과거제 도입의 목적이 제한적이었음도 나타낸다. 그것은 과거제가 기존의 관리 등용제도를 그렇게 크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8) 이런 측면에서 도입·수용 시기의 과거제는 일정한 제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일면 광종이 기존의 질서와 충돌을 피하면서 과거제를 조속히 고려화하여 정착시키려던 의도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제4회의 과시에서 이미 쌍기를 물러 가게 하고 고려인 趙翌을 知貢擧로 임명하고, 2회의 과시에서 급제한 宰相 徐弼의 아들 徐熙를 초임에 廣評員外郎이라는 높은 자리에 발탁하고 있으며, 9 또 4회의 과시에서 급제한 三重大匡 金峻의

⁵⁾ 朴龍雲, 〈高麗時代의 科擧-製述科의 運營-〉(앞의 책, 1990), 271~272쪽.

⁶⁾ 姜喜雄, 앞의 글, 269쪽.

⁷⁾ 吳星, 앞의 글, 33~38쪽. 구체적인 숫자에는 이와 약간의 차가 있다.

⁸⁾ 姜喜雄, 앞의 글, 267~270쪽.

^{9) 《}高麗史》권 94, 列傳 7, 徐熙.

아들 金策에게도 특별히 은사를 베풀고 있는 것¹⁰⁾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짐작된다.

아울러 과거제 도입의 성공에는 고려사회가 그것을 수용할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신라 이래로 오랫 동안 쌓아 온 교육과 학문적 수준이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거제를 수용할수 있게 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¹¹⁾ 이 같은 높은 학적 수준은, 광종 당시에는 서울이나 지방이 유사했던 것 같다.¹²⁾

어떻든 이렇게 하여 도입 수용된 과거제 운영의 방식은 이후에도 비슷하였다. 그러다가 성종 8년(989)을 계기로 급제자수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는 학문적 전통이 비교적 얕은 호족 계통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거니와,¹³⁾ 그 후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생기면서 과거제는 하나 하나 정비되어 갔다.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과거제도가 실시된 처음의 얼마 동안은 고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였다. 중앙 관리의 자제인 國學生이나 지방 출신의 鄕貢을 막론하고 예비고시 단 계를 거침이 없이 곧장 본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기반이 잡히고 관료체제가 갖추어지면서 과거제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고시로 생각되는 國子監試의 설치였다. 이에 대해서는《高麗史》권 74, 선거지 2, 과목 2, 국자감시조에, "곧 進士試이다. 덕종이 처음 설치하였고, 賦 및 六韻詩・十

^{1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凡崇獎之典 광종 15년.

¹¹⁾ 姜喜雄, 앞의 글, 277쪽.

¹²⁾ 許興植,〈高麗 科擧制度의 成立과 發展〉(《韓國史研究》10, 1974;《高麗科擧制度史研究》,一潮閣, 1981, 14~16等).

¹³⁾ 李基白, 〈科擧制와 支配勢力〉(《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175쪽.

韻詩로 시험하였다. 그 후 혹 成均試라 칭하기도 하고, 혹 南省試라고도 하였 다. … 충숙왕 4년에는 九齋朔試로 대신케 하였으며, 7년에는 擧子試라 칭하였 다"고 하여 그의 설치 시기는 덕종 때(즉위년)이며,14) 성균시 · 남성시 · 거자시 등의 異稱이 있었음도 전해 주고 있다. 그 후의 조사에 의하여 국자감시는 司 馬試・舉子科・南官試・百字科 등으로도 불리었음이 확인되었거니와.15) 그런 데 위에서 이 시험의 성격을 과거의 예비고시라고 설명했지만16) 그와는 달리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얼마 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그것은 과거의 본고시 에 앞서 치러야 하는 예비고시가 아니라 국자감에의 입학 자격시험이었다는 주장이 여러 논자에 의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17) 특히 試官의 문제나 국자 감시 합격자에 대한 고찰 등 다각적인 분석과 고증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주 장도 있어¹⁸⁾ 주목을 끈다. 《高麗史》등의 사서와 문집을 보면 국자감시 및 그 의 異稱과 함께 그냥 감시라고 한 것과 그 앞에 科業名을 붙인 제술업감시ㆍ 명경업감시ㆍ잡업감시ㆍ율업감시 등 다양한 명칭이 찾아지는데. 그 가운데 제 술업감시류가 과거의 예비고시이고. 국자감시 등은 기능이 달랐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監試」라고만 한 명칭은 예비고시 또는 입학 자격시 험의 두 경우가 모두 있는 것처럼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감시는 어느 경우나 국자감시ㆍ성균

^{14)《}高麗史節要》권 3에는 설치한 때가 덕종 즉위년 윤3월로 되어 있다.

¹⁵⁾ 許興植, 앞의 글(1974), 22~27쪽.

⁽高麗의 國予監試와 이를 통한 郷吏의 身分上昇〉(《韓國史研究》12, 1976; 위의 책, 127~134쪽).

朴龍雲, 〈高麗時代 科擧의 考試와 體系에 대한 檢討〉(《韓國史研究》61·62, 1988; 앞의 책, 1990, 149~156쪽).

¹⁶⁾ 曹佐鎬,〈麗代의 科擧制度〉(《歷史學報》10, 1958), 138쪽 및 許與植, 위의 책 (1981), 24쪽 · 趙東元,〈麗代 科擧의 豫備考試와 本考試에 對한 考察〉(《圓光 大論文集》8, 1974, 224~225쪽 · 許與植, 위의 글(1976) 등에 그같은 의견이 피력되어 있다.

¹⁷⁾ 宋俊浩,《李朝生員進士試의 研究》(國會圖書館, 1970), 12쪽. 周藤吉之, 앞의 책, 72쪽.

李成茂,〈韓國의 科擧制와 ユ 特性-高麗·朝鮮初期를 中心으로-〉(《科擧》, 一潮閣, 1981), 92쪽 및 98~99쪽.

申千湜,〈高麗中期 教育理念과 國子監運營-睿宗의 教育改革을 中心으로-〉 (《高麗教育制度史研究》, 螢雪出版社, 1983), 57쪽.

¹⁸⁾ 柳浩錫, 〈高麗時代의 國家監試에 대한 再檢討〉(《歷史學報》103, 1984).

^{----, 〈}高麗時代 進士의 概念에 대한 檢討〉(《歷史學報》121, 1989).

시·남성시 등과 같은 뜻이었던 것 같으며, 또 이들은 제술업감시류와도 성격·기능이 동일한 시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보면 감시나 국자감시 및 제술업감시류는 모두 과거의 본고시인 禮部試(東堂試)에 앞서 치른 예비고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국자감시는 여전히 과거의 예비고시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도 일단은 그와 같이 간주하고 설명을 이어 가도록 하겠다.

예비고시인 이 국자감시는 중앙의 국자감 학생이나 지방의 鄕貢 등이 모두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곧장 이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또 다른 한 단계의 예비고시를 통과해야만 하였다. 界首官試(鄕貢試)가 그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시《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현종 15년(1024) 12월의 判文으로. "諸州縣은 1.000丁 이 상일 경우 3인을 歲貢하고, 500丁 이상은 2인, (그) 이하는 1인으로 하되, 界首 官으로 하여금 試選케 하는데. 제술업은 五言六韻詩 1首로 시험하고 명경업은 五經 각 1机씩을 시험하여 例에 의거해 서울로 보낸다. 그러면 국자감에서 更 試하여(國子監更試) 入格者는 赴擧를 許하고 나머지는 모두 뜻에 따라 本處로 돌아가 학습하게 하되, 만약 계수관이 합당치 못한 사람을 貢擧했을 때는 국 자감이 考覈하여 科罪토록 하였다"고 한 데서 그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 다. 京・都護府・牧의 守令인 계수관은 관하의 향공을 선발하는 책임자이기도 하였는데. 그 選上하는 향공의 숫자는 주현의 크기에 따라 차등이 두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京 가운데 행정상 특별대우를 받던 西京의 경우는 留守官이 따로 선상하는 시험을 관장하였는데,20) 그것은 유수관시 또는 서경시라고 부 르는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시험의 위치는 역시 계수관시와 동일한 단계 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1) 서울인 開京에도 國學生과 私學 12徒生을 제외

¹⁹⁾ 朴龍雲, 앞의 글(1988), 156~172쪽.

^{20)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예종 5년 9월 洵.

²¹⁾ 許興植은 앞의 글(1974), 28~30쪽에서, 西京은 교육수준이 높았던 데다가 分司國子監이 설치됨에 따라 分司國子監試가 設行되었으리라는 점을 들어 留守官試는 開京에서 시행된 國子監試와 같은 단계의 시험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예종 11년(1116)에 둔 分司國子監은 겨우 20년간 존치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유수관시를 줄곧 그 같은 단계로 보는 데는 난점이 없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朴龍雲, 앞의 글(1988), 188~189쪽 참조.

한 일반 유생들이 응시하는 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험은 예에 따라 開京試라 부르지 않았나 짐작된다.²²⁾

이렇게 지방출신의 貢士들은 계수관시(향공시)나 유수관시(서경시) 및 개경시를 초시로 치러 합격한 뒤에 다시 다음 단계의 예비고시인 국자감시에 응시하였다. 그런데 이 때 치르는 2단계의 고시에 대해 위에 든 현종 15년의 판문에는 "國子監에서 更試"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얼마의 시기가지난 문종 2년(1048) 10월의 판문에는 "尚書省의 國子監에서 審考"하였다고²³⁾ 서술해 놓고 있어 이 '國子監 更試'나 '尚書省國子監審考'도 국자감시 또는 제술업감시류하고는 다른 계통의 시험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²⁴⁾ 하지만향공 등이 치르는 '國子監 更試'가 과거 응시자의 대부분이 치르는 국자감시와 달라야 할 뚜렷한 이유는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두 시험은 일시 동일한고시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²⁵⁾ 생각한다.

지금 이와 같이 정리하여 놓고 보면 국자감시는 현종 15년(1024)에 처음으로 설치한 셈이 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선거지 국자감시조에는 이와 달리 덕종 때(即位年)에 처음 설치하였다고 했으므로 양자 간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을 듯싶다. 즉 덕종 즉위년의 것은 중앙의 국자감생을 비롯하여 모든 과거의 응시자들이 이 시험을 거쳐야 했다는 국자감시제의 완성을 뜻하는 내용인데 비해, 이보다 7년 앞서 현종 15년에 제정된 판문은 향공들에게 국자감시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26) 이처럼 국자감시는 얼마 간의 시일을 두고 점차 정비되었다고 생각되거니와, 사실 그것이 처음으로 설치된 때는 현종 15년보다 좀더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27)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현종 15년에 최초로 설치되고, 덕종 즉위년에 이르러 정비를 본 것으로 결론을 내려 둔다.

²²⁾ 이 점에 대해서도 朴龍雲, 앞의 글(1988), 186~188쪽 참조.

^{23)《}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²⁴⁾ 柳浩錫, 앞의 글(1984), 6쪽.

²⁵⁾ 許興植, 앞의 글(1974), 25~27쪽. 朴龍雲, 앞의 글(1988), 184~186쪽.

^{----, 〈}高麗時代의 科學-製述科의 應試資格〉(앞의 책, 207~210쪽).

²⁶⁾ 許興植, 위의 글(1976), 134~136쪽.

²⁷⁾ 朴龍雲, 앞의 글(1988), 190~191쪽.

지방출신들 경우 鄕貢試 등의 초시를 거쳐 다시 국자감시에 응시한 반면서울인 개경의 국자감 학생들은 곧바로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했지마는, 그러나 후자들 역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靖宗 2년(1036) 7월에 제정되는 바 "생도들은 입학한지 3년이 되어야 감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판문이28) 그것이다. 이 판문은 그로부터 70여 년이지난 예종 5년(1110)에 이르러 그와 같이 3년을 재학하는 동안 300일을 출석하여 수학하면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으로29) 바뀌거니와, 아마 유사한위치에 있던 私學 12徒生들도 국자감시에 응시할 경우 이와 비슷한 제약을받았을 듯싶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과거제가 실시된 처음 6, 70년간은 고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擧子들은 본 고시만 치르면 되었다. 그러다가 현종 15년경에 예비고시로서, 지방출신들에게는 계수관시·유수관시·개경시 가운데 하나를 거치게 하고 다시 개경의 국자감에서 주관하는 국자감시를 부과하였으며, 그 얼마 뒤인 덕종 즉위년부터는 서울의 국자감생과 사학 12도생들에게도 국자감시를 부과하여 科試는 3단계 내지 2단계로 분화되었다. 이 때 신설되는 국자감시를 어떤 이들은 제술업감시류나 '國子監 更試'등과 다른 성격의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과거시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는 제도가 정비·발전하여 가는 한과정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과거의 본고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급제를 위해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28) 《}高麗史》 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29) 《}高麗史》권 73, 選擧 1, 科目 1의 "(睿宗 5年) 九月判 ② 製述明經諸業新擧者屬國子監三年 ④ 仕滿三百日者 各業監試許赴"가 그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曺佐鎬, 앞의 글, 138쪽 및 李成茂, 앞의 글, 98쪽, 柳浩錫, 앞의 글(1984), 1 4~15쪽 참조. 한편 許興植은 앞의 글(1976), 28쪽과〈高麗 科擧의 應試資格〉(앞의 책, 1981) 60쪽에서 이와 달리 ②부분과 ④부분을 분리, 해석하여 ②부분은 일단 3년간을 국자감에서 수학한뒤 國子監試에 합격한 進士라 할지라도 다시 더 3년동안 국자감에 소속케 한 다음에야 禮部試에 응시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한 반면 ④부분은 入仕者가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말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옳은 것 같지는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朴龍雲, 앞의 글(1988), 192~193쪽 참조.

시험이었는데, 그것은 禮部試·禮蘭·春官試·春蘭·春場·省試·東堂試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다. 하지만 그 호칭은 여기에서 그치는게 아니었다. 저들이외에도 文科·文蘭·賢科 및 干支를 붙인「△△科」등이 있었으며, 또 進士를 뽑는 製述科와 관련된 것으로「登進士第」・「擢進士第」・「擧進士第」・「中進士第」와 秀才科 등 실로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이다.30)

그 중 禮部試와 禮閱는 과거의 본고시를 주관한 관부가 尚書禮部인 데서비롯된 칭호이다. 고려시대의 모든 과거 업무는 頁院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처리하였거니와, 그것이 곧 예부 소속 부서였던 것이다. 아울러 春官試(春官)·春闈·春場 등도 예부의 주나라 때 이름인 춘관에서 비롯하며, 省試 역시 예부가 尚書省 기구의 하나였으므로 생겨난 명칭이었다.

東堂은 본래 중국 晋나라의 궁전 이름으로서, 科場으로 이용되기도 하여 郤詵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급제한 故事로부터 시험장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한다.31) 이것이 그 경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과거의 본고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줄곧 사용되었다. "穆宗 원년(998) 3월에 思賜 1인을 취하였는데 동당에서 은사를 취하는 것은 이 때로부터 시작되었다"든지,32) "예종 14년(1119)에 동당에서 처음으로 經義를 사용하였다"든지,33) 또는 "충숙왕 2년(1315)정월에 藩王이 동당을 고쳐 應擧試로 하였다"고34) 한 예가 그런 것들이다. 동당을 칭한 사례는 이 밖에도 상당수가 더 찾아지지마는, 그런데 사서나 문집에는 이와 유사한「東堂監試」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느 연구자는 이「東堂監試」가 바로 과거의 본고시를 뜻하는 용어였다고 설명하여35) 많은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或者는「동당감시」가 본고시를 뜻하는 하나의 용어였던 게 아니라 실은 본고시를 의미하는 동당과 예비

³⁰⁾ 許興植, 앞의 글(1977), 21~23쪽. 사龍雲, 위의 글, 125~149쪽.

³¹⁾ 諸橋轍次、《大漢和辭典》6,190等. 中華學術院印刊、《中文大辭典》5,21等. 《晋書》 型 52,列傳 郤詵.

^{32)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恩例.

^{33)《}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³⁴⁾ 위와 같음.

³⁵⁾ 曺佐鎬, 앞의 글, 127쪽.

고시를 의미하는 감시의 합성 문구였다고 해석하고 있거니와,36) 「동당감시」가 본고시를 뜻하는 용어였던 게 아닌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며, 반면에 東堂 내지 東堂試는 본고시를 의미하는 용어였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므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文科·文闌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武科와 대칭되는 칭호였다. 그러나고려시대에는 무과가 대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것이설치된 시기는 몇몇 해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과거라고 하면 곧 문과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굳이 문과·문위라 표현하지 않아도 좋았을 듯싶은데, 실제로는 그같은 용어를 써서 과거의 본고시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賢科는 글자 그대로 어진 인물을 뽑는 科試라는 정도의 뜻을 지녔던 것 같은데, 이역시 과거의 본고시를 나타내는 용어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특별한 칭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려 때는 과거가 실시된 해의 간지나 왕대를 써서 본고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丙寅科」・「癸丑科」 또는 「文宗八年科」 등이 그런 예들이다.37)

그리고 특히 제술과와 관련하여서는 「登進士第」・「擢進士第」・「擧進士第」・「中進土第」 등으로도 표현되었다. 이는 진사를 뽑는 제술과에 등제・탁제・거제・중제하였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곧 그 과정의 본고시에 급제하였다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었던 것이다. 진사는 원래 명경과 상대되는 위치에 있던 科業과 관계된 용어였으므로 예비고시나 본고시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는 동일하게 이 칭호가 주어졌다.38) 그에 따라 진사에 대한 이해를 둘러 싸고 약간의 혼란도 없지 않았지마는, 위에 예시한 「등진사제」 등은 모두본고시에 급제하였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秀才科는 원래 중국의 隋와 唐에서 설치했던 과업명이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이를 과업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에는 그것이제술과의 본고시를 뜻하는 명칭으로 쓰여진 몇몇 사례가 찾아지고 있다. 아마 수재과가 수·당에서는 으뜸되는 과업이었으므로 고려에서의 제술과도 그

³⁶⁾ 朴龍雲, 앞의 글(1988), 125~132쪽.

³⁷⁾ 朴龍雲, 위의 글, 139~140쪽.

³⁸⁾ 朴龍雲, 위의 글, 140~141쪽. 柳浩錫, 앞의 글(1989).

러한 과업이라고 추켜 세우는 뜻에서 그같이 표현한 게 아닐까 추측된다.39) 끝으로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進士科라는 명칭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종래 그것은 본고시였다는 설명과40) 예비고시였다는 주장 으로41) 엇갈려 왔다. 그 중 과연 어떤 이해가 정당했을까. 실례를 찾아 보면 그것은 고려 전기에는 거의 쓰이지 않다가 후기에 들어와 가끔 눈에 띄는데, 모두가 예비고시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사용에도 역시 매우 조심함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주로 과거의 본고시를 나타내는 용어·표현들에 대해 검토하였는데,이 시험에는 물론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들이 다시 응시하였다. 그러한부류로 앞 대목에서 지방출신의 향공 등과 중앙의 국자감생 및 12도생을 지적한 바 있지마는,아마 鄕吏와 胥吏 자신들도 그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같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들 가운데에서 향리의 자손이 아닌 본인들 경우에만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42) 그러나실례를 보면,'吏로서 登第하였다'든지, 또는 '본래 △△ 지역의 吏였는데 登第하였다'고 한 표현 등이 여럿 눈에 띄는 것으로 미루어 향리 자신들 역시 서리처럼 국자감시를 거쳐 다시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지 않았나 집작된다.43)

그런데 어떤 부류는 이 예비고시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고시에 응시하기도하였다. 그 하나로 국자감생 가운데 考藝試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고예시란 국자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종의 성적고시로서,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본고시에 直赴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아예 그 시험의 初場 내지 中場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44) 아

³⁹⁾ 朴龍雲, 위의 글, 147~148쪽.

⁴⁰⁾ 曺佐鎬, 앞의 글(1958), 127쪽. 宋俊浩, 앞의 책, 11~13쪽.

⁴¹⁾ 許興植, 앞의 글(1974), 22쪽 및 24쪽.

^{----,} 위의 글(1976), 131~132쪽.

⁴²⁾ 李成茂, 〈朝鮮初期 文科의 應試資格〉(《國民大 論文集》9, 1975), 83쪽. 許興植, 위의 글(1976), 146~155쪽.

^{----,} 위의 글(1974), 82~84쪽.

⁴³⁾ 朴龍雲, 앞의 글(1990), 212~216쪽.

⁴⁴⁾ 許興植, 앞의 글(1974), 34쪽. 朴龍雲, 위의 글(1988), 167~168・193쪽.

마 이러한 특전은 入齋考試인 升補試-麗末의 生員試-에 합격하여 齋生(生員)이 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어졌을 듯싶은데,45)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아울러 충숙왕 4년(1317)에 이르러 9齋朔試로서 국자감시를 대신케 한 사실과 연관하여 볼 때 사학 12도생들에게도 유사한 조처가 있지 않았을까 집작되나46) 역시 그 내용은 분명하지가 않다.

예비고시를 치르지 않고 곧 바로 본고시에 응시한 또 다른 부류는 在官者들이었다. 고려 때는 원칙상 權務官으로부터 7품관까지를 각기 하한과 상한으로 하여 그 사이의 하급관원들에게는 예비고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본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하한선에만은 융통성을 두지 않았으나 상판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6품 또는 5품까지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赴試를 허락하였으므로 다수의 재관자들이 예부시에 직접 응시・급제하고 있는데,47) 이는 科學와 蔭敍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실인만큼 한층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예부시·춘관시·동당시 등으로 불리운 본고시는 擧子들이 급제를 위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따라서 과거제의 도입과 더불어 처음으로 설행된 시험은 본고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예비고시가 신설되어 이 시험은 제3 내지 제2단계의 고시가 되었고, 거기에는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와 제생·생원 및 재관자 등이 응시하였지마는, 그것은 과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의 고시였다.

(2) 복시ㆍ친시의 설행

禮部試(東堂試)는 최종 고시의 성격이 강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시험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부 시 급제자들을 대상으로 국왕이 친히 시험하는 覆試가 따로이 설치되곤 하 였던 것이다.

이 복시가 처음으로 설행되는 것은, "(성종 2년 12월)에 명하여 진사를 취하

⁴⁵⁾ 許興植, 위의 글, 34쪽. 차龍雲. 앞의 글(1990). 218쪽.

⁴⁶⁾ 朴龍雲, 위의 글.

⁴⁷⁾ 許興植, 앞의 글(1981), 74~75・79~80쪽. 朴龍雲, 위의 글, 218~219쪽.

게 하고, 왕이 臨軒해 복시하여 姜殷川 등 3인과 明經 1인에게 급제를 주었는데, 복시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은천은 곧 邯贊이다"라고 전하듯이⁴⁸⁾ 성종 2년(983)이다. 이 자료는 그 밖에 복시가 당해 과거의 예부시에서 이미급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왕이 친히 주재하였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어서 주목되는데, 어떤 연구자는 이번의 복시가 常例의 예부시가 아닌 임시 특설의 과거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시험이었으므로 통상적인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달랐다고 말하고는 있지만,⁴⁹⁾ 복시의 기본적인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처럼 성종 2년부터 시작된 복시는 그 후 간헐적이기는 했으나 계속되어 예종 15년(1120)까지 34회가 설행되었다. 그런데 복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원칙적으로는 당해 예부시의 급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던 만큼 及落과는 관계가 없었고, 다만 시ㆍ부를 가지고 재시험하여50) 급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혹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였다. 예컨대 예종 10년에 설행된 복시는 예부시 합격자에 대한 성적 사정이 잘못되었다는 낙제자의 호소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그 시험에는 낙방자들도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다음해의 복시 에서는 그 때의 예부시 합격자 24명과 함께 전번의 御試에 응시했던 10인과 鎖廳 4인 및 진사로 여덟 번응시했다가 不第한 20인과 別喚 4인 등 모두 62인에게 응시하게 하여 그 중 38인만 급제시키고 있다.51) 이 두 차례의 복시에서는 예부시 합격자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낙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52) 그러나 이것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대체적으로는 원칙대로 시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복시의 설행은 과시에 대한 왕권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예종 11년의 예처럼 당해년의 예부시 합격자 이외에

^{48)《}高麗史節要》 권 2, 성종 2년 12월. 같은 사실을 알리는《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選場條에는, "(成宗二年) 十二月 正匡崔承老・左執政李夢 游・兵官御事劉彦儒・左丞盧奕 取進士 王覆試 賜甲科姜殷川 乙科二人 明經一人 及第"로 되어 있다.

⁴⁹⁾ 柳浩錫、〈高麗時代의 覆試〉(《全北史學》8. 1984), 32쪽.

^{50)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성종 2년.

^{51) 《}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凡選場 당해 년월조.

⁵²⁾ 柳浩錫, 앞의 글(1984a), 41~42쪽.

도 여러 사람들을 응시케 한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원칙대로 시행된 때라 하더라도 복시를 설행함으로써 과시에 국왕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게 마련이었으며, 이는 試官(知貢擧・同知貢擧)에 대한 견제적 의미도 동시에가지는 것이었다.53)

그러나 복시 설행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과시를 공정하게 시행한다는 의미도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54) 그 점은 위에 들어 두었듯이 예부시의 성적 사정이 잘못되었다는 낙방자의 호소에따라 설행된 예종 10년의 복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비록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복시의 시행으로 과시의 공정성이 한층 보강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집작이 가는 일이다.

아울러 그것은 文風을 진작시키고 유학을 장려한다는 의미도 지녔던 듯하다. 복시를 실시하는 자리에 太子와 宰樞·文翰官들을 불러 모아 주연을 베풀고 시를 짓게 하거나, 그 급제자들에게 국왕이 은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데서⁵⁵⁾ 그같은 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모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 복시였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예부시 합격자의 급제 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고시였고, 시기적으로도 성종대부터 예종대까지만 시행되는 데 그치고 있다. 더구나 그 기간에도 매번의 과시 때마다 설행된 것이 아니라 전체 87회의 예부시가 시행되는 사이에 복시는 34회만 열려56) 대략 4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복시는 상당한 제약성도 지닌 것이었다.

사서에 볼 것 같으면 복시와 함께 親試도 간혹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성격의 고시였을까. 그 한 예가 "경종 2년(977) 3월에 進士를 親 試하여 甲科로 高凝 등 3인과 乙科 3인에게 급제를 주었다"고57) 한 것인데,

⁵³⁾ 許輿植, 앞의 글(1974), 35~37쪽. 柳浩錫, 위의 글, 32・48쪽.

⁵⁴⁾ 曺佐鎬, 앞의 글(1958), 128쪽.

⁵⁵⁾ 柳浩錫, 앞의 글(1984b), 49쪽.

⁵⁶⁾ 許興植, 앞의 글(1974), 37쪽 및 柳浩錫, 위의 글, 33쪽의 통계와 약간의 차이 가 나는 것은, 문종 19년에 設行되었다가 폐지된 경우 같은 것을 계산에 넣느냐의 여부 등에 의한 것이다.

^{57)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選場.

이런 점은 복시와 친시의 관계에서도 비슷했다고 이해된다. 두 시험은 역 시 국왕이 친히 주재했다는 데서 공통성이 찾아지나 그 내용이나 성격은 상 당히 달랐던 것이다.

(3) 과거 3층제의 성립

國子監試와 禮部試(東堂試)를 주축으로 하여 鄕貢試와 覆試 등이 추가로 부과되기도 했던 고려시대 과거의 체계는 공민왕 18년(1369)에 이르러 변혁을 맞게된다. 즉 이 해에 "元朝의 鄕試・會試・殿試制度를 채용하고, 정하여常式으로 삼았다"고61) 한 바와 같이 향시・회시・전시의 科學三層制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민왕 18년부터 과거 지망생은 이전과는 달리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제1단계로 향시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시험은 반드시각자의 본관지 해당 道에 가서 응시토록 되어 있었는데,62) 이 향시의 기능은 종래의 향공시와 서경시·개경시 및 국자감시의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고시

^{58)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選場.

^{59) 《}高麗史》 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選場.

⁶⁰⁾ 이상의 사례에 대한 설명은 柳浩錫, 앞의 글(1984b), 19~24쪽 참조.

^{61)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공민왕 18년.

^{62)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공민왕 23년 3월.

였다고 이해된다. 국자감시는 이보다 한 해 전인 공민왕 17년에 이미 폐지되고 있지만, 그것은 이러한 제도의 변혁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⁶³⁾ 단 이번에도 在官者들만은 예외를 인정하여 따로이 開京試-종래 개경 출신일반 유생들이 치르던 개경시와 명칭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고시-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이들이 치른 당해 시험은 開京鄉試와 동일한 초시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그 체제만은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향시에 합격한 學子들은 다음으로 중앙 관부인 예부에서 주관하는 會試에 응시하였다. 그러므로 개편된 회시는 종래의 예부시에 해당하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64) 이어서 회시 합격자는 다시 殿試를 치러야만 하는데, 그것은 고려 전기에 시행되던 복시와 성격·기능 등이 같은 고시였다.65) 그러나복시의 경우 상례로 설행되지는 않았던 데 비하여 전시는 과거 3층제에서의 최종단계 시험으로 급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으므로 그의 위상이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니는 이번 과거제 개혁의 특징은, 우선 첫째로 과시에서 經學이 더욱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 전시가 정규화되어 과시에서 왕권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는 점도 큰 특징이었다. 셋째로 과거의 체계가 일원화되어 더욱 정제되었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가 없다.

공민왕 18년(1369)은 잘 알려진 대로 그가 승려인 辛旽을 등용하여 제2차의 개혁정치를 단행하던 시기이다. 이 때의 혁신정치는 정치적·사회경제적 측면에 중점이 두어졌었지마는, 그에 앞서 교육제도나 학풍에 혁신이 일고 있었다. 이미 충렬왕 때에 주자성리학의 전래와 더불어 국학의 진흥운동이 있었지만, 공민왕조에 들어 와 크게 부상한 新進士類 세력이 신돈과 타협하여 왕

^{63)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國子監試 공민왕 17년 및 《高麗史節要》권 25, 공민왕 17년 2월. 이들 사료에는 辛旽과 宦官인 李剛達이 試官의임명 문제를 둘러 싸고 서로 다투었으므로 그를 미워한 왕이 아예 제도를 혁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었을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해에 있을 科擧制의 전면적인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許興植, 앞의 글(1974). 73쪽 참조.

⁶⁴⁾ 許興植은 앞의 글(1981), 73쪽에서 會試를 國子監試에 비긴 반면, 柳浩錫은 앞의 글(1984b), 28쪽에서 禮部試에 비기고 있는데, 후자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된다. 65) 柳浩錫, 위의 글, 28~29쪽.

16년에 成均館을 重營하는가 하면 6經 4書齋도 分設하는 것이다. 그리고 李穡을 중심으로 하여 金九容・鄭夢周・朴尚衷・朴宜中・李崇仁 등 신진 士人들이 學官을 맡아 새로운 방법으로 경서를 강론하여 경학이 크게 일어나게되는데, 과거제의 개혁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과 과거 자체가 지니고 있는 페단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이다.66)

그러므로 과거 3층제는 공민왕이 시해되고 구세력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게 되는 우왕 2년(1376)에 이르러 폐지된다.67) 그후 威化島回軍으로 신진사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창왕 즉위년(1388)에 부활되지마는,68) 이처럼 과거 3층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실 공민왕 말년의 몇 년과 창왕・공양왕 때의 몇 년간에 걸쳐 시행된 데 지나지 않았다는 시간상의 한계성을 지닌다.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위의 설명은 모두 문과에 관한 것이었거니와, 무과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와 상대되는 입장에 있는 무신을 선발하기 위한 과거였다. 그런데 사실고려시대의 무과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했지마는, 비록 그렇기는 해도 예종 때에 와서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왕 4년 (1109)에 이르러 국학 진흥책의 단행과 함께 여진과의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두는 7齋 가운데 하나인 講藝齋와 관계가 깊다. 하지만 문반 중심의 貴族制社會였던 당시에 武學齋인 강예재는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같은 왕 11년 4월에 문무 양학은 국가 교화의 근원으로서 유학재와 함께 무학재를 세워서 諸生을 양육하여 將相의 擧用에 대비코자 하는데 유사가異論을 고집해 定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속히 정하여 아뢰고 시행하라는 制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⁶⁹⁾ 미루어 이를 집작할 수 있다. 이같은

⁶⁶⁾ 이에 대해서는 許興植, 앞의 글(1974), 44~50쪽 및 朴龍雲, 앞의 글(1988), 201쪽 참조.

^{67)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신우 2년 5월.

^{68)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69)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制가 있은지 4년째 되는 예종 15년(1120) 5월에 韓安仁을 知貢擧로, 金富佾을 同知貢擧로 하는 예부시가 시행되어 진사를 취하고, 이어서 복시가 설행되어 李之氏 등 38인에게 급제를 줌과 동시에, "이 과거에서 武學生도 對策으로 시험한" 사실이 전하는데,70) 이것이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시행된 무과인 것이다. 보다시피 이번의 무과에서는 급제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가 없지만 이 때에 과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기가 지난 인종 11년(1138)에 이르러 문무 양학간에 불하가 초래된다는 명분 아래 무학재는 폐지되고 만다. 그런데 그같은 조처를취하면서 내린 判文에 의하면, "武學齋의 생도는 赴擧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책론에 비록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응분의 수에 따라 選取하여 급제하기가 매우 쉬웠으므로 여러 학생들이 다투어 무학에 속하여 근본을 버리고 末業을 좇는다"거나, "지금부터는 이미 등제한 자는 文土와 마찬가지로 叙用하되무학으로 取土하는 것"은 停罷하라고71) 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간에도 몇 차례 더 무과가 설행되어 급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잠시 시행되다가 폐지된 무과는 그후 공민왕 원년(1352)에 이르러다시 설행하자는 논의가 나왔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공양왕 2년(1390)에 와서야 都評議使司의 奏請으로 다시 설치하도록 결정되었지만,72) 그 2년 후에 나라가 망하므로 이 역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못되고 말았다.

僧科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였다. 이 승과도 광종조에 처음으로 설행한 이후 계속되는데,⁷³⁾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 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制科라는 명칭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고려인이 중국의 과거를 가리킬 때

^{70)《}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選場.

^{71)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인종 11년 정월.

^{72)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科目 2, 武科. 이 무과에 대해서는 申千湜, 〈高 麗時代 武科와 武學〉(《軍史》7, 1983) 참조.

⁷³⁾ 李載昌,〈高麗佛教의 僧科·僧錄司制度〉(《朴吉真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圓 光大出版局, 1975).

許興植, 〈高麗의 僧科制度와 그 機能〉(《歷史敎育》19, 1976: 앞의 책).

사용하는 일종의 범칭이었다.74) 그리하여 《高麗史》 권 74, 선거지 2, 과목 2에는 制科條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마는, 여기에는 고려인으로서 중국의 과거에 응시·급제한 내용을 기술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제과는 고려의 과거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1) 제술과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고려시대에 문반관료와 기술직을 선발하기 위한 과업은 제술과와 명경과, 그리고 잡과였다. 그러면 이들 각 과업의 고시과목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살피기로 하겠는데, 그중 가장 중시되었던 製述科의 과목부터 알아보면 우선 鄕貢試 등의 초시에서는 5 言6韻詩 1수가 부과되었음이 확인된다.75) 그리고 이어서 치른 製述業監試에 대해서는 《高麗史》권 74, 선거지 2, 과목 2, 國子監試條와 國子試之額條에 보이듯이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6운시와 賦나, 아니면 10운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는 제도였다고 이해된다.76)

이러한 예비고시를 통과한 擧子들이 치르는 본고시인 禮部試製述業(東堂試製述業)의 과목에 관해서는 《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등에 비교적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즉 그것에 의하면 과거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광종 9년(958)에는 詩・賦・頌・時務策이 고시과목이었던 것을 알 수 있거니와, 그 2년 뒤인 왕 11년에는 그 중 시무책이 제외되었다가 다시 왕 15년에 추가되며, 성종 6년(987)에는 송이 제외되고 있다.

그러다가 고시과목을 포함한 과거제에 큰 폭의 개정이 있는 것은 목종 7

⁷⁴⁾ 柳浩錫,〈高麗時代의 制科應試와 그 性格〉(《宋俊浩停年紀念論叢》, 1987).

^{75)《}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⁷⁶⁾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許興植,〈高麗 禮部試의 諸業別 出題外 及第者의 進出〉(《白山學報》20, 1976;《高麗 科擧制度史研究》,一潮閣, 1981, 95~96零).

朴龍雲,〈高麗時代의 科學-製述科의 運營〉(《高麗時代 蔭叙制와 科學制 研究》,一志社, 1990), 248~250等.

년(1004)이었다. 즉, "(목종) 7년 춘3월에 科學法을 개정하였다. 이전에는 늘春月에 試取하였으나 혹 가을 (또는)겨울에 이르러서야 放牓하였었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3월에 科場을 개설하여 (10일간) 문을 폐쇄하고는, 1일에 禮經 10조를 貼試하고, 다음날에는 시·부를 시험하며, 하루를 지나 시무책을 시험하고, (10일이 되어서) 科等을 결정하여 아뢰고 문을 열도록 정하였으며, 明經 이하의 諸業은 전년 11월에 시취한 뒤 진사와 같은 날에 방방하도록 정하고, 그를 恒式으로 삼았다"고77) 했듯이 과거의 설행·방방 기일과 함께 과목도 첫 날에 예경 10조, 둘째 날에 시·부, 그리고 하루를 지나 넷째 날에 시무책을 고시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각 과목을 3 場으로 나누어 고시하도록 정한 것은 새로운 제도로서 주목되거니와, 아마이 이전에도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치르게 할 수 없었던 이상 비슷한 조처가 있었으리라 집작되나 3장제로 규정화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가 않다.

그 뒤에도 고시과목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하지만 그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에서 소개한 부분까지를 일괄하여 고시과목의 변천사항을 $\langle \mathbf{H} \rangle$ 로 제시하여 두도록 하겠다.

이들 고시과목에 대해서는 脚註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논자들 간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을 뿐더러 시기에 따라서도 一起一伏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크게 볼 때 禮經・6經義・4書疑 등의 경학과 시・부・송 등의 문예, 그리고 시무책・책문・대책 등의 시무로 나뉘어져 있 었으며, 이 세 분야를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구분하여 고시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술과 응시자들은 경학에 대한 이해 정도와 문학적 창작 력 및 정치적 식견에 걸치는 종합적인 심사를 받았던 것이라 하겠다.

한데 이같은 과정에서 응시자들은 三場連卷法이라 하여 초장 및 중장·종 장 모두를 차례로 합격해야 급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인종 14년)

^{77) 《}高麗史節要》권 2. 《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목종 7년 3월조에도 같은 기사가 실려 있는데, 다만 이곳에는 인용문에 표시해 두었듯이 ()부분인 "10일이 되어서"가 뒤에 나오고, 끝의 "그를 恒式으로 삼았다"는 구절이생략되어 있다.

〈丑 2〉 禮部試製述業의 考試科目 變遷表

年代 三場	初場	中 場	終場			
光 宗 9년(958)	詩・賦・頌 및 時務策					
" 11년(960)	詩・賦・頌					
〃 15년(964)	詩・賦・頌 및 時務策					
成 宗 6년(987)	詩・賦 및 時務策					
穆 宗 7년(1004)	禮經 10條(貼經)	詩・賦	時務策			
顯 宗 원년(1010)	" " "	詩	賦			
" 10년(1019)	" " "	詩・賦 ⁷⁸⁾	論			
睿 宗 5년(1110)	" " " ⁷⁹⁾	"	策			
〃 14년(1119)	經 義80)	"	"			
仁 宗 5년(1127)	"	"	論。			
〃 14년(1136)	"	"	" 81)			
〃 17년(1139)	"	論・策 중 하나	詩・賦			
毅 宗 8년(1154)	論・策중 하나	經 義	"			
忠肅王 7년(1320)	" " "	"	策問			
忠穆왕 즉위년(1344)	6經義・4書疑	古賦	"			
恭愍王 11년(1362)	<i>"</i> "	賦82)	詩			
〃 18년(1369)	" " ⁸³⁾	"	對 策			
禑 王 2년(1376)	" "	"	詩			
〃 12년(1386)	" "	"	策 問			

에 判하여 무릇 제술업은 經義・詩・賦를 連卷 試取토록 하였다"든지84) "(의

- 78) 許與植은 앞의 글(1976), 94쪽에서「詩」만을 들고 있는데 비해 趙東元은〈麗代 科擧의 豫備考試와 本考試에 對한 考察〉(《圓光大論文集》8, 1974), 234쪽에서 「詩・賦」를 함께 들고 있는데, 후자가 옳다고 생각된다.
- 79) 趙東元은 위의 글에서 詩・賦를 각기 初場・中場의 과목으로 보았으나, 그 보다는 許興植의 위의 글에서처럼 이들은 모두 中場의 과목이고 初場은 역시 禮經 10條가 부과되었다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다.
- 80) 許興植은 위의 글에서 經義를 곧 6經의 經義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기록상으로 그 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81) 趙東元은 앞의 글(1974)에서 '論·策中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으나, 그러나 역시 許興植의 위의 글에서처럼 '論'으로만 이해하는 게 옳을 듯하다.
- 82) 許興植은 위의 글에서 '古賦'를 中場, '詩・賦'를 終場의 과목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賦를 두번이나 고시했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古賦를 제외시키고 詩・賦를 분리하여 보았으나 물론 확실치는 않다. 이같은 不安은 그 이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그것은 許興植의 이해와 사무 달라 앞으로 더 영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83) 공민왕 18년 이후에 계속하여 初場에 '6經義・4書疑'가 부과되었는지도 분명 치가 않다. 이 부분 역시 許興植과는 달리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검토 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 84)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종 8년 5월에) 국학생은 6行을 고사하여 14分 이상을 쌓은 사람에게는 종장에의 直赴를 허락하여 그 액수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하여 3장연권법에서 제외시켰다"고⁸⁵⁾ 한 것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高麗史》鄭夢周傳에 우왕 11년(1385)의 기사로 "故事에 매번 一場을 시험할 때마다 문득 심사하여 出榜하는데 초장의 불합격자는 중장에 들어 갈 수 없었으며 종장 역시 같았다"고⁸⁶⁾ 한 사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장연권법이 철저히 시행되는 한 응시자들에게는 초장·중장·종장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종적인 과정일 뿐 아니라 科次가 정해지는 제3장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따라서 여기에서 어느 과목을 부과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특히 여말에 성리학이 도입되고 새 정치세력이 태동함에 따라 詞章 중심·詩賦 존중에서 經學 중심·時務 존중으로 학풍이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심하였지마는, 이처럼 과거의 고시과목은 학풍과는 말할 것 없고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퍽 컸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들 각 과목의 고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 거기에는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의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하여 시·부·송· 시무책·책문 등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졌으며, 예경·6경의·4서의 등 경학은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학의 경우 구술시험에는 다시 경서의 의리를 구두로 묻고 답하게 한 口義(口間口對·講經)와 경서의 본문 또는 註疏를 1행만 남겨 놓고 앞뒤를 덜은 위에 또 그 1행 중의 몇 자를 덮고 알아 맞추게 한 貼經(帖經)의 두 방법이 있었으며, 필기시험에 있어서도 경서의 의리를 필기로 답하게 한 단답 형식의 墨義와 경서의 본문을 내어 놓고 그에 대한 해석을 가하면서 論을 세우게한 논문식인 經義(義疑・製述)의 두 방식이 있었다.87) 이 가운데에서 고려 때

^{85)《}高麗史》 권73, 志27, 選擧1, 科目1 및《高麗史節要》 권11.

^{86) 《}高麗史》 권 117. 列傳 30. 鄭夢周.

⁸⁷⁾ 이에 대해서는 曺佐鎬, 〈科學 講經考-近朝鮮 初期의 士風에 對하여-〉(《趙明 基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1965), 621~622쪽 및 〈李朝 經學振興策의 一面-특 히 科擧의 講經을 中心으로-〉(《成大 人文科學》3·4, 1973·1974), 98쪽 참조.

채택한 방법은 앞서 제시한 예부시제술업의 고시과목 변천표에서 보였듯이 貼經과 經義였다. 즉 목종 7년부터 예종 13년까지 부과한 예경 10조는 첩경으로, 예종 14년 이후는 줄곧 경의의 방식으로 고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은 각기 단점을 안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私情이 개입되기 쉽고 채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반 면 후자로 할 경우 유생들이 경서는 익지 않고 모범 답안집인 抄集만을 보 는 등 갖가지 폐단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초에는 경학의 시험 을 講經으로 할 것인가 製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廷臣들 간에 심한 논 란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다 한다.88) 비슷한 문제는 고려조에서도 있었을 듯싶은데, 그러나 이 점을 알아 볼 수 있는 기록은 별 로 눈에 띄지 앉는다.

시험의 채점방식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기록도 고려 때의 것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문 역시 조선 초의 사료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구술시험인 강경의 경우, 몇 번의 변경을 거쳐《經國大典》에 실린 내용을 보면 通・略・粗・不의 4등급으로 나누어 通은 2分, 略은 1分, 粗는 0.5分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응시자가 4서 3경에서 모두 통을 받으면 14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通은 '句讀·訓釋이 모두 精熟하고 旨趣에 融質하여 辨說에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경우이며, 略은 '句讀·訓釋이 모두 분명하고 비록 大旨에는 통하나 融質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리고 粗는 '旬讀·訓釋에 모두 差誤가 없고 講論은 비록 該通하지는 못하나 一章의 大旨를 잃지 않았을 때' 얻는 성적이었다. 그리하여어는 수험생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날 때마다 시관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한 통・략・조・불을 쓴 木牌[講籤]를 내밀면, 그것을 수합해 다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원칙은 강첨의 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취하고, 강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낮은 쪽의 등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89)

필기시험의 경우, 역시 몇 번의 변경을 거쳐《經國大典》에 실린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매장마다 上上부터 下下까지의 9등급으로 구분하고 上上은

⁸⁸⁾ 曺佐鎬, 위의 글.

^{89)《}經國大典》권 3, 禮典 諸科. 이에 관한 연구로는 曺佐鎬,〈李朝式年文科考 (上)〉(《大東文化研究》10, 1975)가 있다.

9분, 上中은 8분, 上下는 7분, 이하 차례로 내려가 下下는 1분으로 계산하는 제도였다. 그러니까 중장 또는 종장에서 두 과목을 보거나, 한 과목을 부과 했다 하더라도 그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배수로 채점하면 上上은 18분, 上中은 16분, 上下는 14분, 이하 차례로 내려가 下下는 2분을 얻게 된다.90) 이와 같은 채점방식이 고려조에서도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잘 알 수가 없으나,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된다.

구술시험 보다는 덜했겠지만 필기시험에서도 채점시에 부정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糊名法(封彌法)과 易書法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 중 전자는 답안지가 어느 수험생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성명을 비롯한 인적 사항 위를 풀로 붙여 봉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필적 등으로 인해 시관에게 수험생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試卷을 복사시켜 그 사본을 가지고 채점하게 한 제도를 일컫는다 고려 조정 나름으로 과거를 공정하게 치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다.

(2) 명경과

고시과목은《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에 명시되어 나오듯이《周易》과《尚書》・《毛詩》・《禮記》・《春秋》등 5경이었다. 이들 과목은 각 단계가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단계마다 분량에 차이를 두어 향공시 등의 초시에서는 '각 1机씩'만을 부과한 데⁹¹⁾ 비해 명경업감시에서는 ■丁의 경우《周易》・《尚書》・《毛詩》각 2궤와《禮記》・《春秋》각 3궤씩으로써 모두 12궤를 부과하였고, 白丁의 경우에는《周易》・《尚書》각 1궤와《毛詩》・《禮記》 각 2궤 및《春秋》3궤로써 모두 9궤를 부과하도록92)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때 그 분량을 나타낸「机」가《增補文獻備考》에는「機」로 대체되어 있으며,93)《慵齋叢話》에서는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데「栍」字를 쓰고

⁹⁰⁾ 위와 같음.

^{91) 《}高麗史》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현종 15년 12월 判.

^{92)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인종 14년 11월 判.

^{93) 《}增補文獻備考》권 184, 選擧考 1, 科制 1. 이에 대해서는 曺佐鎬, 〈麗代의 科舉制度〉(《歷史學報》10, 1958), 135쪽 참조.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机」는 오늘날의 문항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글자로 해석된다.95) 즉 시관의 공정한 문제 출제를 위해 거자가 답해야 할 각 경의 여러 문항 내용을 궤나무에 기록하여 筒 속에 넣어 두었다가 당일에 시관이 그 중 하나를 뽑아(抽机・抽機・抽性) 제시하면 수험생은 해당 부분을 읽고 해석하며 의리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향공시는 각 경마다 1궤씩이었으므로 抽机가 한 번씩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감시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추궤가 있었겠는데, 그러나 이 때 부과된 전체 제 가운데에서 몇 궤에 통해야 합격이 되었는지는 두 경우 모두 언급이 없어 잘 알 수가 없다.

監試 합격자들이 끝으로 급제를 위해 치르는 禮部試明經業에 대해서는 역시《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인종 14년(1136) 11월의 판문에 비교적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尙書》徧業(專攻)者의 경우
 - ① 初日…《周易》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 ② 翼日…《毛詩》10條号 貼經-
 - ③ 第3日 이후
 - i) 《禮記》10机를 讀經케 함-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궤를 통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問하여 파문은 4궤를 통해야 함.
 - ii) 《尙書》10机를 讀經케 함-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궤를 통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문하여 파문은 4궤를 통해야 함.
 - iii) 《周易》·《毛詩》·《春秋》 각 1궤씩을 揷籌로 출제하여 讀經케 함.96)
- ○《周易》編業(專攻)者의 경우
 - ① 初日…《尙書》 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 ② 翼日…《毛詩》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 ③ 第3日 이후

^{94) 《}慵齋叢話》 권 2. 이에 대해서는 曺佐鎬, 앞의 글(1975), 183쪽 참조.

⁹⁵⁾ 朴龍雲, 〈高麗時代의 科擧-明經科에 대한 檢討〉(《國史館論叢》20, 1990; 앞의 책, 573~574쪽).

⁹⁶⁾ 判文에 이 iii)항의 규정만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周易》 전공자에게만 iii) 항이 부과되고 《尚書》 전공자에게는 그것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에는 균형상으로 맞지 않아 곤란하므로 추가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許興植, 앞의 글(1976), 107쪽 참조.

- i) 《禮記》 10세를 讀經케 함-《尚書》 徧業者의 경우와 같음.
- ii)《尙書》10机를 " """
- iii) 《周易》・《毛詩》・《春秋》 각 1궤씩을 挿籌로 출제하여 讀經케 함.

이 예부시명경업에 관한 인종 14년 11월의 판문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로 고시과목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예비고시와 동일하게 5경이었으나,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응시자들에게 그것들이 똑같이 부과된 게 아니라《尙書》전공자와《周易》전공자로 나누고 그에 따라 각 과목의 배열과 비중을 달리 하였음을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과목에 관한 기사는 인종 14년의 것 이외에는 더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과목들이 고려시대의 전기간에 걸쳐 그대로 계속해부과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때 변동이 있었는지, 그 여부는 잘 알 수가 없다.

둘째로 시험은 제1일(初日)과 제2일(翼日), 그리고 제3일 이후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초장·중장·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시 종장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도 '第3日 以後'라 하여 하루가 아니라 며칠간에 걸쳐 실시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술과의 경우 첫 시험으로부터 발표하기까지를 10일간으로 정하고 있지마는, 명경업도 그 기간은 비슷했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여기서도 3장연권법이 적용되어 초장의 불합격자는 중장에, 그리고 중장의 불합격자는 종장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3장모두를 차례로 등과해야 급제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넉넉히 집작할 수 있다.

셋째로 고시의 방법은 초장과 중장이 貼經, 종장은 口義로서, 모두 구술시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술과가 대부분 필기시험으로 치러진 것에 비하면 극히 대조되는 사실로서 주목된다. 그리고첩경은「條」로, 구의는「机」로 문항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지마는, 거기에서 얼마 이상을 맞혀 합격한다는 의미의「通」이 성적을 매기는「通・略・粗・不」 가운데 하나로서의「通」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된다는 의미의 通인지 그점은 잘 판단이 되어지질 않는다.

시·부를 특히 중시했던 고려사회에서 이렇게 5경만을 고시과목으로 하였던 명경과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는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울러 그 고시방법도 모두 구술시험이었다는 점 또한 제술과와 대조를

394 IV. 관리 등용제도

이룬다는 측면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3) 잡 과

雜科는 다시 각각의 전문분야에 따라 律業(明法業)·算業(明算業)·書業(明書業)·醫業·呪噤業·卜業·地理業·何論業·三禮業·三傳業·政要業 등의 11종류로 나뉘었다. 그런데 이들 잡업 각 과의 향공시에서 어떤 과목을 부과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는지는 전하는 자료가 없어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감시와 특히 예부시의 그들에 대해서는 앞 대목에서 검토한바 명경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인종 14년(1136) 11월 판문에 대부분 분야의 규정이 정리되어 있어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의 고시과목과 고시방법에 대해서도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가. 명법업

明法業에 관한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의 판문 내용을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 律業監試

白丁…律 2机・令 3机

- ■丁…律 3机・令 3机
- 〇 禮部試明法業
 - ① 初日…律 10條를 貼經-전부 통해야 함.
 - ② 翌日… 숙 10條를 貼經 전부 통해야 함.
 - ③ 第3日 이후
 - i) 律을 읽고 해석에 겸하여 의리는 6机에 通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 問하여 破文은 4궤에 통해야 함.
 - ii) 수을 읽고 해석에 겸하여 의리는 6机에 通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問 하여 4궤에 통해야 함.

감시와 예부시에서 다같이 律과 수으로 고시하고 있거니와, 후자는 예에따라 3장으로 나누어 치르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 3장의 고시방법은역시 명경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장과 중장은 貼經으로, 종장은 口義로 치르고 있다.

나. 명산업

明算業監試에 관한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의 판문은 다음과 같다.

○ 筭業監試

白丁···業經 3机· 第 2机

■T…業經 5机・第 2机

어느 연구자는 이들이 치른 과목 가운데 業經은 다음의 예부시에서 부과한 《九章》 또는 《綴術》 중의 하나였을 것이며, 第은 실제 계산에 대한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97) 여기에 이어서 설행한 예부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 禮部試明筭業

- ① 初日…《九章》10條를 貼經-전부 통해야 함.
- ② 翌日…《綴術》4條・《三開》3條・《謝家》3條를 貼經-전부 통해야 함.
- ③ 第3日 이후
 - i) 《九章》10卷을 읽고 해석(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机에 통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問하여 破文은 4궤에 통해야 함.
 - ii)《綴術》을 읽고 4机에 (통해야 하며) 겸하여 의리를 질문해 2궤에 (통해야 함).

《三開》3卷을 (읽고) 겸하여 의리를 질문해 2궤에 (통해야 함). 《謝家》를 (읽고) 3机에 (통해야 하며) 겸하여 의리를 질문해 2궤에 (통해야 함).98)

다. 명서업

明書業에 대한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의 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무가 퍽 많은 직위였던 만큼 앞서의 과업과는 좀 달리 예부시의 중장도 이론을 시험하는 첩경 방식이 아니라 실기를 고사하고 있음이 주의를 끈다.

〇 ○ 書業監試

白丁…《說文》30卷 내에서 3冊을 破文 試讀하고 또 眞書(楷書)를 쓰게 하였다.

■丁…《說文》30卷 내에서 5冊을 破文 試讀하고 또 眞書를 쓰게 하였다.

- 禮部試明書業
 - ① 初日…《說文》6條・《五經字樣》4條를 貼經-전부 통해야 함.

⁹⁷⁾ 許興植, 앞의 글(1976), 111쪽.

^{98) 《}九章》 등의 각 서적에 대해서는 許興植, 위의 글, 111쪽 참조.

396 IV. 관리 등용제도

- ② 翌日…書品長句詩 1首와 眞書・行書・篆書・印文 중 1窠를 쓰게 함.
- ③ 第3日 이후 …《說文》 10机를 읽고 해석(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机에 통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問하여 破文은 4궤에 통해야 함.

라. 의 업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 판문에는 醫業의 예부시에 관한 규정만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예비고시에 대해서는 "本司에서 試選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 本司는 太醫監(典醫寺)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시과목은 여전히 알 수 없거니와, 아마 다음에 소개하는 예부시의 과목 가운데에서 일부가 부과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아래에 예부시의업의 고시과목과 고시방법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禮部試醫業

- ① 初日…《素問經》 8條・《甲乙經》 2條를 貼經-6조 이상에 통해야 함.
- ② 翌日…《本草經》 7條 · 《甲乙經》 3條를 貼經-6조 이상에 통해야 함.
- ③ 第3日 이후
 - i) 《脉經》10卷을 읽고 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机에 通해야 하며, 파문 은 4궤에 통해야 함.
 - ii)《針經》9卷·《難經》1卷, 합하여 10卷을 (읽고) 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궤에 통해야 하며, 파문은 4궤에 통해야 함.
- iii) 《灸經》을 읽고 破文은 2궤에 통해야 함.99)

마. 주금업과 복업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 판문에는 醫業・呪噤業・地理業의 순서로 예부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서 감시에 해당하는 대목에서는 "凡醫卜地理業各其本司試選"이라고 하여 의업・복업・지리업을 언급하고 있다. 예부시의 呪噤業이 감시에서는 卜業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뿐 아니라 本 판문을 제외한 다른 자료에는 복업만이 보이고 주금업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래 논자들은 주금업과 복업을 동일한 과업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띠어 왔는데,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부시 주금업의 고시과목을 예로 들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00)

⁹⁹⁾ 여기에 든 각 서적들에 대해서는 許興植, 위의 글, 113~115쪽 참조.

¹⁰⁰⁾ 許興植, 위의 글, 116쪽.

〇 禮部試呪噤業

- ① 初日…《脉經》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 ② 翌日…《劉涓子方》 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 ③ 第3日 이후
 - i) 小經으로 《瘡疽論》 7卷・《明堂經》 3卷을 읽고 겸하여 의리는 6궤에 통해야 함.
- ii) 大經으로《針經》10机를 읽고 겸하여 의리는 6궤에 통해야 함.
- iii) 《七卷本草經》을 읽고 2궤에 (통해야 함).

이처럼 주금업의 고시과목은 의업의 그것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다. 다만《劉涓子方》과《瘡疽論》이 다른 과목이나 이들이 의업과 관계된 서적이라는 것은 명칭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더구나 주금업 급제자의 진출로로 생각되는 呪噤博士(종9품)나 呪噤師・呪噤工 등이 典醫寺(太醫監) 소속의 관원이었다는 사실도101) 그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금업의 小經,즉 전문분야로 하는 서적은 보다시피《瘡疽論》과《明堂經》이었다는 데서이 과업 급제자의 본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마는, 따라서 "呪噤業은 의업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의업의 일 분야였던 것으로" 파악한 견해는102)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卜業은 太卜監, 즉 司天臺(書雲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과업 급제자의 진출로였을 卜正(종9품)과 卜博士(종9품)가 이곳 소속 관원으로되어 있기 때문이다.103) 그렇다면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 판문에 어찌하여 복업에 관한 고시과목의 규정이 따로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나 그이유는 잘 알 수가 없다.

바. 지리업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 판문에는 地理業의 감시에 해당하는 대목에 대해 "本司에서 試選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역시 예부시의 과목과 시험방법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에 관한 대체적인 유곽은 파악이 가능하다. 아래에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01) 《}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典醫寺.

¹⁰²⁾ 許興植, 앞의 글(1976), 116쪽.

^{103) 《}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書雲觀.

398 IV. 관리 등용제도

〇 禮部試施理業

- ① 初日…《新集地理經》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 ② 翌日…《劉氏書》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 ③ 第3日 이후
 - i) 《地理決經》 8卷·《經緯令》 2卷, 합하여 10卷을 읽고 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궤에 통해야 하며, 파문은 4궤에 통해야 함.
 - ii) 《地鏡經》 4卷 · 《口示決》 4卷 · 《胎藏經》 1卷 · 《謌決》 1卷, 합하여 10卷을 읽고 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궤에 통해야 하며, 파문은 4궤에 통해야 함.
- iii) 《蕭氏書》 10 卷을 읽고 破文은 1 机에 (통해야 함). 104)

사. 하론업

"(文宗) 33년 6월에 判하여, 三禮業・何論業・政要業監試는 제업의 시험이 끝난 뒤에 國子監이 本業員과 함께 試取토록 하였다"고105)한 것으로 보아 하론업감시가 실시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이해된다. 하지만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 판문에는 그의 예부시에 관한 규정만이 보일 뿐 감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그 내용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예에 따라 아래에다 禮部試何論業의 고시과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〇 禮部試何論業

真書로 奏狀을 쓰게 하고 喫筭을 小貼하며《何論》10机・《孝經》・《曲禮》 각 2 机・《律 前後帙》 각 1机씩을 읽게 한다.

이 규정은 앞서 살핀 과업들의 그것에 비하여 정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喫筭'과 '律 前後帙'은 어떤 성격의 과목이고, 또 小貼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하는 점 등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현재 논자들에 의해 「何論」은 아마「何晏注論語」일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고,106) 또 《孝經》과 《曲禮》가 "일상생활의 규범을 밝힌 禮書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것"이므로 "何論業은 기초 교양으로 東屬을 선발하는 고시가아니었을까"하는 견해가107) 제시되어 있는 정도일 뿐으로, 이 과업의 실체는 아직 여러 가지가 불분명한 상태인 채로 남아 있다. 앞으로 더 검토가 있어

¹⁰⁴⁾ 여기에 든 각 서적들에 잔해서는 許興植, 앞의 글(1976), 117쪽 참조.

^{105)《}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¹⁰⁶⁾ 曺佐鎬, 앞의 글(1958), 136쪽.

¹⁰⁷⁾ 許興植, 앞의 글(1976), 119쪽.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 3례업 · 3전업 · 정요업

三禮業과 政要業은 위에 든 문종 33년의 판문에 의하여 감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비슷한 위치의 三傳業 역시 그와 같은 시험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된다. 하지만 이들 감시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전해지지않아 알 수가 없고, 예부시의 경우도 인종 14년 11월의 판문이 아니라 그보다꽤 앞선 시기인 선종 원년(1084) 11월의 판문에 따로 보이고 있다. 즉 "(宣宗)원년 11월이 判하여, 三禮・三傳業은 역시 前代의 取人하는 법이니 停廢할 수 없다"는 말로¹⁰⁸⁾ 시작된 이 사료는 그나마도 3례업과 3전업의 두 과업에 대해서만 일러 주고 있지마는, 그들의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禮部試三禮業

- ① 《禮記》 20권을 徧業大經으로 삼아 10處를 貼經하여 6곳 이상 통해야 하며, 10處를 揷籌해 破文에 通하고, 口問口對로 하는 의리는 6곳 이상 통해야 한다.
- ②《周禮》와《儀禮》를 小經으로 삼아, 一經은 10處를 挿籌하여 破文에 通하고 의리는 6곳 이상 통해야 하며, 一經은 파문과 함께 2궤를 읽어야 한다.

○ 禮部試三傳業

- ①《左傳》은 肄業大經으로 삼아 10處를 貼經하여 6곳 이상 통해야 하며, 10處를 揷籌해 破文에 통하고 의리는 6곳 이상 통해야 한다.
- ②《公羊傳》과《穀梁傳》을 小經으로 삼아, 一傳은 10處를 揷籌하여 破文에 통하고 의리는 6곳 이상 통해야 하며, 一傳은 다만 2궤를 읽게 한다.

3례업은《禮記》·《周禮》·《儀禮》、3전업은《春秋三傳》을 고시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명경과의 일부 과목을 부과한 이같은 과업을 왜 별도로 설치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거니와, 존재 의의 자체도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종 원년(1084) 당시에 이미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비록 급제했다 하더라도 잘 등용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式目都監에서 그의 시정책을 건의하고 있기도 하지만,109) 이후에도 사정은 비슷했던 모양 같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과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놓은 선거지 과목 인종 14년 11월 판무에 이들 3례업과 3전

^{108)《}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109)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숙종 7년 윤6월.

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했거니와, 그것은 이 때에 즈음하여 이미 그들이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110)

정요업에 관해서는 감시를 실시했다는 앞서의 문종 33년 6월 判 이외에 전해오는 자료가 없어 고시과목 등111) 모든 면이 의문인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추측컨대 이과업도 3례업·3전업과 마찬가지로 인종 14년 즈음하여서는 이미 폐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응시자격

고려시대 과거의 응시자격은 어떠하였을까. 이 점을 고찰하여 감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그 하나는 행정체계 내지는 절차상의 응시자격과 신분상의 그것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응시자격을 하나로 뭉뜽그린 전체로서가 아니라 각 과업별로 세분하여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절차상의 응시자격 문제는 앞서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대목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주로 신분상의 응시자격을 과업별로 검토코자 하지마는, 그 점을 알아보는 데는 아래의 다섯 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먼저 그들을 제시하고 설명을 이어 가도록 하겠다.

1. 靖宗 11년(1045) 4월에 判하여, 五逆·五賤·不忠·不孝·鄕·部曲·樂 エ¹¹²⁾·雜類의 자손은 과거에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도록 하였다(《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2.-⑦ 문종 2년(1048) 10월에 判하여, 각 주현의 副戶長 이상 孫과 副戶正 이상 子로 製述業과 明經業에 赴試코자 하는 자는 所在官이 시험하여 京師에 貢擧하면 尚書者의 國子監에서 審考하여 지은 바의 詩・賦가 격식에 어긋난 자 및 명

¹¹⁰⁾ 趙東元, 앞의 글(1974), 235쪽.

許興植, 앞의 글(1974), 119쪽.

¹¹¹⁾ 曺佐鎬는 앞의 글(1958), 136쪽에서 政要業은 《貞觀政要》를 중심으로 하는 科 業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으나 잘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¹¹²⁾ 樂工을 樂・工으로 해석하는 논자도 있다.

경업으로 $1 \cdot 2$ 제를 읽지 못하는 자는 그 試貢員을 科罪토록 하였다. (하지만) ④ 醫業 같은 것은 반드시 널리 학습시키는 게 필요하므로 戶正 이상의 子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庶人이라도 樂工・雜類에 관계되지 않았으면 모두를 試解토록 하였다. 《高麗史》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3. 文宗 12년(1058) 5월에…李子淵 등이 또 아뢰기를, '製述業의 康師厚는 열 번 응시하여 급제하지 못했으니 甲午年 赦令의 예에 의거하여 脫麻케 함이 마땅하오나, 그러나 師厚는 儒林郎・堂引이었던 上貴의 督孫인데, 堂引은 驅史의 관리로 戊子年의 制旨에 電吏・所由・注膳・幕士・驅史・門僕의 자손으로 製述・明經・律・書・第・醫・卜・地理의 학업에 능하여 등과하였거나 혹은 전쟁에서 큰 공을 이룬 자라야 조정반열에 오르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고, 또 丙申年의 별도 制旨에 의하면 上項人의 자손으로 恩賜를 입이 入仕하는 자는 父祖의 仕路에 따라 참작하여 제수하라 하였은즉, 지금 師厚를 脫麻케 함은 마땅치 않습니다'하였다. 發知政事인 金顯 등이 아뢰기를, '師厚의 증조인 上貴는 관직은 비록堂引이었으나 儒林郎을 겸하였었고, 아비 序도 열 번 應擧하여 역시 탈마해 입사하였은즉, 師厚의 10년간 형설의 공도 생각하여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바라옵건대 역시 탈마를 허락하옵소서'하였으나, 子淵 등의 논의에 따랐다(《高麗史節要》권 5;《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限職 문종 12년 5월 및 권 95. 列傳 8. 李子淵).

4. 인종 3년(1125) 정월에 判하여, 電東・杖首・所由・門僕・注膳・幕士・驅史・大丈 등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諸業 選路에 허통케 한 예에 의거해 赴擧토록 하여, 제술・명경의 兩大業에 오른 자는 5품까지를 限定으로 하고, 醫・卜・地理・律・筹業에 오른 자는 7품까지를 한정으로 하도록 하였다(《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限職).

5. ② 인종 14년(1136) 11월에 判하여, 무릇 製述業은 經義와 詩・賦를 連卷試取하며, 무릇 明經業의 試選式은 2일간 貼經하는데, 초일에는《尚書》編業者의 경우《周易》을,《周易》編業者의 경우《尚書》를 각각 10조씩 貼試하고…무릇 何論業式은 眞書로 奏狀을 쓰게하고 喫筭을 小貼하며,《何論》10레・《孝經》・《曲禮》각 2레・律 前後帙 각 1레씩을 읽게한다. ④ 무릇 明經業監試의 格은, ■丁은 12레인데《周易》・《尚書》・《毛詩》는 각 2레씩、《禮記》・《春秋》는 각 3레씩으로 하며, 白丁은 9레인데《周易》・《尚書》・《尚書》・《尚書》는 각 1레씩,《毛詩》・《禮記》는 각 2레씩,《春秋》는 3레로 한다. ④ 무릇 書業監試는《說文》30권 내에서 白丁은 3책, ■丁은 5책을 破文 試讀하고 또 眞書를 쓰게 한다. 무릇 筹業監試는, 白丁은 業經 3레와 第 2레, ■丁은 業經 5레와 第 2레로 한다. 무릇 健業監試는, 白丁은 律 2레와 숙 3레, ■丁은 律 3레와 숙 3레로 한다. 무릇 [图》 ト・地理業은 각기 本司에서 試選도록 한다 하였다(《高麗史》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이 가운데에서 맨 먼저 나온 靖宗 11년(1045)의 판문인 사료 1부터 검토키로 하자. 여기에는 보다시피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여러 신분층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 五逆과 不忠・不孝는 범죄자류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본인은 말할 것 없고 그 자손에게도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여러 종류의 천인을 지칭한 듯한 五賤에게도 같은 조처가 취해지고 있는데, 당연한 처사로 이해된다. 아울러 이들의 응시가 금지된 과업에 제술과는 물론이요 명경과와 잡과까지 포함되었다는 점 또한 대략 집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응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鄕・部曲人 자손과 잡류의 자손은 얼마 간의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중 특히 잡류는 구체적으로 사료 3. 4에 보이는 電吏・所由・注膳・門僕・幕士 등의 말단 이속을 말하지마는113) 벌써 문종 12년(1058) 기사인 사료 3에 이들의 자손이 제술과 이하의 각 과업 에 응시할 수 있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료 3은 康師厚라는 사 람이 10번이나 제술과에 응시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脫麻시키는 것이 마땅하 나 마침 그의 증조부인 上書가 잡류직인 堂引을 지낸 것이 말썽이 되어 朝臣 간에 논쟁이 일어난 기사지만, 그 과정에서 무자년 곧 문종 2년(1048)에114) 전 리 등 잡류 자손으로 과거에 급제했거나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는 조정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는 制旨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올 뿐더러. 이 논쟁 이 있기 이전에 강사후는 이미 계속하여 10차례나 응시하였고. 그의 부친인 康 序 역시 그러하였으므로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 가면 정종 11년 또는 그 이전 부터 이들은 잡류 자손으로서 제술과에 응시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종 11년의 금지조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되었을까에 대해 서는 의문이 가게 마련이다. 아마 금령을 내려 놓고도 실제적으로는 응시를 묵 인하여 오다가 문종 2년부터는 정식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취한 게 당시의 실 정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15) 그로부터 얼마의 시기가 지난 인종 3년(1125)에

¹¹³⁾ 이에 대해서는 洪承基, 〈高麗時代의 雜類〉(《歷史學報》 57, 1973) 참조.

¹¹⁴⁾ 朴宗基는〈高麗 部曲制 成員의 身分〉(《高麗時代 部曲制研究》, 서울大出版部, 1990), 48쪽에서 戊子年을 이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성종 7년(988)으로 보았다.

¹¹⁵⁾ 朴龍雲, 〈高麗時代의 科擧-製述科의 應試資格〉(앞의 책, 1990), 236쪽.

이르러 잡류 자손의 급제자에 대한 限品叙用의 규정이 제정되고 있지마는(사료 4), 그 역시 이렇게 미묘한 현실을 재정리한 조처가 아닐까 짐작된다.

어떻든 이처럼 잡류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자손들에게는 일시적인 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응시가 가능토록 하였고, 또 곧 이어 정식으로 허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단 이속인 잡류의 자손들에게 응시가 허락된 만큼 그 이상의 서리층에게는 물론 과장이 개방되어 있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중앙의 서리층에게는 제술과를 비롯한 각 과업의 응시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지방 향리의 경우 제술과와 명경과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층에 대한 규정은 사료 2-⑦의 판문에 보이는데, "각 주현 副戶長 이상의 손과 副戶正 이상의 子"로 되어 있다. 이 판문이 나온 3년 뒤인 문종 5년에는 향리의 승진 규정이 마련되어 ⑨ 諸壇史로부터 ⑧ 兵史・倉史로, 다시 거기에서 ⑦ 州府郡縣史로, 이어서 ⑥ 副兵正・副倉正→⑤ 副戶正→④ 戶正→③ 兵正・倉正→② 副戶長→① 戶長의 순서로 9단계를 밟도록 제정하고 있지마는,116) 응시자격을 이와 견주어 볼 때 꼭 가운데에 위치한 부호정과 그 위의 호정 및 병정・창정은 子까지, 다시 그 위의 부호장・호장은 子・孫까지 응시하게 하고, 부병정・부창정 이하의 자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술업과 명경업에는 향리층 가운데에서도 일정한 선 이상의 자손만이 응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 제술업과 명경업에는 이와 같이 일정한 선 이상의 신분층만이 응시가 가능했을까. 일반양민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사가 인종 3년의 판문인 사료 4에 보이는 바 "군인의 자손에게 諸業選路에 허통케 했다"는 대목이다. 이곳의 「軍人」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일반양민의 응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京軍소속의 군인들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즉, 경군은 세습적으로 군인직을 이어 가는 전문적 군인들로서 서리・향리 등과

^{116)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鄕職 문종 5년 10월 判. 이 사료에 나오는 後壇史는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諸壇史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千寬字, 〈閑人考-高麗初期 地方統治에 관한 一考察-〉(《社會科學》 2, 1958; 《近世朝鮮史研究》, 一潮閣, 1979, 33~34쪽) 참조.

유사한 신분층에 속했다는 주장과,117) 그들 역시 군인이면서 동시에 농민이었다는 주장으로¹¹⁸⁾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견해대로 한다면 군인의 신분은 전체가 일반양민이 되는 셈인데, 하지만 두 견해는 모두가 커다란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난점 또한 없지 않다는 사실은 두 논자 사이의 토론 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니와, 다만 지금처럼 45,000명 가까운 경군 전원을 군인직을 전문으로 하는 군인으로 보는 데에는 얼마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왜 많은 수가 그와 같은 성격의 군인으로 구성되었으리라는 데는 동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종 3년 기사의 군인 역시도 이러 한 군인직을 전문으로 하는 군인을 지칭했다고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이해가 옳다고 할 것 같으면 「軍人」에게 제술과 및명경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실을 근거로 일반 양민에게도 허용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어떤 이는, 文克謙이 删定都監判官에 재임하면서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자 "白衣도 또한 10赴를 하는데 藍衫은 어찌 3赴로 그쳐야 합니까. 청컨대 5赴를 한정으로 하도록 해 주소서"라는 奏請을 하고 있지마는,119)이 주청 속에 나오는 白衣를 평민으로 해석하여 양민들도 제술과를 포함하는 각 과업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120) 그러나 여기에나오는 백의는 평민이란 뜻이 아니라 어느 논자의 해석처럼 「벼슬이 없는사람」이라는 의미로121) 짐작되는 만큼 이것도 또한 그에 관한 적절할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도 일반 양민이 제술과까지 응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편 논고는 몇몇 더 찾아지는데,122) 그들의 立論이 그렇게

¹¹⁷⁾ 李基白,〈高麗 軍班制下의 軍人〉(《高麗兵制史研究》,一潮閣, 1968).

¹¹⁸⁾ 姜晋哲,〈高麗初期의 軍人田〉(《淑明女大 論文集》3, 1963).

^{———,〈}軍人田〉(《高麗土地制度史研究》,高麗大出版部, 1980).

¹²⁰⁾ 曺佐鎬, 앞의 글(1958), 152쪽.

¹²¹⁾ 許興植, 〈高麗 科舉의 應試資格〉(《高麗科舉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79쪽,

¹²²⁾ 文炯萬,〈高麗科擧制度에 있어 赴擧資格의 再檢討〉(《釜山史學》4, 1980), 4~6쪽. 李成茂,〈韓國의 科擧制와 그 特性-高麗 朝鮮初期를 中心으로-〉(《科擧》, 一 潮閣, 1981), 74・96쪽.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123)

하기는 근자에 일반양민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던 향·부곡인에게조차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24이 논자는 과거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술과를 포함한 각종 과업을 모두 지칭한 듯 싶은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논거는 대략 다음과같은 것이었다. 즉, 위에서 사료 1로 제시한 바 "五逆·五賤·不忠·不孝·鄉·部曲·樂工·雜類의 자손은 과거에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도록 하였다"고 한 정종 11년의 판문을 이와 좀 달리 해석하여, "五逆·五賤·不忠·不孝의 죄를 범한 鄕·部曲·樂工·雜類의 자손"과 같이 볼 것을 제의하면서, 이처럼 「五逆」등은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그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향·부곡인 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같이 해석할 경우 '五逆·不忠·不孝'는 그런 대로 납득이 가나 '五賤'은 죄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천인 자체를 의미한다고 짐작되는 만큼 수식어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해에 곤란이 따른다. 역시 새로운 해석에 동의하기에는 난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위의 논자는 또 '부곡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好例'로 母系가 부곡인이었던 鄭文을 들어 자신의 논지가 정당하다는 뒷받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문을 이처럼 부록과 직결시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의 전기에 "文外祖 系出處仁部曲"이라 했듯이125) 실은 외조가 부곡계였을 뿐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그 외조는 생모 계통이었고, 호적상의부모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부친은 제술과에 장원으로급제한 후 禮部尚書(정3품)・中樞使(종2품)의 지위에까지 올랐고, 뒤에 사학12도 가운데 하나인 弘文公徒를 열어 門下待中(종1품)・光儒侯에 추종된 鄭倍傑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층 그러하다.

지금까지 제술과와 명경과에는 서리와 향리의 일정한 선 이상층만이 응시가 가능하였고 일반양민과 함께 향·부곡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음

¹²³⁾ 이에 대해서는 朴龍雲, 앞의 글(1990a), 240~241쪽 참조.

¹²⁴⁾ 朴宗基, 앞의 글(1990), 48~51쪽.

^{125) 《}高麗史》 권 95, 列傳 8, 鄭文.

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전자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 듯하다. 하지만 후자, 즉 명경과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다. 인종 14년 (1136)부터는 白丁과 ■丁에게 응시를 허락했음을 보여 주는 사료가 눈에 띠기때문이다. 위에 제시한 사료 5-④가 바로 그것이다. 한데 이 인종 14년 판문은 보다시피 각 과업의 예부시 고시과목에 이어서 명경업감시와 잡업감시의 과목 및 거기에 응시하는 백정과 장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직 제술업감시에 대한 것만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백정과 장정이 이 제술과에만은 응시할 수 없었던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거니와, 126) 그러나 어떻든 명경과에는 이들이 응시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백정과 장정이 과연 어떤 부류였느냐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다시 제기되는데, 현재 연구자들은 백정이란 직역을 부담치 않아 국가로부터토지를 지급받지 못한 농민층으로 보려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27] 이에 따른다면 그들은 신분적으로 양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논자 중에는 백정층에 驛民・島民 등이 포함되었음을 들어 그들 모두를 양민적 존재로 파악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압도적 다수가 양인농민층이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28] 다음 백정보다 조금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장정은 莊(圖)・處民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은 듯하나 그 실체는 여전히 분명치가 않다. 아마 백정에 비해 신분적으로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기는 했어도 유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이 갈 뿐이다. [29]

이처럼 백정과 장정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단안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그들의 압도적 다수가 농민층을 포함하는 일반양민이

¹²⁶⁾ 李基白, 〈科擧制와 支配勢力〉(앞의 책, 1974), 179~180쪽.

¹²⁷⁾ 旗田巍,〈高麗時代의 白丁-身分・職役・土地ー〉(《朝鮮學報》14, 1959;《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72).

李佑成、〈閑人・白丁의 新解釋〉(《歷史學報》19, 1962).

¹²⁸⁾ 旗田巍, 위의 글. 李佑成, 위의 글.

¹²⁹⁾ 旗田巍는〈高麗時代의 王室의 莊園—莊‧處〉(《歷史學研究》246, 1960: 위의책)에서 莊‧處民을 賤民的 存在로 보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한편 許興植은 앞의 글(1976), 107쪽에서 ■丁과 白丁을 年齡區分으로 이해하였는데, 응시자격에서 연령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잘 납득이 되어지지는 않는다.

었다는 점에 의거하여 여기서는 일단 이들로 한정시키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명경업의 응시자격을 생각해 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는 일반 양민까지 포함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인종 14년(1136)의 판문과 사료 2-37의 문종 2년 (1048) 판문 사이에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문종 2년에는 신분적으로 일반 양 민보다 상층에 속하는 하급 향리의 자손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던 데 비 해 인종 14년에는 일반 양민에게까지 그것을 허용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 다. 이 양자 간의 모순에 대한 해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두 판문 사이에 80여 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동안에만 하 급 향리의 자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전해지는 단 하나의 사료인 사료 2-%에 근거하여 하급 향리의 자손은 응시자격이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응시가 가능했 으리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문종 2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이들과 신분상 동급 으로 생각되는 잡류층에 응시가 허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러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경업보다 중시된 제술업의 경우이 긴 해도 잡류층에게 응시가 허락되고 있을 때에 하급 향리에게는 그것을 불 허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도 문제는 남는다. 이처럼 명경업의 응시자격을 논함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뒤따르지 만 잠정적으로 문종 2년까지는 중류층 이상 전원에게 개방되었으나. 그로부 터 귀족정치가 성숙하고 향리층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는 얼마 동안은 하급 향리에 한하여 제술업 뿐 아니라 명경업에도 응시를 불허하지 않았을까 짐 작되며, 그러나 다시 인종 14년 이후에는 크게 완화하여 명경업만은 일반양 민에게까지 응시를 허용하였던 것으로 정리하여 둔다.

그러면 다음으로 雜科의 응시자격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앞서 사료 1인 정종 11년의 판문은 잡과 응시자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지마는, 따라서 5역·불충·불효 등의 범죄자류와 5천 및향·부곡·악공·잡류의 자손은 잡과에도 응시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그같은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역시 앞에서 설명했듯이 잡류의 자손은 실제로 제술과를 포함한 각 과업에 응시가 허락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에 나온 문종 2년(1048)의 판문에는 다시 잡과 가운데 하나인 醫業에 庶人의 응시를 허락한 사실이 보인다(사료 2-④). 그리고 이어서 인종 14년(1136) 판문에는 書業監試・算業監試・律業監試의 고시과목을 백정과 장정별로 정하고 있어서(사료 5-④), 이들 일반 양민의 응시를 새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짐작컨대 비록 문종 2년 이전은 좀 미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잡과의 모든 분야는 일반양민 이상층에게는 개방되어 있었다고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130)

이렇게 잡과가 양민에게 개방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과연 얼마 만한 숫자가 거기에 급제하여 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밝은 전망이 가지 않는다. 현실적인 경제적·사회적 난관을 극복하고 잡과에 응시 급제한다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잡과가 이러하였다면 명경과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술과에 있어서도 잡류층 등은 유사한 형편에 놓여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고려시대의 과거제가 지니는 한계성의 일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과거에서 마지막 관문인 예부시의 종장을 통과하면 급제가 되는데, 제술과의 경우 그 사실은 흔히들 '甲科 某'・'甲科 某等 幾人' 또는 '乙科 某等 幾人' 과 같이 甲科・乙科, 그리고 丙科・同進士와 함께 서술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갑과・을과 등은 무엇에 따른 구분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꽤오래 전부터 성적에 근거한 것이라는 연구가 나와 있거니와,[31]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갑과 급제가 고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이고, 다음이 을과, 다시 다음이 병과・동진사의 순서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선장조의 초기 기사에

¹³⁰⁾ 이에 대해서는 朴龍雲, 〈高麗時代의 科學-雜科에 대한 檢討〉(앞의 책, 1990), 603~604쪽 참조.

¹³¹⁾ 曺佐鎬, 앞의 글(1958), 134~135쪽.

의할 것 같으면 과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광종조에는 갑과 급제자만을 내다가 경종 2년에 이르러 을과가 추가되고, 이어서 성종 3년과 12년에 각기 병과와 동진사가 추가되는 등 점차 학대·정비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같은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이 없이 주로 2分 또는 3分되던 급제 등급은 얼마 뒤에 을과와 병과·동진사로 구분하는게 일반화되지만, 그것은 갑과의 소멸과관련이 깊었다. 개인별 사례 역시 그러하거니와 선거지 선장조에서도 현종 17년(1026)을 마지막으로 하여 갑과는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甲科가 없어진 뒤에는 '乙科第一人'이 물론 수석 급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달리 壯元 또는 魁科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제2 위와 제3위의 급제자는 '乙科第二人'·'乙科第三人'이 되었을 것이다. 훨씬 뒤인 고려 후기의 일이지만 대체적으로 을과는 3인, 병과는 7인, 동진사는 23 인을 급제시켰다. 그러했을 때 제4위부터 제10위까지는 병과 급제, 그 이하는 동진사 급제가 되었을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에서 설명한 갑과와 을과·병과·동진사와는 별도로 또 恩賜及第라는 게 있었다. 이는 10회에 걸쳐 赴擧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들에게 글자 그대로 恩例로써 賜與하는 급제를 말하는데,[132] 늘상 주어지던 것은 아니었다.[133] 아울러 別賜라 하여 외국인인 송나라 출신에게 특별히 급제가 사여되기도 했지마는, 그것은 숙종 7년과 예종 9년, 명종 14년 등 세 차례 시행되는 동안 각각 한 명씩 모두 3명에게 주어진 데 그치고 있다.[134]

명경과의 경우는 제술과가 단순하게 을과·병과·동진사 등으로 표기했던 바와는 약간 달리 등급 앞에 먼저 과업명을 적고 이어서 2과 또는 3과 등으로 표시하였던 것 같다. 이는 현재까지 전해 오는 及第放榜教書와 榜目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서, 예컨대 예종 2년(1107)에 실시한 과거의 급제 방방교서 가운데 명경과에 관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明經 李揚發 등은 孔子의글을 깊이 읽어 (漢나라) 邊孝先이 (5經을) 배에 가득 채운 듯하다. 성인의 깊은 도리를 보았으니 옛것을 배워 벼슬에 들어갈 만하고, 군자의 儒를 알았으

^{132)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凡恩例 목종 즉위년.

^{133)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凡恩例 목종 원년 3월.

^{134)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니 명경에 取士될 만하다. 이양발에게는 2과 급제를 주고, 崔慶雲에게는 3과급제를 준다"하였고,135) 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위의 과시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것으로 생각되는 과거의 다른 급제 방방교서에는 某에게 "本業의 某科及第를 준다"고136) 보이는 것이다. 이 중 후자의 '本業'은 물론 명경업을 의미하며, '某科'는 2과 또는 3과를 뜻한 게 틀림없을 듯하다. 이같은 방식은 충렬왕 16년(1290)의 과시에서 명경과에 급제한 安甸의 급제 등급을 "明經二科一名"으로 표기하고 있는 예와도137) 일치하거니와, 그것은 명경업에서 2과의 수석으로 급제했다는 의미의 표시로 해석된다.

위에 든 예종 2년의 급제 방방교서 내용을 볼 때에 이양발은 명경과의 수석 급제자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2과급제가 주어지고 있다. 아마 제술업에서 갑과가 소멸된 후 을과가 首科의 지위를 이은 것과 동일한 원리에서 명경업도 2과가 수과의 위치에 있었던 모양 같다. 따라서 '明經二科一名'으로 급제한 안전은 전체 명경 급제자의 수석을 차지한 예로 이해된다. 그러나 2과와 3과의 구분이 순수하게 성적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尚書》編業 또는《周易》編業과 같이 전공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 점은 분명치가 않다.

다음 잡과 급제자의 급제 등급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었을까. 이 점을 알아보는 데는 충숙왕 17년(충혜왕 즉위년: 1330)에 明書業에 급제하여 그 증서로수여된 李子脩의 紅牌가138) 유일한 것인데, 거기에는 '二科第四人明書業及策者'로 되어 있다.139) 이것은 제술업의 을과·병과·동진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명경업에서 2과·3과로 구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방식을 취한 명경업의 경우 등급 앞에 과업명을 기재하도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명서업도 그와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즉 이자수홍패의 경우는 후세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 등급과 과업명

^{135)《}東文選》 권23, 金富弼作 及第放牓教書.

^{136)《}東文選》 권23, 金富軾 作及第放牓敎書.

^{137) 〈}高麗朝科舉事蹟〉(《國朝榜目》, 國會圖書館, 1971), 519쪽,

¹³⁸⁾ 紅牌에 대해서는 朴龍雲,〈高麗時代의 紅牌에 관한 一考察〉(《碧史李佑成教授 定年退職紀念論叢-民族史의 展開와 ユ 文化》上,1990; 앞의 책) 참조.

¹³⁹⁾ 李基白 編著,《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一志社, 1987), 149\.

의 위치가 바뀐 것일 뿐,140) 아마 원래는 '明書業二科第四人及第者'와 같이 되어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것이다.

명경업에서는 2과가 수과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서업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자수는 당해년의 과시 명서 업에서 네 번째 성적으로 급 제하였고, 그것이 '二科第四人'으로 표시되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명서 업 자체에 2과와 함께 3과의 구분 같은 것도 있었는지 그 점은 분명치가 않다.

잡과 가운데에서 명서업 이외에 급제 등급이 표시된 다른 분야의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급제자에 대한 급제 등급의 표시방식 역시 분명치가 않은데, 하지만 짐작컨대는 명경업·명서업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들 급제자의 전체 숫자 및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잘 알려진 대로 과시의 設行年月과 試官・壯元及第者 성명, 그리고 급제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놓은《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선장조이다. 아래에 이 사료를 기본으로 하여 먼저 제술과의 경우부터 설행 횟수와급제자수를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禮部試製述科의 왕대별 설행 횟수와 급제자수 통계표

왕 명	왕 명 재위기간 설행횟수		급제자수 ()는 은사급제자	설행간격	1회평균 급제자수	연 평 균 급제자수	
4대 광	종	18	8	27	2.3	3.4	1.5
5대 경	종	6	2	12	3.0	6.0	2.0
6대 성	종	16	14	82	1.1	5.9	5.1
7대 목	종	12	7	121(1)	1.7	17.3	10.1
8대 현	종	22	14	133(3)	1.6	9.5	6.0
9대 덕	종	3	2	17(3)	1.5	8.5	5.7
10대 정	종	12	6	81	2.0	13.5	6.8
소 계		89년	53회	473인(8인)	1.68년	8.9인	5.3인
11대 문	종	37	19	373(10)	1.9	19.6	10.1
12대 순	종	0	0	0	0	0	0
13대 선	종	11	7	178	1.6	25.4	16.2
14대 헌	종	1	1	26	1.0	26	26.0

¹⁴⁰⁾ 韓相俊·張東翼、〈安東地方에 전래된 高麗 古文書 七例 檢討〉(《慶北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33, 1982), 55\\$.

412 IV. 관리 등용제도

총 계	435년	250회	6,330인(36인)	1.74년	25.3인	14.6인	
소 계	41년	21회	660인(0인)	1.95년	31.4인	16.1인	
34대 공양왕	3	2	66	1.5	33.0	22.0	
33대 창 왕	1	2	66	0.5	33.3	66.0	
32대 우 왕	14	7	231	2.0	33.0	16.5	
31대 공민왕	23	10	297	2.3	29.7	12.9	
소 계	77년	34회	1,102인(2인)	2.26년	32.4인	14.3인	
30대 충정왕	3	0	0	0 0 0		0	
29대 충목왕	4	1	33			8.3	
28대 충혜왕	6	5	165	165 1.2 33.0		27.5	
27대 충숙왕	25	7	231	3.6	33.0	9.2	
26대 충선왕	5	1	33	5.0	33.0	6.6	
25대 충렬왕	34	20	640(인)	1.7	32.0	18.8	
소 계	104년	66회	2,014인(7인)	1.59년	30.5인	19.4인	
24대 원 종	15	9	262(7)	1.7 29.1		17.5	
23대 고 종	46	27	819	1.7	30.3	17.8	
22대 강 종	2	2	60	1.0	30.0	30.0	
21대 희 종	7	5	167	1.4	33.4	23.9	
20대 신 종	7	6	195	1.2	32.5	27.9	
19대 명 종	27	17	511	1.6	30.1	18.9	
소 계	124년	76회	2,081인(19인)	1.63년	27.4인	16.8인	
18대 의 종	24	15	465 1.6		31.0	19.4	
17대 인 종	24	17	497	1.4	29.2	20.7	
16대 예 종	17	11	356(9)	1.5	32.4	20.9	
15대 숙 종	10	6	186	1.7	31	18.6	

이 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설행 횟수의 경우 문종 19년(1065) 6월에 일단 設科는 하였으나 복시에 즈음하여 盧旦이 奏事한 게 왕의 노여움을 사 과시 자체가 파해지고 은사 급제자 몇 명만을 뽑은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 기사는 선거지 선장조에서는 빠지고 은례조에 실려 있지마는, 이를 계산에 넣어야 하느냐, 아니 넣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것이다.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좋겠다는 판단에서 제외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의종 6년(1152) 4월과 충렬왕 6년(1280) 4월 및 동 28년 4월의 과시는 각

각 다음 달의 친시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각각 따로 계산해 주어야 할지의 여부도 잘 판단이 서질 않는데, 이 역시 여기서는 1회씩으로만 간주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선거지 선장조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족보류에의해 충렬왕 22년과 23년, 그리고 충숙왕 11년에 과시가 설행되었다는 사실이알려지고 있어서¹⁴¹⁾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도 한 큰 문제인데,이에 대해서는 사료의 정확성 때문에 얼마간의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각각 1회씩의 설과로 간주해 추가하였다.

이러한 설행 횟수의 문제는 급제자수의 그것과도 직결된다. 구체적으로 문종 19년에는 5인의 은사 급제자를 내고 있고 의종 6년에는 4월의 과시에서 27인의 급제자를 뽑은 데 이어서 5월의 친시에서도 35인을 급제시키고 있는데,이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을지를 잘 알 수가 없는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모두를 계산에 포함시켰지만, 그러나 특히 의종 6년의 경우 그 내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모두를 계산에 넣긴 했어도 두 과시의 급제자가 서로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이 있다. 그런가 하면 충렬왕 6년 5월의 친시 급제자는 대부분 그 이전의 과시에서 급제한 인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전원 제외시켰으며,동왕 28년 5월의 친시 급제자는 7인 중 성명이 밝혀진 1인만을 계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충렬왕 22년과 23년 및 충숙왕 11년의 과시는 대략 1회에 33인을 급제시키던 시기이므로 여기서도 그같이 계산하여 넣었다.

한데 급제자수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선거지 선장조에 과시의설행 사실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급제자수를 누락시킨 사례가 11회나 되어서그들에 대한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경종 4년과 성종 5년 · 예종 2년 · 인종 24년 · 의종 4년과 8년 · 신종 3년 · 원종 3년 · 충숙왕 4년과 13년 · 충혜왕 後元年의 과시가 바로 그같은 사례인데, 이 중에서 예종 2년과 충혜왕 후원년의 급제자수는 다른 사료에 각각 27인과 33인이라는 기록이남아 있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142) 하지만 그 밖의 과시는 부득이 각 시기의 전후에 실시된 고시에서 급제자가 얼마나 되었던가를 참작하여 추측할

¹⁴¹⁾ 이에 관해서는 許興植, 〈選擧志 選場의 分析〉(앞의 책), 244~245쪽 참조.

¹⁴²⁾ 許興植, 위의 글, 246쪽.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경종 4년의 경우 6인, 그리고 성종 5년은 3인, 인종 24년과 의종 4년·8년 및 원종 3년은 29인, 신종 3년과 충숙왕 4년·13년은 각각 33인씩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필자 나름의 가감·추단을 그대로 용인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고려시대 제술과의 설행 회수를 살펴 보면 모두 250회가 된다. 다른 논자들은 각기 252회씩으로 계산하고 있지마는,143) 이는 물론 위에서 설명한 바 친시 등을 여하히 처리하느냐 하는 데 따른 차이이다. 그러나 어떻든 250회로 간주할때에 과거가 처음 실시된 광종 9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공양왕 4년까지가 435년 간이니까 제술과는 평균 약 1.74년에 한 번씩 시행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144) 이같은 설행 간격에 대해《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선장조첫머리에는 "혹은 比年(매년) 혹은 間歲(隔年)로 (열어) 定期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여 비교적 바르게 서술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설행 시기를 검토하여 보면 1년에 두 차례 시행한 때도 있고, 또 매년 시행하는가 하면 2년 내지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시행하는 등 일정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횟수를 평균하였을 때는 1.74년에 한 번꼴이 되는 것이다. 사료 중에는 "선종이 즉위(1083)해 詔하여, 진사 이하의 諸業은 지금부터 3년에한 번씩 시험할 것을 許한다고 하였다"는 기사도145) 눈에 띄지만, 혹시 일시적으로 그러한 기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았다.

이같은 설행 간격을 다시 시기별로 볼 때 초기부터 무신정권기까지는 전체 평균 설행 간격보다 약간 좁은 데 비해 몽고간섭기와 여말은 전체 평균 설행 간격에 비해 좀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무신정권기의 평균 간격이 1.59년으로 과시가 가장 頻數하게 설행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반해 몽고 간섭기의 평균 간격은 2.26년으로 비교적 많은 시간이 경과한 뒤에 설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마는, 이것은 전자가 새로운 무신정권의 수립과 몽고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요망되는 하급 문신관료층에 대한

¹⁴³⁾ 曺佐鎬, 앞의 글(1958), 129쪽.

趙東元. 앞의 글(1974), 238쪽.

許興植, 위의 글, 246・252~253쪽.

¹⁴⁴⁾ 許興植은 위의 글, 253쪽에서 1.73년에 한 번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145)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필요 및 민심수습 등과 관련이 많은 듯싶은데 비해 후자는 충렬왕과 충선왕, 그리고 충숙왕과 충혜왕 사이의 重祚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대내외적으로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이 깊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급제자수는 역시《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선장조의 첫 머리에 "그 取士 또한 定額이 없었다"고 한 바와 같이 고려 전기에는 1회에 혹 수 명을 붙이는데 불과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50명을 급제시키기도(목종원년) 하는 등 일정치가 않았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접어 들어서도 얼마의시기가 경과한 신종조(1198~1204)와 희종조(1205~1211)에는 앞서 설명했듯이대체적으로 을과 3인, 병과 7인, 동진사 23인, 합하여 33인씩을 급제시켰던 것 같다.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성립된 듯싶지만,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는 않아 이후에도 규정수대로 뽑지 않는 경우가 많다가 충렬왕 14년 (1288)부터 비로소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시행되어 여말까지 지켜진다. 이렇게 하여 250회에 걸친 과시에서 합격한 전체 급제자수는 6,330인으로 집계되며, 여기에 恩賜 급제자 36인과 別賜 급제자 몇 명 등을 합하면 그 숫자는 물론 좀 더 늘어나게 된다.

은사와 별사를 제외한 정식 급제자수 6,330인을 가지고 계산할 때 1회의 평균 급제자수는 25.3인이다. 전체의 1회 평균이, 통상 33인이던 제도와 비교하여 이처럼 적은 것은 과거의 정비기라 할 수 있는 광종~정종 연간의 1회 평균이 8.9인 - 연 평균은 5.3인 - 인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거니와, 그 이후의 시기, 즉 문종~의종 연간은 1회 평균 27.4인(연 평균 16.8인), 무신정권기는 1회 평균 30.5인(연 평균 19.4)인, 몽고간섭기는 1회 평균 32.4인(연 평균 14.3인), 공민왕 이후의 여말은 1회 평균 31.4인(연 평균 16.1인)으로 대략원만히 운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무신정권기에는 1년 평균의 급제자수 비율이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 주목되지마는, 이는 당해기간에 과시의 설행 자체가 가장 잦았다는 사실과 함께 유의해 둘만한 점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명경과의 설행 횟수와 그에 따른 급제자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선장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통계를 도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禮部試明經科의 왕대별 설행횟수와 급제자수 통계표

왕 명	재위기간	설행횟수	급제자수 ()는 은사급제자	설행간격	1회평균 급제자수	연 평 균 급제자수
4대 광 중	18	4	6	4.5	1.5	0.3
5대 경 종	6	0	0	_	-	-
6대 성 종	16	9	34	1.8	3.8	2.1
7대 목 종	12	7	59	1.7	8.4	4.9
8대 현 종	22	11	42	2.0	3.8	1.9
9대 덕 종	3	1	2(2)	3.0	2.0	0.7
10대 정 종	12	6	13(3)	2.0	2.2	1.1
소 계	89년	38회	156인(5명)	2.34년	4.1인	1.8명
11대 문 종	37	19	51(11)	1.9	2.7	1.4
12대 순 종	0	0	0	=	-	-
13대 선 종	11	7	22(12)	1.6	3.1	2.0
14대 헌 종	1	1	3 (3)	1.0	3.0	3.0
15대 숙 종	10	6	19(29)	1.7	3.2	1.9
16대 예 종	17	5	14 (4)	3.4	2.8	0.8
17대 인 종	24	1	2 (5)	24.0	2.0	0.1
18대 의 종	24	6	19	4.0	3.2	0.8
소 계	124년	45회	130명(64명)	2.76년	2.9명	1.0명
19대 명 종	27	10	40(11)	2.7	4.0	1.5
20대 신 종	7	1	4	7.0	4.0	0.6
21대 희 종	7	3	18 (9)	2.3	6.0	2.6
22대 강 종	2	2	11	1.0	5.5	5.5
23대 고 종	46	23	68(95)	2.0	3.0	1.5
24대 원 종	15	7	9(13)	2.1	1.3	0.6
소 계	104년	46회	150명(128명)	2.26년	3.3명	1.4명
25대 충렬왕	34	6	8(13)	5.7	1.3	0.2
26대 충선왕	5	0	0	-	-	-
27대 충숙왕	25	1	2 (2)	25.0	2.0	0.1
28대 충혜왕	6	0	0	-	_	-
29대 충목왕	4	0	0	-	_	-
30대 충정왕	3	0	0	_	_	-
소 계	77년	7회	10명(15명)	11년	1.4명	0.13명
31대 공민왕	23	1	2	23.0	2.0	0.1
32대 우 왕	14	2	10	7.0	5.0	0.7

	33대	창 욍	1	0	0	_	_	_	
	34대	공양욍	3	0	0	-	-	-	
	소	소 계 41년 3회		12명	13.66년	4.0명	0.27명		
ĺ	총	총 계 435년 139회		458명(212명)	3.13년	3.3명	1.05명		

〈표 4〉에 의하면 고려 때의 명경과는 모두 139회 설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 다. 그러나 당시의 과시 설행은 비록 月數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경과 라 하여 제술과와 분리하여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명경과 역시 제술 과와 마찬가지로 평균 1.74년에 한 번꼴로 모두 250회 설행되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업은 매번의 과시 때마다 급제자를 낸 것은 아닌 듯하 다. 《高麗史》 권 73, 선거지 선장조에 정리된 과시 가운데에서 명경과 급제자 를 선발한 것은 136회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었다. 선장조 에는 기록에서 빠졌으나 다른 자료에 의해 명경 급제자를 뽑은 횟수가 몇 번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종 2년 과시의 경우 선장조에는 설행했다는 기록만이 전하나 《東文選》권 23에 실려 있는 당해년 의 급제 放牓敎書에 의해 진사 27인과 함께 명경 급제자 2인도 있었다는 사실 이 밝혀졌다. 또 고종 15년의 과시에 대해 선장조에는 마치 진사 31인만을 뽑 은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당해 과시를 주관했던 李奎報가 자신의 문집인 《東國李相國集》所收 年譜에서 이때 명경 4인도 선발했다는 내용을 밝혀 놓 아서 새로이 확인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 충렬왕 16년에 명경과에 급제한 安甸의 경우도 선장조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 3회를 합하면 명경과의 설행은 모두 139회가 되지만, 위의 설명과 같이 몇몇 누락된 예가 있음에 비추 어 그 횟수가 좀더 늘어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39회인 셈인데. 그렇다면 250회 가운데 139회를 뺀 나머 지 111회 때는 명경과 급제과를 설행 당시부터 선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뽑지 않았던 것일까. 잘 알 수 없어 도 명경업감시에서의 선발이 있었을 때에도 예부시에서는 뽑지 않은 예가 있 는 점 등으로 미루어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렇게 볼 때 통계표에 산출은 해놓았지만 139회를 기준으로 한 설행 간격은 그다지 큰 의

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 명경 급제자를 뽑은 설행 횟수의 실태가 이러했을 뿐 아니라 1회의 선발 인원 역시 제술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숫자였기때문에 전체 급제자수도 458인에 그치고 있다.146) 진사급제자 6,330인에 비하여 약 1/14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다. 따라서 연평균 급제자수도 제술과가 14.6인이었던 데 비해 명경과는 1.05인에 지나지 않고 있다.

明經及第者 중에는 458인 이외에 恩賜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212인 더 있 는 것으로 계산은 되고 있다. 명경의 은사급제자란 제술과에서와 마찬가지로 10회에 걸쳐 赴擧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에게 은례로써 특별히 사여 한 급제를 말하는데, 그 숫자에는 약간의 의문이 없지 않다. 진사의 은사급 제자는 36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高麗史》선거지 선장조를 볼 것 같으면 진사 급제자수ㆍ은사 급제자수ㆍ명경 급제자수의 순서로 기록한 경우와, 진 사 급제자수 명경 급제자수 · 은사 급제자수의 순서로 기록한 두 방식이 나 타나고 있다. 이를 구분하여 전자는 진사의 은사 급제자이며 후자는 명경의 은사 급제자로 판단해 36인 : 212인이라는 숫자를 얻었지만, 시험에 의한 급 제자의 진사 : 명경이 6.330인 : 458인이라는 비율로 미루어 보아도 그러하고. 또 그 명경의 급제자 458인에 비해 은사 급제자가 212인이나 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이다. 기록상에 어떤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해상의 문제, 즉 후자와 같은 기록 방식의 경우 은사 급제자는 진사와 명경 모두를 합한 숫자가 아닐까 하는 등등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 데, 어떻든 명경의 은사 급제자가 212인이라는 그 숫자에 신빙성을 두기 어 렵다는 점만은 어느 정도 분명한 듯하다. 그러므로 은사 급제자를 포함한 논 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시기상으로 볼 때 상대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과거제가 설치된 초기부터 무신정권기까지는 설행 횟수나 급제자수 양면에서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져 왔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다가 몽고간섭기인 충렬왕 이후 명경과는 그의 존재 의미를 거의 상실하고 마는 것 같다. 이런 점은 제술과와 비교

¹⁴⁶⁾ 曺佐鎬는 앞의 글(1958), 135쪽에서 449인으로, 趙東元은 앞의 글(1974), 237~ 238쪽에서 448인으로 집계를 하고 있다.

할 때 더욱 두드러지고 있지마는, 명경과가 지니는 제약성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잡과도 제술과·명경과와 함께 시행되곤 했으므로 그도 또한 1.74년에 한 번씩 모두 250회가 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과시가 시행되어 선발 한 급제자를 총망라해 정리하여 놓은 것이 역시《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선장조인데, 그러나 여기에 잡과 급제자를 뽑았다는 기록을 남긴 과 시는 초기의 9회 뿐으로서 그 전체 인원도 81인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그 상황을 표로 보이면 아래〈표 5〉와 같다.

〈표 5〉 選擧志 選場에 나타난 雜業 及第者表

연대	잡업명	明法	明算	明書	醫	呪噤	 	地理	何論	三禮	三傳	政要	계
광종	9년						2						2
"	11년				3								3
"	15년						1						1
성종	6년	2			2		1						5
"	7년				2								2
"	8년						2						2
"	12년	3											3
"	16년	5	4	3						10	2		24
목종	원년	23	11	5									39
계	9회	33	15	8	7	0	6	0	0	10	2	0	81

여기에 기록된 것이 잡과 시행의 전부라고는 물론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 충혜왕 즉위년에 명서업에 급제한 李子脩의 예 하나만을 보더라도 쉽사리 알 수 있는 일로서, 이 이외에 비슷한 사례는 더 찾아지는 것이다. 앞서 고려 때 설행된 250회의 과시중 명경과 급제자를 선발한 것은 139회인데, 그 가운데에서 선거지 선장조에 기록된 횟수는 136회 뿐이고 나머지는다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이보다 더 많은 횟수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잡과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위에 예시한 선거지 선장조의 기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않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잡과 급제자의 전체 숫자를 어림잡는 일조차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들은 〈표 5〉

420 IV. 관리 등용제도

를 통해 한번의 과시에서 잡과의 11개 분야 급제자를 모두 뽑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선발 인원도 일정하지 않았다는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1) 제술과

고려시대의 급제자들이 처음으로 받는 관직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또 그품계는 어느 정도였을까.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제술과를 대상으로 하여 찾아 본즉 전체 급제자 가운데에서 현재初仕職을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다.147) 부족한대로 이것의 분석을 통해서도 그 내용의 대략을 짐작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거니와, 크게 보면 이들은 京職과 外職으로 나뉘어지며, 다시 경직은 文翰·學官職과 一般職으로 구분된다.

문한직이란 翰林院(藝文館)과 史館(春秋館)·秘書省(典校寺)·寶文閣·同文院·留院 등 이른바 禁內6局의 직을 말하며, 학관은 國子監(成均館)의 직을 일컫거니와 제술과 급제자들이 처음으로 보임받는 관직 중의 한 부류는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림원과 사관의 權務職이던 直翰林院과 直史館을 비롯하여 비서성의 9품직인 秘書校書郎과 그 아래에 위치했던 校書校勘 및 보문각교감과 그리고 종9품인 國子學諭・國子直學이나 博士(정8품~정7품) 등 하급의 학관직이 그것들이었다.

급제자들은 이러한 문한·학관직 뿐 아니라 중앙의 諸寺와 諸署 및 諸司都監各色·諸府 등의 관부에도 제한없이 골고루 진출하고 있다. 이 때 그들

¹⁴⁷⁾ 張東翼은〈高麗時代의 官僚進出(其一)-初仕職-〉(《大丘史學》12·13, 1977), 88~99쪽에서 時期別·官署別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金龍善은〈蔭敍制度와 科學制度의 比較〉(《高麗蔭敍制度研究》, 韓國研究院, 1987; 一潮閣, 1991, 113~ 118쪽)에서 전체 숫자를 187직으로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京·外職別 통계를 제시·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資料에 대해서는 朴龍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學制 研究》(一志社, 1990), 328~557쪽 참조.

이 주로 받는 관직은 권무와 9품에 해당하는 判官・錄事 등이었지마는, 좀더나은 경우 8품 또는 7품직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특별하게 6품직을 받은 예가 보이며, 이것 저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 왕 측근의 內侍에 소속한 예도 여럿 눈에 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8품 내지 9품 또는 권무직을 받는 게 보통이었던 것이다.

제술과 급제자들이 초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외직에 널리 보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京·都護府·牧·州·府·郡·縣 및 防禦州·鎭 등 전국에 걸친 각급 지방행정단위의 7·8품직인 司錄·書記·判官(通判)·豫軍事, 그리고 縣尉·監務·鎭副將 등을 초사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급제자가 처음에 외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이규보가 "무릇 登科者는 年紀에 제한을 받지 않고 外寄에 直補되는 것이" 국가의 成例였다고148) 한 언급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말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례를 보더라도 급제 후 외직으로의 진출을 '例受'・'例補'・'例出'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149) 그같은 상황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요컨대 제술과 급제자들은 초사직으로 중앙의 권무 내지는 8·9품에 해당하는 일반직을 어느 정도 제수받기도 했지만 주로는 역시 권무 내지 9품에 해당하는 문한·학관직과, 그리고 각급 지방행정 단위의 7·8품직을 보임받았던 것이라 하겠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고려 전기에는 외직에 보임된 숫자가 경직의 그것보다 많고, 다시 경직 가운데에 일반직과 문한·학관직의 보임 비율은 비등하게 나타나며, 그같은 양상은 무신정권기에도 대략 비슷하다. 그러다가 충렬왕대 이후부터는 반대로 경직에의 보임 숫자가 외직의 그것보다 많아지고, 그 차이는 공민왕대 이후에 한층 심해지는데, 이는 주로문한·학관직으로 진출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데 기인되고 있다.150)

외형상의 품계만 가지고 논한다면 혹시 7·8품-주로 7품-을 받는 외직이 주로 9품 내지 권무를 받는 경직보다 진출상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다. 경직과

¹⁴⁸⁾ 李奎報,《東國李相國集》 권26, 上趙太尉書.

¹⁴⁹⁾ 이 점은 이미 許興植이 앞의 글(1976), 100쪽에서 지적한 바 있다.

¹⁵⁰⁾ 이 점에 대해서는 朴龍雲, 앞의 글(1990a), 277~296쪽 참조.

외직 사이에 개재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7·8품의 외직을 받고 지방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중앙으로 올라올 때는 대부분의 경우 초사직으로 주어지던 9품 또는 권무직에 보임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5])

그렇다면 다같은 급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유리한 경직을 받고 누가 불리한 외직으로 나갔을까. 그것을 구분짓던 한 기준으로 먼저 급제 성적을 상정하여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진출에 영향을 미친 듯한 기록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152) 그러나 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았던 것 같다. 장원 급제자 중에서도 많은 수가 초사직으로 외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153) 그같은 점을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시대의 경우,《經國大典》에 의하면 文科의 갑과 제1인에게는 종6품, 나머지 즉 제2인ㆍ제3인에게는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계를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154) 고려시대에도 급제시의 성적이 초사직을 받는데 얼마간의 영향을 주기는 했겠지만, 조선 때처럼 성적 등급에 따라 제수받는 품계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없었던 것 같으며, 또 경직 혹은 외직에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이 결정적 기준은 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렇다면 급제자들이 보다 유리한 초사직으로 나가는데 작용한 중요 요소는 따로이 있었겠는데 그게 무엇일까. 생각컨대 그것은 아무래도 家門・門閥이었던 것 같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는 이규보가, 등과자들이 지방관으로 나가지 않고 京官에 직보되기 위해서는 詔旨가 필요했다고 한 발언이¹⁵⁵⁾ 크게 참고된다. 이처럼 급제자가 초사직으로 경관직을 얻는 데는 국왕의 재가를 필요로 할 만큼 많은 배려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거니와, 그같은 관문의통과에는 필시 가문・문벌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실정을 염두에 두고 초사직으로 8·9품 내지는 권무의 경직을 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국왕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도 찾아지나 대부분은 문벌가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이 재삼 확인된다. 그리고 특별

¹⁵¹⁾ 이 점은 이미 張東翼이 앞의 글(1977), 93쪽에서 지적한 바 있다.

^{152) 《}高麗史》권 13. 世家 13. 예종 9년 하4월 경술.

¹⁵³⁾ 이에 대해서는 朴龍雲, 앞의 글(1990a), 282-283쪽 참조.

^{154)《}經國大典》권 1, 吏典 諸科.

^{155)《}東國李相國集》 권26, 上趙太尉書.

하게 6품직을 제수받은 사람들도 물론 이 범주의 가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집안의 후손들이다.[56] 학문적 실력을 표방한 과거제였지만 그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처럼 가문의 배경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급제후 초사직에 나가기까지의 대기 기간 문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과거제 시행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과시가 본궤도에 오른 문종조 이후는 벌써 전과 같이 급제 후 곧 등용되기도 했지만 경우에따라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기했다가 초사직을 받는 예가 다수 눈에 띠고있다. 그 기간은 빨라야 2년, 늦으면 4년 또는 5년에 이르고 있는데,157) 그러한장・단의 이유는 물론 급제 성적과 관련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으나 역시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가문・문벌과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기 기간은, 가문하고만 연결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치기강이 크게 문란해졌던 무신정권기에 들어 와 한층 길어져 10년 여나 기다렸다가 비로소 초직을 받는 예가 종종 보이고, 심지어는 2, 30년이 되도록 취임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158) 과거제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낸 일례라 할 것이다.

위의 설명은 모두 진사·생원 등 無官職者로 급제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그들 뿐 아니라 在官者들도 대거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그러면 이들의 경우 초직은 어떠하였을까.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당해자의 응시 직전 관직과 급제 후의 초직을 모두 알아야하는데 그런 예는 전기간을 통하여 34개가 찾아졌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번잡을 피해 그들 사례를 하나 하나 제시하지 않으려 하지만,159) 그것들을 분석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응시자가 實職 품관이었을 경우 급제 후에는 그 품계보다 대체적으로 1~2품계 높은 관직을 제수받았다는 점이다.1600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급제에 따른 대우로서, 그리하여 이들이 받은 관직은 7품 이상직이었으므로

¹⁵⁶⁾ 朴龍雲, 앞의 글(1990), 284~285쪽.

¹⁵⁷⁾ 朴龍雲, 위의 글, 286쪽.

¹⁵⁸⁾ 朴龍雲, 위의 글, 291~292쪽.

¹⁵⁹⁾ 사례는 朴龍雲, 위의 글, 298~299쪽 참조.

¹⁶⁰⁾ 이 점은 이미 張東翼이 앞의 글(1977), 99쪽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金龍 善은 역시 앞의 글(1987), 122~123쪽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는데, 옳은 견해라 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만큼 승진에 유리하였을 것이 예상된다. 둘째로 權務官으로 응시하였을 때 는 급제 후 역시 7품~9품의 실직을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첫째의 경우에 못 지 않는 대우로서, 특히 7품직을 받은 예는 파격적인 超遷에 해당하는 것이 다. 셋째로 품판 同正職에 있으면서 응시한 경우인데, 이들에게는 권무직이 제수되고 있다. 그런데 이 권무직은 생원ㆍ진사 등 무관직자로서 급제한 일부 의 인원들에게도 초사직으로 주어지던 것이었으므로 품관 동정직에 재임한데 따른 배려가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들은 응시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후자의 경우 외직 으로 나가는 인원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관 동정직자에 대한 급제 후 의 권무직 제수도 일정한 대우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무반의 실 직 품관으로 응시하여 급제하였을 때는 대개 동일한 품계의 문반관직을 제수 받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과시에 응시한 무반직은 別將(정7품)ㆍ郞將(정6 품)·中郞將(정5품)에 걸치고 있지마는, 당해인의 이러한 무반직 帶有는 그들 이 무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흔히 음직으로 이런 직위들이 주어진 데서 비 롯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직위 자체는 이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듯 싶은데, 이제 급제를 계기로 그 품계에 해당하는 문반직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는 역시 커다란 승진의 뜻이 있다고 이해된다. 다섯째로 급제 후 에 그 전보다 오히려 낮은 품계의 관직을 받는 경우인데, 이러한 현상은 창왕 워년 10월의 기사로 나오는 바161) 비록 참상관으로서 급제했더라도 일단은 三館에 分屬해야 한다는 「舊例」 때문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조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 후 대체로 승진을 거듭하여 고위직에까지 오르고 있다.

요컨대 재관자였다 하더라도 다시 급제를 함으로써 과거 출신이 아니면 진출이 불가능하였던 문한직에 취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¹⁶²⁾ 약간의 예외는 있었지만 품계상으로도 커다란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급제 전의 재관자는 대부분이 음서 출신이었으므로 이 대목은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같은 제술과 급제자였지만 각자의 입지에 따라 초직을 받을 때까지의 대기

^{161)《}高麗史》권 137. 이에 관한 설명은 朴龍雲, 앞의 글(1990a), 301쪽 참조. 162) 金龍善, 앞의 글(1987), 122~123쪽.

기간이 달랐고, 초직의 품계에도 차이가 났으므로, 승진 역시 같은 속도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급제는 仕路로 나가는 당시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방식들 중의 하나였으므로 遲・速에 얼마간의 차이는 있었다 하더라도급제자 중의 많은 수가 고위직까지 승진하였다. 한 연구자가 현재 관력이 전해지는 급제자들의 최고직을 통계로 내어 보니 전체 821인 가운데 宰樞에까지오른 사람이 388인으로 47.3%, 3품~5품까지를 지낸 관원이 204인으로 24.8%, 6품 이하 9품까지가 130인으로 15.8%, 기타 품계를 잘 알 수 없거나 동정직자・권무관・조선 초의 관직 帶有者 등이 99인으로 12.1%의 분포였다 한다.163) 이 통계는 사료의 미비로 인한 숫자상의 제약성 및 품계에 대한 판독의문제와 더불어 현재 전해지는 기록이 대체적으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을 주류로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한 자료라고 생각되며, 그런 관점에서 음미할 때 과거가 벼슬로 통하는 길로서 가지는 기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재삼 느끼게 된다.

(2) 명경과

명경과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문제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과업의 전체 급제자수 458인 가운데 성명만이라도 알려진 사람은 10여 인에 불과하며, 다시 그 중에서 관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얼마 만큼 달성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바 없지 않으나, 일단은 연대순으로 각자의 관력을 중심으로 한 신상을 먼저 소개하고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 ① 全輔仁(? ~현종 10:1019)
 - i) 성종 8년(989) 4월에 羅州牧 經學博士로서 교육에 공로가 많다고 하여 포상을 받음(《高麗史》권 3, 世家 3;《高麗史節要》권 2).
 - ii) 明經 출신으로 여러 차례 學官을 제수받은 바 있음(《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10년 2월).
 - iii) 현종 4년(1013) 4월에 右常侍(정3품)로 재임하면서 表를 올려 致仕를 청 학(《高麗史》권 4. 世家 4).
 - iv) 현종 9년(1018) 11월에 尚書左僕射(정2품)를 제수받음 《高麗史節要》 권 3).

¹⁶³⁾ 朴龍雲, 앞의 글(1990a), 301쪽.

- v) 현종 10년(1019) 2월에 右僕射(정2품)로서 卒함(《高麗史》권 4, 世家 4:《高麗史節要》권 3).
- ② 朴 某

明經 第一로 급제하여 文林郎(종9품 상)・衛尉注簿同正(종7품)・行平壤府(公?)164) △△錄事로 재임중 隴西李公의 사위가 됨(〈隴西李公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83等).

- ③ 金誠(문종 30:1076~의종 원년:1147)
 - i) 京兆 金氏로서 贈檢校太子太師인 錫符를 父로,檢校太子太傅인 殿邦을 祖父로,尚書右僕射인 吳頌을 外祖로 하여 문종 30년(1076)에 출생함.
 - ii) 弱冠의 나이로 明經에 擢第되어 秘書校書郎同正(정9품)을 제수받음.
 - iii) 德州防禦使의 倅를 거쳐 예종 2년(1107)에는 母弟인 中書侍郎平章事 吳 延寵의 女眞征伐에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 典廐令(종7품)이 됨.
 - iv) ユ 亨 大府注簿(종7품)→寶城郡刺史→將作注簿(종7품)→順州의 守令→ 大府注簿(종7품)→尚書都事(종7품)→監察御史(종6품)・西奈分臺→刑部員 外郎(정6품)→東京副留守(4품 이상)→秘書丞(종5품)→兵部郎中(정5품)・ 三司判官→衛尉少卿(종4품)・知刑部事→秘書少監(종4품)・御書檢討官・ 知戶部事→仁宗朝에 戶部尚書(정3품) 등을 역임.
 - v) 의종 원년(1147) 11월 8일에 72세의 나이로 卒함(〈金諴墓誌〉,《朝鮮金 石總覽》上, 356쪽).
- ④ 申 淑(?~의종 14:1160)
 - i) 高靈郡人으로 인종조에 明經科에 登第함(《高麗史》권 99, 列傳 12, 申 淑;《新增東國輿地勝覽》권 29. 慶尚道 高靈 人物).
 - ii) 여러 번 옮겨 御史雜端(종5품)이 된 후 言事함(《高麗史》권 99, 列傳 12, 申淑;《高麗史節要》권 11, 의종 3년 3월).
 - iii) 의종초에 右諫議大夫(정4품)로서 여러 차례 言事함(《高麗史》권 99, 列 傳 12. 申淑;《高麗史節要》권 11. 의종 6년 3월·6년 4월·6년 7월).
 - iv) 의종 10년(1156) 10월 현재 知樞密院事(종2품)로 재임함(《高麗史》권 18. 世家 18).
 - v) 의종 12년(1158)에 知門下省事(종2품)가 된 후 鄭誠의 일을 諫함(《高麗 史》권 99, 列傳 12, 申淑:《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2년 6월).
 - vi) 의종 12년 8월에 守司空·尚書右僕射(정2품)로 좌천 당함(《高麗史》권 99, 列傳 12, 申淑;《高麗史節要》권 11).
- vii) 의종 13년 2월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소환됨(《高麗史》 권 99, 列傳 12, 申淑:《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3년 2월·13년 5월). viii) 叅知政事로 致仕학(《高麗史》 권 99, 列傳 12, 申淑).
- ix) 의종 14년(1160) 7월에 죽음. (《高麗史》권 99, 列傳 12, 申淑 및 권 18,

¹⁶⁴⁾ 原文에는 平壤公으로 나오나, 이는 平壤府의 오기로 생각된다.

世家 18:《高麗史節要》 권 11).

⑤ 金大齢

위에서 살핀 金誠의 손자로 祖父의 업을 계승하여 明經에 擢第된 후 國 學學諭(종9품)가 됨(〈金誠墓誌〉、《朝鮮金石總覽》上, 356쪽).

6 韓略

- i) 처음에는 司憲府 令史(東屬)였는데, 明經科에 登第한 후 우왕의 외척으로써 관직을 超授함(《高麗史》권 111, 列傳 24, 慶復興 및 권 133, 列傳 46, 우왕 2년 윤9월).
- ii) 乳媼·宦寺 등에게 부탁하여 持平(정5품)이 되기를 구하므로 우왕이 그를 臺官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慶復興의 반대로 결국은 좌절됨(《高麗史》권 111, 列傳 24, 慶復興).

위에 든 인물들 중 급제 후의 초사직에 대해 시사를 주는 사람은 ② 朴某와 ③ 金誠 ⑤ 金大齡이다. 그 가운데에서 김함이 받은 秘書校書郎同正(정9품)은 기술의 내용으로 보아 급제에 따른 초사직이 분명한데, 그것은 문한직의하나인 비서성(전교시)의 관직이라는 점과 함께 실직이 아니라 散職인 동정직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다음 朴某의 衛尉注簿同正(종7품)은 초사직인지 아닌지 그 점은 분명치가 않다. 하지만 급제한 그가 당시까지 이 직위를 대유하고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가령 그것이 초사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동정직을 제수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명경업 급제자에게주어지던 초직에는 품관 동정직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닐까. 제술과급제자에게도 동정직이 초직으로 제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은 숫자였다.165) 그러나 명경과의 경우는,워낙 사례가 적어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마는 동정직을 제수하는 비율이 제술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았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할 듯싶다.

한편 김대령이 급제한 뒤에 받은 國學學諭도 기술의 내용으로 보아 초사 직으로 판단된다. 국학학유는 국자감의 종9품 학관직이거니와, 그렇다면 이 것은 위의 예들에 비해 매우 큰 혜택을 입은 셈이 된다. 형이 음직을 받을 정도로¹⁶⁶⁾ 조부인 김함의 지위가 높았던 데다가, 김대령은 바로 그 조부의 업을 이어 계속하여 명경과에 급제하였으므로 특별한 대우를 하여 준 게 아

¹⁶⁵⁾ 朴龍雲, 앞의 글(1990a), 287쪽.

^{166) 〈}金諴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356쪽.

닌가 짐작된다. 이처럼 명경과 급제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자감의 학관직과 같은 경직을 초사직으로 제수받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제술과 급제자보 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 동정직에 임명되는 예가 많았던 것 같다.

이들이 급제 후 초직을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헤아려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종이 왕 2년(1107) 정월에 어머니 柳氏를 왕태후로 책봉하고 다음달에 恩赦를 내리는 가운데, "명경·제술兩大業의 登科人 및 三韓功臣의 자손으로 4祖 내에 工·商·樂의 이름이 있음으로 해서 미루어져 시행되지 못한 자는 所司에 바라건대 예에 따라 신속히 아뢰고 재가를 받도록 하라"는 조처를¹⁶⁷⁾ 취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제술업과 명경업 공히 등과를 하고도 초직을 받지 못한 채 적체된 상태의 인원이 왜 많았던 점만은 짐작할 수 있다. 제술과의 경우 고려 전기에는 급제후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초직을 받기도 했으나 2년 또는 4,5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예가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추측컨대명경과 급제자의 경우 역시 비슷한 사정이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다음 명경과 급제자의 仕路와 陞進 문제인데, 위에서 김함과 김대령의 경우 각기 초사직부터 문한직의 하나인 비서성의 관직과 국자감 학관직을 제수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후의 사로를 보더라도 이들 관직에의 진출은 자유로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김함이 같은 관부의 秘書丞(종5품)과 秘書少監(종4품), 그리고 또 다른 문한직인 御書檢討官을 역임하고 있고, 김대령과 함께 全輔仁도 經學博士를 비롯한 여러 학관직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보인과 신숙, 특히 김함의 경우 관력이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한직 중에서 가장 중시된 한림원(예문관)과 사관 (춘추관)의 관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때문에 혹자는 이들 관직만큼은 제술과 급제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명경과급제자들은 그곳으로 진출할 수 없었고, 아울러 국자감의 國子祭酒(종3품) 같은 중요 직책에도 임명이 되지 않았다는 견해를168) 밝히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몇 안 되는 사료에 근거한 결론인 까닭에 마음에 꺼려지는 면이

^{167) 《}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3년 2월 신묘.

¹⁶⁸⁾ 許興植, 앞의 글(1976), 108쪽.

없지 않지만 현전하는 자료에 입각하는 한 그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이외에 다른 제한은 없었던 것 같다. 보다시피 명경과 급제자들은 諸寺를 비롯하여 6部와 淸要職인 臺諫, 尚書省과 宰樞兩府 등에 두루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위도 郎舍의 최고직인 常侍(정3품)와 6부의 상서(정3품)및 재추(2품 이상)까지 승진한 사례가 보여 물론 限品制같은 제한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고위 관직에 오른 관원수나 승진 속도 등에 있어 제술과 급제자 만큼은 훨씬 못했겠지만 명경과 급제자라 하여 어떤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3) 잡 과

雜科는 주로 해당 분야의 기술직을 선발하기 위한 과업이었으므로 급제 후에는 당연히 해당 부서의 관직에 취임해 일을 보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尚書刑部 소속-뒤에는 成均館 소속-의 律學博士(종8품)와 律學助敎 (종9품) 등은 명법업 급제자의 진출로였으리라 생각되며, 또 국자감 소속의 算學博士(종9품)와 중앙 각 관서의 東屬인 算士 등은 명산업 급제자의 진출로였다고 추측된다. 서업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국자감 소속의 書學博士(종9품)나 목종 원년 전시과의 제16과에 보이는 篆書博士 등이 그런 직위로 지목될 수 있을 듯하며, 또 중서문하성과 춘추관·전교시의 이속인 書藝나 예부의 이속인 篆書書者, 중서문하성·예문관 등의 이속인 書手 등도 명서업 급제자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싶다.169) 아울러 典醫寺(太醫監)와 奉醫署(尚藥局)의각종 직위 및 각 州牧에 과견되었던 醫學博士 등은 의업 급제자로 보임되었다고 생각되거니와, 다른 과업 역시 이와 사정이 비슷했으리라 짐작되는 것이다.

잡업 각과의 급제자들이 취임하는 직위는 이와 같이 대략 하급 관료나 이속직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서 혹 급제자들이 과연 이속직에도 진출했을까하는 의문이 없지 않을 듯싶은데, 비록 여말인 공양왕 2년의 일이긴 하나 都評議使司에 經歷司를 설치하고 그곳의 7·8품에 해당하는 典吏를 잡업 급제

¹⁶⁹⁾ 이 점에 대해서는 許興植, 위의 글, 111~112쪽 및 趙東元, 앞의 글(1974), 236 쪽 참조.

자중에서 不仕者를 뽑아 충당시켜 書寫를 맡도록 한 조처를170) 보면 그 의 문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잡업 각과 모두가 일 률적으로 그러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수 과업의 급제자들은 이속직에도 활 발히 진출하였다고 추측되는 것이다.171)

명서업 급제자 가운데 관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남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주목된다. 이자수가 바로 그 장본인인데, 그의 신상·관력 등에 대해서는 홍패와 함께 공민왕 15년 당시의 政案과 우왕 2년 및 8년에 발급된 告身이전해 올 뿐 아니라¹⁷²⁾ 《高麗史》권 40, 세가 40, 공민왕 12년 윤3월조에는 寢園令(정5품)에 재임하면서 '收復京城 二等功臣'으로 봉함을 받은 사실이 실려 있는 등 여러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에 입각하여 초직부터얼마간의 관력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 i) 충숙왕 17년(충혜왕 즉위년:1330) 11월(?)에 鄕貢擧人으로 明書業'二 科第四人'으로 급제함(紅牌).
- ii) 충혜왕 즉위년(1330) 9월 4일에 通仕郎(9품)·都染令同正(정8품)·明書業 급제를 받음(政案).
- iii) 충혜왕 후5년(1344) 6월 22일 有備倉注簿(종8품).
- iv) 충목왕 2년(1346) 5월 10일 司僕直長(종7품).
- v) " 4년(1348) 5월 15일 奉車直長(정7품).
- vi) 충정왕 원년(1349) 8월 27일 承奉郞(정6품)·試監察糾正(종6품).
- vii) 공민왕 11년(1362) 3월 10일 承奉郎(정6품)·典工佐郎(정6품).
- viii) " " 3월 25일 朝奉郎(종5품)·豊儲倉使(事?)(종5품).
- ix) " " 12월 25일 朝奉郎(종5품)・寢園署令(정5품).
- x) 공민왕 12년(1363) 윤3월 寢園令(정5품)에 재임하면서 '收復京城 二等功臣'에 봉합을 받음.

이를 검토컨대 우선 그가 급제 후 초직으로 받은 관직이 都染令同正(정8품) 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가 급제한 날짜에 대해 정안에는 1330년의 9월 로,《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선장에는 10월로, 그리고 다시 홍패에 는 11월로 되어 있어 초직을 파악하는 데도 약간의 혼란이 없지 않으나 鄉貢

^{170)《}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都評議使司.

¹⁷¹⁾ 朴龍雲, 앞의 글(1990a), 622쪽.

¹⁷²⁾ 李基白 編著,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一志社, 1987), 149·220·234·240\.

學人의 자격으로 급제한 사실을 감안할 때 바로 그 해에 받은 도염령동정이 초직이었을 가능성은 많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그것이 산직인 품관 동정일 뿐 아니라 염색 업무를 관장하여 서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都染署의 관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만, 그 이후 승진하면서 거친 관직 역시 서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직위들이다. 물론 초직을 받은 뒤에 다시 有備倉注簿로 취임하기까지에는 14년의 간격이 있으므로 정안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그간에 서업 관계의 관직에서 일을 보았으리라 추측되기는 한다. 그러나 서업 급제자라 하여 그 계통의 관직에만 복무한 게 아니라 일반직으로도 널리 진출할 수 있었다는 그 점만은 유의해야 하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당시는 여러 모로 관제가 문란해 있던 때라 그같은 현상이 이런 관제문란의 소산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이었는지 그 점은 잘 알 수가 없다.

고려왕조는 공민왕 10년에 이르러 紅巾賊의 침입을 받아 수도인 개경이 함락당하는 국난을 맞는다. 그러나 조정 상하가 단결하여 저들을 물리치고 개경을 되찾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때 이자수도 공로를 세워 왕 12년 윤3월에 '수복경성 2등공신'에 봉함을 받았다. 이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立身에 좋은 영향를 미쳐 그후 빠른 속도로 승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관계로는 종2품의 通憲大夫, 관직으로는 정3품의 判典儀寺事까지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렬왕조에 주자 성리학을 도입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安珦의 父인 安孚가 의업 급제자로서 정3품직인 密直副使까지 지낸 사실도 알려져 있다.173) 하지만 이 두 예가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역시 잡업 각과의 급제자는 대체적으로 자기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관직에 보임되었고, 그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은 품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집작된다.

7) 고시관

과거에는 그 시험을 주관하는 고시관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물론 시험의 단계에 따라 달랐는데, 먼저 예비고시인 감시의 시관에 대해서는, ①《高麗

^{173) 《}高麗史》 권 105, 列傳 18, 安珦.

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에 예종 16년(1121) 5월의 판문으로 "명경업 이하제업의 감시는 司業 이상관이 各業員과 함께 試選토록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즉, 명경업과 명법업·명서업·명산업·의업·복업·지리업 등 잡업의 監試 시관은 국자감의 종4품인 國子司業 이상관이 각 해당 과업의 관원과 함께 시선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자사업 이상관이 감시를 주관하되 명경업 이하 각 과업의 급제자 선발에는 전문가가 필요했을 것이므로 이들도 시관 대열에 함께 참여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하편으로 같은 시험을 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국자감시의 시관에 대

해서는, ②《高麗史》권 74, 선거지 2, 과목 2 國子試試員條에 "3品 以下官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혹자는 이같은 시관의 규정에 대한 ①·②사료의 차이점을 들어 각업 감시와 국자감시는 각기 성격이 다른 고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① 사료를 해석함에 있어 사업이 국자감 소속의 관원이라는데 중점을 두어 감시 시관은 국자감 관원으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국자감시 시관은 관서에 관계없이 '3품 이하관'으로 임명되었던 만큼 양자는 같은 성격의 고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174)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명경업 이하 제업의 감시를 주관하는 시관을 '司業以上官'으로 한다는 ① 사료의 '司業以上官'을 반드시 사업이 소속한 관서와 연결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는 의문이다. '以上官'에 중점을 두어 읽으면 '국자감의 사업과 같은 종4품 이상관'으로 주관케 하라는 의미의 판문이었다는 이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판문의 중점은 오히려 '각업원과 함께 시선토록 하라'는 대목에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4품이상관이 주관하되 명경업과 잡업의 시험에서는 그 방면의 전문지식을 가진관원도 함께 시관으로 참여케 한 조처가 바로 이 판문의 근본 취지가 아니

었을까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서 검토할 때 ①과 ②사료는 서로가 판이한 내용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①에서는 4품 이상관, ②에서는 3품 이하관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곧 상·하의 범위를 나타내는데 불과할 뿐 더러,《高麗史》권 74, 선거지 2. 과목 2. 國子試之額條에 연대순으

¹⁷⁴⁾ 柳浩錫, 〈高麗時代의 國子監試에 대한 再檢討〉(《歷史學報》103, 1984), 16~17쪽.

로 정리되어 있는 국자감시 시관의 관직 역시 거의 모두가 국자사업을 포함한 3품·4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①은 명경업 이하 제업 감시의 시관에 관한 판문인데 비해 ②는 제술업감시의 시관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여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175) 이런 견지에서 일단 제술과를 포함한 각 과업의 감시는 국자사업을 비롯한 3품·4품 관원이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그 아래에 각 과업별로 전문지식을 갖춘관원들이 추가되어 있었던 것으로 정리하여 둔다.

다음 본고시인 예부시의 시관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74, 선거 2, 과목 2, 시관조에 밝혀져 있듯이 책임자는 지공거와 동지공거였다. 광종이 처음 과시를 설행할 때는 이들 가운데 지공거만을 두었다. 그리하여 몇 번의 과시를 치르고 나서 동지공거는 광종 23년(972)에 새로 증치하였으나 곧 폐지되었고, 그 후 문종 37년(1083)에 이르러 다시 설치한 이후부터 常例化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시관의 명칭도 경종 2년(977)의 친시 때는 讀卷官이라 불리기도했지만, 성종 15년(996)에는 지공거를 都考試官이라 고쳤다가 이듬해에 본래의 이름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또 충숙왕 2년(1315)에는 지공거를 고시관, 동지공거를 同考試官으로 고쳤다가 같은 왕 17년에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되돌리고도 있다. 이처럼 동지공거는 얼마 동안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시관의 명칭상에도 몇 차례의 변천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공거와 동지공거가 각기 책임자와 부책임자로서 과거의 본고시를 주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료에는 이들 두 칭호 이외에 더 찾아지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공거와 동지공거를 각기 책임자와 부책임자로 규정한 것은 이들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시관이 더 있었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공거와 동지공거는 제술과의 경우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감독하며 채점과 함께 科次를 정하는 일까지 담당했던 것 같다.176) 그러나 이들이 명경과와 잡과에 있어서의 그같은 일까지 담당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역시 명경과와잡과의 경우는 감시 때와 마찬가지로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같이 업무를 보지 않았을까. 지공거와 동지공거는 그들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책임자였

¹⁷⁵⁾ 이에 대해서는 朴龍雲, 앞의 글(1990b), 562~563쪽 참조.

^{176)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원종 14년 10월.

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듯싶은 것이다.

지공거와 동지공거의 임명에 대해서는 원종 14년 10월의 기사로, "舊制에 二府가 지공거를, 卿·監이 동지공거를 담당토록"했다고177)한 사료를 통해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들 직위에 임명된 사람들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면도 나타난다. 먼저 지공거의 경우고려 전기의 상황을 보면 약 반수 가량이 기록대로 宰府와 樞府, 즉 양부(2부)의 재상들로 채워진 반면, 반수 가량은 吏部尚書나 侍郎・翰林學士・國子祭酒・秘書監 등 중요 관서의 3・4품 관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양부 재상들이 대부분의 지공거직을 차지하는 것은 고려 후기의 일이지마는, 그러나 동지공거의 경우는 전기간을 통하여 3품의 경・감이 임명된 때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역시 중서문하성이나 중추원・상서 6부・한림원・국자감 등 중요 관서의 3・4품 관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말기에는 재상들까지 이 직위에 임명되고 있기도 하다.178) 이처럼 지공거와 동지공거의 실제적인 담당자는 각기 양부의 재상과 경・감만으로 구성된 듯이 나오는 사료와 얼마간 차이가 있지만, 그에 상당하는 중요 직위의 고관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된다.

그것은 지공거와 동지공거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영광된 자리였다는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¹⁷⁹⁾ 고위 관원들이 앞을 다투어 이 직위를 차지하려 한 것도 그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지공거와 동지공거에 임명되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려기의 명문으로 알려진 집안 출신들이었다고하거니와¹⁸⁰⁾ 이 역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의 과거제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시사를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들 掌試者는 흔히들 學士라고도 불리었다. 그리하여 당해 학사 밑에서 급제한 사람들은 그의 문생이 되었지마는, 이들은 그 학사를 恩門이라 부르

^{177)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원종 14년 10월.

¹⁷⁸⁾ 崔惠淑、〈高麗時代 知貢擧에 대한 研究〉(《崔永禧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探求堂,1987),173~184等.

¹⁷⁹⁾ 曺佐鎬, 앞의 글(1958), 148쪽.

¹⁸⁰⁾ 崔惠淑, 앞의 글(1987), 184~197쪽.

며 座主와 門牛의 관계를 맺었다.181) 한데 이러한 좌주 · 문생의 관계는 매우 각별하여 부자와 같은 예를 취하였다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서 로 도와 가는 하나의 학범을 형성하였다.182) 그러나 이렇게 과거를 통하여 형 성된 좌주와 문생이 공고한 유대를 가지고 학문의 전통을 이어갈 뿐 아니라 정치적 ·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데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좌주ㆍ문생간의 은혜와 의리가 온전함은 족히 국 가의 워기를 배양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詩書의 넉넉함과 調翰의 빛남은 비 록 백년이 지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183)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공민왕 때의 신돈 같은 이는, "儒者들은 좌주ㆍ 문생을 칭하며 中外에 포열해 서로 干請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자행하는데. 이제현 같은 사람은 문생의 門下에서 문생을 보게 되어 드디어 나라에 가득 찬 도적이 되었으니 유자의 해됨이 이와 같다"184)고 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입장도 찾아지는 것이다. 후자는 과거제에서 비롯되는 폐단의 일면을 지적한 말로 생각이거니와. 앞서 설명했듯이 복시·친시를 시행하여 과시에 왕권이 개입함으로써 고시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했던 것도 이 런 문제와 관련이 깊었다고 할 수 있다.185) 하지만 이와 같은 좌주ㆍ문생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조선조에 들어 와서야 이루어진다. 186)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과거는 시험에 의해 각자의 실력 여하를 따져 官途로 나가게하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이 길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능한 인재를 뽑아 쓰는

^{181)《}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科目 凡試官 충숙왕 2년. 李齊賢、《櫟翁稗說》後集 2. 唐楊嗣復率門生宴先僕射於里第.

¹⁸²⁾ 曺佐鎬, 앞의 글(1958), 162~164쪽.

¹⁸³⁾ 李穡、《牧隱詩藁》 권 26, 詩 門生掌試圖歌幷序.

^{184) 《}高麗史》 권 110, 列傳 23, 李齊賢.

¹⁸⁵⁾ 許興植、〈高麗 科擧制度의 成立과 發展〉(《韓國史研究》10, 1974; 앞의 책, 3 7~43쪽).

¹⁸⁶⁾ 李楠福、〈麗末鮮初의 座主・門生關係에 關한 一考察〉(《鄭在覺古稀記念 東洋 學論叢》、고려원、1984)、211~213쪽.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되었고, 따라서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과 시책을 베풀어 그것을 적극 장려하였다.

감시 합격자나 예부시 급제자의 발표에 즈음하여 행한 放膀儀는 그 하나라할 수 있다. 이 의식은 국왕이 직접 임석하여 급제자들을 치하·격려하는 행사로서,187) 이들에게는 더없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급제자들은 綴行 또는 成行이라 하여 며칠간에 걸친 시가행진을 벌였으며,188) 그것을 알리는 呵喝의 소리는 못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189)이와 함께 급제자들에게 합격증서로 수여되는 홍패는 사령을 파견해 직접 본인의 집에 가서 사급했는가 하면,190) 지방출신 급제자가 고향으로 돌아 갈 때는 州官이 州吏들을 거느리고 五里亭까지 나와 맞고 그의 부모를 초치하여주연을 베푸는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191) 또 세 아들 혹은 그 이상이 급제했거나 두 아들이 장원급제 했을 경우에는 그들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내려 포상하는 시책을192) 펴기도 하였다.193) 과거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 주는 몇 가지 단적인 예인 것이다.

한편 급제자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기가 급제했을 때의 지공거와 동지 공거를 좌주 또는 은문이라 부르고, 스스로는 그의 문생이 되어 깊은 유대관 계를 맺었다. 뿐 아니라 同榜者 끼리는 同年으로서 형제처럼 친밀하게 지냈 으며 또 장원 급제자들은 모여 따로이 龍頭會를 만들기도 하였다. 과거를 중 심으로 하는 이러한 집단의 형성은 서로의 이해를 위한 면이 많았겠지만, 엘 리트 의식의 발로이기도 한 것으로서, 이런 점에서 역시 과거에 대한 당시인 들의 평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194)

^{187) 《}高麗史節要》권 19, 원종 12년 5월.

[《]高麗史》 권 68, 志 22, 禮 10, 東堂監試放牓儀.

^{188)《}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崇獎之典 명종 6년 8월·원종 7년 5월·충목왕 3년 10월.

^{189) 《}高麗史》 권 118, 列傳 31, 趙浚.

^{190)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8년 6월.

^{191)《}高麗史》 권 68, 志 22, 禮 10, 新及第進士榮親儀.

^{192)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崇獎之典 숙종 2년・의종 10년 6월.

¹⁹³⁾ 이상의 의식과 시책에 대해서는 이미 曺佐鎬가 앞의 글(1958), 159~160쪽에 서 지적한 바 있다.

¹⁹⁴⁾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曺佐鎬, 위의 글, 162~164쪽 및 許興植, 〈高麗의 科學 와 門蔭과의 比較〉(《韓國史研究》27, 1979; 앞의 책, 230~233쪽) 참조.

이처럼 과거에의 급제는 국가와 사회의 우대를 받으며 벼슬 길에 나갈 수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뿐더러 본인은 말할 것 없고 가문에 영광을 돌리는일이었다. 나아가서 蔭敍 출신자들에게 가해졌던 문한·학관직과 지공거직에의 취임 불허와 같은 제약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또 재관 중에 급제를 하면 승진이 촉진되었던 만큼 가문이 좋거나 좀 못하거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급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현재의 벼슬을 그만 두고 應舉하여 급제한 예와195) 법제상 6품 이상은 원 칙상 응시할 수 없으므로 4년간이나 그 직위에의 취임을 유예하면서 급제한 예도 보이며,196) 또 藍衫 벼슬에 있는 사람은 세 번밖에 응시할 수 없는 규정 을 다섯 번까지로 고쳐 가면서 급제한 사례¹⁹⁷⁾ 역시 찾아진다. 위의 세 장본 인인 任溥와 許冠・文克謙은 각기 당대의 명문인 定安任氏・孔巖許氏・南平 文氏의 자제이거니와, 그들도 급제에 얼마나 집착했던가를 잘 엿볼 수가 있 다. 이상의 세 예는 성공한 경우이지만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큰 한을 품게 되었다. 田元均과 金方慶(安東金氏)이 후자의 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즉, 전원균은 비록 문음으로 입사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 다고 전하며,198) 역시 음서로 입사하여 최고의 지위에까지 오른 김방경이었 지만 柱籍에 참여치 못했음을 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그렇기 때문 에 아들 金恂에게 일찍이 등제한 할아버지 金孝印의 業. 즉「相業」을 이을 것을 바랐고. 그에 따라 김순은 힘써 공부하여 마침내 급제하였다고 한다.199) 그런가 하면 尹瓘(坡平尹氏)의 遠孫으로 역시 음서로 출사하여 고위직에 오른 尹侅도 "우리 집안에서는 侍中公(尹瓘) 이하 무릇 7세가 등과했는데 우리 부 자는 (그렇지 못했으니) 후회하들 어찌 미치리오"라고 한탄했다는 기록도200)

^{195) 《}高麗史》 권 95, 列傳 8, 任懿 附 溥.

^{196) 《}高麗史》권 105, 列傳 18, 許珙 附 冠. 같은 내용의 기사가 《高麗史節要》권 22, 충렬왕 29년 추7월에도 실려 있다.

^{197) 《}高麗史》권 99, 列傳 12, 文克謙. 같은 내용의 기사가《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9년 9월에도 실려 있다.

^{198)《}東國李相國集》 권 35 및 〈田元均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571쪽).

^{199)〈}金恂墓誌銘〉(金龍善,〈新資料 高麗 墓誌銘 17點〉,《歷史學報》117, 1988, 155~ 157等).

^{200) 《}牧隱文藁》 권 18 및 〈尹侅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689쪽.

전해 오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 예만을 들었지만 이와 같은 한을 남 긴 사람은 아마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과거에의 급 제는 양반·귀족들에게도 매우 큰 값어치를 지닌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못지 않게 하급 양반층이나 서리ㆍ향리 및 일반양민들도 급 제를 열망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을 계기로 관직을 얻게 되고, 그에 따 라 신분의 상승이동까지도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201) 앞서 가장 중요한 과업인 제술과의 경우 향리층의 부호정 이상 子 및 부호장 이상 孫과 서리층 이상은 응시가 가능했다고 하였거니와, 이들은 급제를 하여 관도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서 양반ㆍ귀족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갔을 것 이다. 그리고 그같은 사례는 실제로 다수가 찾아진다. 그런가 하면 명경과와 잡과에는 일반양민층 이상이면 어느 시기부터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이들의 중류층 내지 양반층으로의 신분상승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자의 사 례는 아직 찾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료의 결핍 때문인지, 아니면 급제까 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관계로 인해 실제로 성공을 거둔 예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점은 좀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겠지만 일반양민으로 명경과나 특히 잡과에 급제하여 신분을 상승시켜 간 예는 얼마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 생각된다. 하여튼 과거는 이 처럼 신분의 변동을 齋來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 에서 과거제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은 매우 컸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제의 이같은 사회적 기능이 상당히 한정된 것이었다는 데서 또한 제약성도 찾아진다. 그것은 과업중에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던 제 술과에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양민 이하층에 응시자격이 주어지 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과거라 하여 실력에만 기준을 두고 관리를 선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신분제의 바탕 위에 설 치된 제도였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니는 제약성은 그것의 운영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는 특권신분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면이 많았던 때문이다. 품관 또는 권무관의 경우 예비고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²⁰¹⁾ 朴菖熙, 〈高麗時代「官僚制」에 대한 고찰〉(《歷史學報》 58, 1973), 54쪽.

것이 그 하나였다. 즉 특권신분층의 자손들은 初蔭職으로 품관 내지 권무직을 받거나, 이속에 보임받았다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품관으로 승진하여 예비고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고시에 응시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대부분이 고위관료 자손이었던 국자감생들에게 考藝試를 치르게 하고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본고시의 초장 내지 중장까지 면제시켜 준 제도 역시 실은 음서제와도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음서 출신자 중 약 40%가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거니와,202) 이 정도의 음서 출신 과거 급제자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과거제의 운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급제 후에 보다 나은 초사직을 받는데 있어서나, 또 초사직을 받을 때까지의 대기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가문 관계가 많이 작용하였다. 과거제 역시 고려 貴族社會 體制 내의 산물이었던 만큼 그에 배치되는 동떨어진제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근자에 과거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유리한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견해가 피력되었는데,203) 그에 동감되는 점이 많다.

과거와 함께 관리 등용의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로 기능한 것은 음서였으므로 양자는 흔히들 비교되곤 하였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음서 출신자는 문한·학관직에 취임할 수 없었던 데 비해 과거 급제자에게는 그같은 제약이 없었고, 또 제수받는 초직의 직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전자보다 후자의 것이 높아 관료생활에서 과거 급제자가 여러 모로 유리하였다. 거기에다가 재관 중에 급제하게 되면 급제 전의 직위보다 대체적으로 1·2품계 높은 관직을 수여받는 게 관례였던 듯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급제자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초직의 진출에 있어서는 급제자가 유리했던 게 확실한데, 그러나음서 출신자에게도 한 가지 커다란 이점이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과거 급제자보다 이른 나이에 관도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평균 연령을 보면 음

²⁰²⁾ 金龍善, 앞의 글(1987), 96~102쪽.

²⁰³⁾ 李基白, 〈高麗 貴族社會의 形成〉(《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184쪽;《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61쪽).

직을 받은 것이 14, 5세인데 비해 과거 급제는 24.4세로 나타나²⁰⁴⁾ 10년 가량 음서출신자들이 과거 급제자보다 앞서서 관도로 나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다가 급제의 경우 초직을 받을 때까지의 대기 기간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혹자는 음서와 과거 출신자의 승진과정을 정밀히 추적하여 하위직에서 뿐 아니라 고위직까지도 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나이에 진급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어 주목되거니와, 수긍이 가는 견해이다.²⁰⁵⁾

이처럼 음서 출신자들이 처음으로 받는 직위는 과거 급제자들의 것보다 좀 낮았으나 대신에 관도로 일찍 진출함으로써 오히려 승진과정은 빨랐다. 이 점에서 전자는 후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음서 출신자들은 문한・학관직에 취임할 수 없었으니 이 점에서는 물론 과거 급제자들보다 불리한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음서와 과거 출신자들은 관료 생활을 해 가는데 있어서 각각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206) 필자는 入仕 수단으로서의 음서와 과거의 예부시 급제가 차지하는 위상은 비슷하였다고 말한 바 있지만,207) 지금 되새겨보더라도 그 생각은 옳았던 듯싶다.

요컨대 음서제만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과거는 역시 귀족사회체제 내의 제도였으므로 그의 태두리 안에서 기능하는 면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 본위를 지향하는 제도였고, 그리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일이기는 하나실제로 신분 변동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폐쇄적인 고려 귀족사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제도의 한계성과 함께 발전적인 면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제는 음서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관리 등용 방식의 하나로서 그것이 지니고 있던 역사적 의의는 매우 컸다고 이해된다.

〈朴龍雲〉

²⁰⁴⁾ 朴龍雲, 〈高麗時代 蔭叙制의 實際와 그 機能(下)〉(《韓國史研究》37, 1982; 앞의 책, 45쪽) 및 앞의 글(1990a), 308~309쪽. 金龍善은 앞의 글(1987), 132쪽에서 음서의 제수 평균연령을 15.4세, 科擧 급제의 평균연령을 23.6세로 계산 해놓고 있다.

²⁰⁵⁾ 金龍善, 위의 글, 131~137쪽.

²⁰⁶⁾ 金龍善, 위의 글, 140쪽.

²⁰⁷⁾ 朴龍雲, 앞의 글(1982), 52쪽.

3. 음 서 제

1) 음서제도의 성립

고려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관리등용법은 科學制度와 蔭叙制度이다. 그런데 과거제도가 개인이 가진 일정한 학문적 능력에 따라 관리로 선발하는 것에 비하여, 음서제도는 조상의 蔭德에 의하여 그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음서제도는 일정한 官品에 오르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줌으로써 그 후손을 관리로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제도는 하나의 入仕路로서의 기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할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를 문벌귀족이 다스리는 사회라고 이해할 경우, 조상의 음덕에 의하여 자손이 관리가 되는 음서제도야말로 고려의 귀족들이 문 벌을 형성해 가고 그 특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영향을 끼쳐 준 제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고려의 음서제도는 언제 제도로 성립되었던 것인가.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 의할 때 고려시대 음서의 시행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 려 7대 왕인 穆宗 때의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목종 즉위년(성종 16년) 12월 威鳳樓에 행차하여 사면령을 반포하여 3년간의 役을 면제하고…文武의 관리에게(官爵) 1級을 더해주며, 5품 이상(관리의) 子에게는 蔭職을 수여하였다(《高麗史節要》권 2, 성종 16년 11월 및《高麗史》권 75. 志 29. 選舉 3. 銓注 蔭叙).

즉 목종은 즉위에 즈음하여 반포한 교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恩典을 내리

¹⁾ 고려의 음서제도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여 음서의 제도적 성립 시기, 음서의 종류, 음서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및 음서제와 과거제의 비교 등이 이루어졌다.

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子에게 음서의 특전을 내리는 것이었다. 이 즉위 교서는 12월에 반포되었는데 목종은 불과 2개월 전인 10월에 즉위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음서제도는 적어도 목종이 즉위하기 이전인 성종대에 이미 그 제도적 시행을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성종대에 음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구체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음서 시행과 관련지을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알려 주는 사실은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성종때부터 5품이상 관리와 6품 이하의 관리를 구분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였다는점이다. 즉 성종은 京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時政의 得失을 논하게하였고,2) 관리에게 加資를 시킬 때에도 경관 6품 이하의 관리들은 四考加資를 하지만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반드시 王旨를 취하게 하였으며,3) 또한경관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각기 관리후보자 1명씩을 천거하도록 명령을 내린 적도 있다.4)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종대 고려의 통치체제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확립되는 것과 짝하여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작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음서가 이렇게 성종대에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진된 바 있다.5) 하지만 이와는 달리 "성종조의 제도적 성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 목종·현종·정종 연간의 제도적 성립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시대의 모든 제도·문물이 정비 내지 완성되는 문종대에 비로소 하나의 제도로 정착된 것"6)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2) 《}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원년 6월.

^{3) 《}高麗史節要》권 2. 성종 8년 4월.

^{4)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薦擧.

⁵⁾ 金毅圭,〈高麗朝蔭職小考〉(《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서울大出版部, 1971;《高麗 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知識産業社,1985,25~29零).

李基白, 〈高麗貴族社會의 形成〉(《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69~70쪽).

朴龍雲、〈高麗時代 蔭敍制의 實際와 ユ 機能〉(上)・(下)(《韓國史研究》36・ 37, 1982;《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1990, 一志社, 3~8쪽).

⁶⁾ 南仁國、〈高麗 門蔭制度의 및 가지 問題〉(《歷史教育論集》6, 慶北大師大 歷史教育學會, 1984), 152等.

말하는 기반 조성이나 과도기 등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고려의 음서 시행에 있어서 제도적 정착기를 문종대로 잡는 것은 그 하한을 너무 늦춘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왜냐하면 앞의 사료에서 보았듯이 목종은 즉위한지 겨우 두 달만에 음서를 시행하라는 교서를 직접 내렸듯이 적어도 목종 즉위년에는 이미 음서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목종 이후 현종 5년 12월에도 '兩班職事五品以上' 관리의 자손 등에게 음서를 시행하라는 교서가 내려졌다.7)그리고 음서가 제수된 실제의 사례를 조사해 보아도 현종 즉위년에 「家蔭」이라는 음서를 제수받은 인물이 나타나고 있으며,8) 정종 10년에도 「門蔭」을 통하여 관직에 나아간 인물도 있다.9)

따라서 음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 만,10) 문종대에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너무 신중하다는 느낌이 든다. 고려시대 음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성립은 적어도 성종대에는 그 근간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후 몇 번의 정비를 통하여 음서제도가 시행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리고 이 음서제도의 성립은 성종대의 전반적인 통치체제의 정비와 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한 가지 고려 음서제도의 성립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이 제도의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간혹 고대사회에서의 骨品體制 아래 신분세습 원리와 고려 음서제의 유사성이 언급되기도 하고,11) 중국으로부터의 영향도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12) 고려 음서제도의 연원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蔭敍.

^{8)〈}李隴西公墓誌銘〉(李蘭暎 編、《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化社, 1968), 84쪽.

^{9) 〈}李頲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280\.

¹⁰⁾ 특히《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蔭敍條의 인종 12년 6월의 判文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¹¹⁾ 朴龍雲, 앞의 책, 3~4쪽,

¹²⁾ 朴龍雲, 위의 책. 중국의 음서제도에 대하여는 申採湜, 〈北宋의 蔭補制度〉(《歷史 學補》42, 1969) 및 〈南宋의 蔭補制度에 대하여〉(《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 叢》, 一潮閣, 1979; 《宋代官僚制研究》, 三英社, 1981)가 도움이 된다.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고려시대의 음서 시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高麗史》 권 75, 選擧志 3, 銓注條 '凡蔭叙'라는 항목 아래 수록되어 있다(이하《高麗史》선거지 음서조라고 약칭함). 그런데 이《高麗史》선거지의 전주조에는 '凡蔭叙'라는 항목 이외에 또 '凡叙祖宗苗裔'와 '凡叙功臣子孫'이라는 항목이 잇달아 선정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종의 苗裔와 공신의 자손들에게 관 직을 수여하여 관리로 등용케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들도 왕실의 후예와 공신의 자손에 대해 실시하는 음서에 대한 규정 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음서와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항목에 나타난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도 '凡蔭叙'조 에 나타난 시기와 대체로 동일한 시기에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高麗史》선거지의 이 세 항목들은 원래는 대부분 같은 시기에 반포된 규 정이었지만, 《高麗史》의 편찬자가 임의로 세분하여 놓은 것이라 함 수 있는 것이다(〈표 2〉참조). 이 점은 《高麗史節要》의 기사와 《高麗史》 선거지의 해 당기사들을 한꺼번에 놓고 대조해 보면 곧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규 정에 의할 때 고려시대의 음서는 이세 종류, 즉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에 대한 일반적인 음서와 공신자손에 대한 음서. 그리고 조종의 묘예에 대한 음서 등 세 가지로 나누게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 이외에도 고려시대에 음서가 시행된 구체적 사례는 《高麗史》의 열전 기록이나 고려시대의 墓誌銘 등과 같은 다른 기록을 통하여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종합하여 대조해 보면 명시된 규정과 실제로 나타나는 사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예컨대, 고려시대의 음서 시행의 사례 가운데에는 《高麗史》 선거지 음서조의 규정을 벗어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음서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制하여 內史侍郎平章事 劉徵弼은 대대로 경사를 누렸으며, 문필로써 여러 왕을 보좌하여 그 공을 기념할 만하니, 그의 아들 綽에게 工部書令史 職을 주도

록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6. 世家 6. 정종 6년 3월).

(宋)有仁은 인종 때 아비가 사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므로, 散員 자리를 주었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失 附 宋有仁).

이러한 음서는 「문무 5품 이상 관리」이거나「功臣」이라는 자격으로 그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일정한 공로를 세웠으므로 그 자손이 음서를 받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서는 《高麗史》 선거지에 명시된 규정을 벗어난 음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祖宗苗裔에 대한 음서의 경우 그것은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음서가 고려시대에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할 때, 이 음서가 시행된 실제의 사례는 하나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음서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겠지만, 시행된 실제의 사례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음서의 제도적 실체의 이해를 통한 역사적 의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된 음서가 있고, 규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종류가 있다는 점에서, 과연 고려시대의 음서를 규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된다. 이에 따라 고려의 음서에 대하여 하나는 "넓은 의미의 음서와 좁은 의미로 大夫 이상 관인 자손의 음서"로 구분할 것을 제의하고 조종 묘예와 공신자손에 대한 음서를 넓은 의미의 음서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13) 또 다른 하나는 《高麗史》의 규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음서를 5품 이상 고위관료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서와 공신자손과 조종묘예에 대한 음서의 세종류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일반음서에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定規蔭叙와 국왕의 즉위나 관료의 致仕 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特賜蔭叙 등의 두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4) 그런데 후자의 음서의 유형 분류

¹³⁾ 許與植、〈高麗의 科擧外 門蔭과의 比較〉(《韓國史研究》27, 1979;《高麗科學制度史研究》,一潮閣, 1981, 210等).

¹⁴⁾ 朴龍雲,〈高麗時代의 蔭叙制에 관한 몇 가지 問題〉(앞의 책, 122쪽). 한편 南 仁國도 앞의 글, 152~153쪽에서《高麗史》선거지의 기사에 따라 세 가지 종 류로 음서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는 전·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정규음서와 특사음서, 공신자손 음서 및 조종묘예 음서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견해와 거의 흡사한 것이기도 하다.15) 또한 음서가 제수되는 요인을 강조하여 음서의 내용을 관직 5품 이상 子에 대한 음서와 아울러 頒赦蔭敍및 勳功, 太祖功臣, 引年致仕, 戰死卒蔭, 前朝功臣, 轉品과 親祀大廟의 경우에 음서가 시행된 것으로 파악한 연구성과는16) 음서가 제수되는 시기를 알아 보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음서의 시행 사례에 나타난 음서의 명칭 가운데 父蔭・祖蔭 등과 같이 친족의 명칭이 붙는 음서를 조사하여 그 명칭을 분류하는 방법을 고찰한 시각도 있다. 즉 음서제도가 父・祖나 다른 친족의 음덕에 의하여 그 자손을 관직에 나가게 하는 제도라고 정의해 볼 때 음서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친족 쌍방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해 본 것이다.17)

이러한 관점에서《高麗史》선거지의 음서조에 명시된 바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된다.

⟨₩ 1⟩	蔭叙フト	除授되는	親族의	節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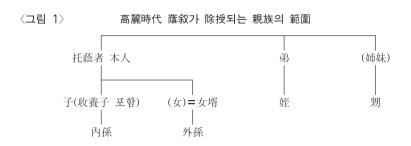
번호	시	7]	기사의 형 태	子	收養子	孫	外孫	女壻	弟	姪	甥
1	목 종	즉 위 년	教書	0							
2	현 종	5년 12월	教書	0		0			0	0	
3	숙 종	즉 위 년	詔書	0							
4	"	5년 2월	詔書	0							
5	예 종	3년 2월	詔書	0	0	0					
6	인 종	5년 2월	判文	0	0						
7	"	12년 6월	判文	0	0	0	0			0	0
8	"	13년윤2월	判文	0		0	0				
9	고 종	40년 6월	詔書	0	0	0	0	0		0	0
10	충렬왕	8년 5월	教書	0	0	0	0	0		0	0
11	충선왕	즉 위 년	教書	0	0	0	0	0		0	0
12	"	복 위 년	教書	0		0	0	0		0	0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蔭叙에 의함.

¹⁵⁾ 盧明鎬、〈高麗時代 承蔭血族과 貴族層의 蔭敍機會〉(《金哲埈華甲紀念論叢》, 知識産業社, 1983;《高麗時代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知識産業社, 390等).

¹⁶⁾ 金毅圭, 앞의 글 참조.

이 〈표 1〉에 의할 때, 시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려시대에 음서를 제수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子(收養子 포함)・內孫・外孫・女壻・姪・甥・弟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받는 음서의 명칭도 각각 父蔭・祖蔭・外祖蔭・妻父蔭・伯父蔭・叔父蔭・甥舅蔭(外叔父驚)・兄蔭이 될 것이다. 음서의 혜택을 받은 인물과 그 음서의탁의 대상이 된 인물을 편이상「受蔭者」와「托蔭者」라고 불러 두고, 음서가 제수될 수 있는 이들 친족관계를 그려 보면 〈그림 1〉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高麗史》선거지의 음서조 규정에 의할 때 이러한 친족의 범위 안에서 시행되는 8개의 음서가 가장 전형적이며 일반적인 음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음서가 시행된 실제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이러한 친족의 명칭이 붙는 음서 이외에도 曾祖蔭¹⁸⁾・高祖蔭¹⁹⁾・外高祖蔭²⁰⁾・高祖之父蔭²¹⁾・父之外高祖蔭²²⁾・七代祖蔭²³⁾과 같이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친족의 명칭이 붙는 음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고려시대의 음서는 규정에 나타난 범위 안에서 시행된 음서와 그 규정을 벗어나 시행된 음서라는 두 가지 종류의 음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¹⁸⁾ 崔肅의 증손 崔懋가 증조의 蔭을 받아 관리가 되었다(《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1년 2월).

^{19)〈}張文緯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96~97쪽,

^{20) 〈}許載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107等,

^{21)〈}張忠義墓誌銘〉(《朝鮮金石總覽》, 133쪽.

^{22)〈}梁元俊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145\,

^{23) 〈}吳孝元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268쪽.

그런데 규정을 벗어나 시행된 음서를 살펴 보면 이 음서들은 모두「功臣 蔭叙」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즉 이 음서의 탁음자들을 조 사해 보면 그들은 모두 配享功臣, 三韓功臣 혹은 功臣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⁴⁾ 즉 증조음 이상의 친족의 명칭이 붙는 음서를 받은 인물들 은 모두 공신 자손이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공신 자손이라는 자격으로서 그 음서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규정 내의 범위에 서 시행된 음서의 실제 사례를 조사해 보면, 부음·조음 등과 같은 음서의 탁음자들은 공신이 아니더라도 그 자손들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수 있었음 을 알 수 있다.²⁵⁾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고려시대의 음서는 규정의 범위 안 에서 시행된 음서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음서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일반적인 음서와 공신 음서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신음서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勳功蔭叙」에 속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高麗史》 선거지에 나오는 공신 자손에 대한 음서의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의 훈공음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 다. 조종 묘예에 대한 음서도 마찬가지의 성격으로 파악하여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법제적으로 마련된 규정과 실제의 사례를 아울러 종 합해 볼 때, 고려의 음서는 일반적인 음서와 공신음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 에서의 훈공음서로 일단 대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고려시대의 음서를 이렇게 두 종류의 성격을 가진 음서로 파악하려 할 경우 이 음서의 명칭을 조선시대의 기록에 따라서「門蔭」과「功蔭」이라는 명칭으로 불러보자는 안이 제시되었다.26)즉 고려시대에 시행된 음서 가운데《高

²⁴⁾ 예컨대 曾祖蔭은 配享功臣인 崔肅, 父之外高祖蔭은 三韓功臣인 崔英休, 高祖 蔭은 功臣 張元之를 托蔭者로 하여 각각 시행되었다.

²⁵⁾ 예컨대〈金諴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 356~357쪽 및〈崔裒抗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113~114쪽 참조.

^{26) &}quot;吏曹判書 李稷이 상소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그 상소를 略하면 다음과 같다. '…門蔭·功蔭子弟를 叙用하는 법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음과 공음 이외에 職이 없는 자제들은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才幹이 있는 자를 大小의 관리들에게 천거하게 하고 內外祖父의 관직과 이름을 적어서 本曹에 바치면 書·算·律로써 그의 能否를 시험하여 바야흐로 서

麗史》선거지 음서조의 규정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음서를 「門蔭」이라 하고, 공신자손이거나 특별한 공훈을 세운 관리의 자손에게 내려 준 음서를 「功蔭」이라고 파악하자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시행된 음서의 성격을 이와 같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규정과 아울러 그 규정의 미비함, 또 실제의 시행 사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음서를 이와 같은 문음과 공음으로 분명하게 분류해 줄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실제로 고려시대의 음서 시행 사례를 보면 음서라는 명칭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막연히「蔭」이라 표현하는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음서들이 과연 문음과 공음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모호한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특사음서와 공신음서 등과 같은 분류도 막상 그실제를 조사해 보면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 따라서 문음과 공음이라는 용어는 다소 그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지만, 고려의 음서의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리라도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말하자면 하나의 역사적 용어로서「門蔭」과「功蔭」의 개념을도입해 볼 때 고려 음서제도의 실상을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음서의 시행시기

고려의 음서를 크게 보아 일반적인 음서(門蔭)와 특별한 음서(功蔭)로 나눌수 있다면 이러한 음서는 언제 시행되었던 것일까.

음서 시행에 관한 규정이《高麗史》선거지의 凡蔭叙 이외에도 凡叙祖宗苗裔와 凡叙功臣子孫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세 기사에 나타난 음서의 시행 계기를 다른 관련 기록들을 참조하여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이 된다.

용하게 하면 요행을 바라는 무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 의견을 따랐다"(《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2월 을해). 즉 이 기사에 의하면 적어도 조선의 태종 5년 이전에 이미 門蔭과 功蔭이라는 두가지 음서에 의한 관리등용법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金龍善,〈朝鮮前期의 蔭敍制度〉,《아시아文化》6,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90; 앞의 책) 참조.

〈丑 2〉

蔭叙 施行의 時期와 그 契機

번호	연	대	蔭叙	叙功臣 子 孫	叙祖宗 苗 裔	시행의 계기
1	목 종	즉 위(12월)	0			왕의 즉위
2	현 종	5년 12월	0	0		金訓 등의 쿠데타에 따른 포상
3	문 종	6년 10월		0		王姪의 책봉
4	"	37년 윤6월		○(判)		<判 文>
5	숙 종	즉 위(11월)	0	0	0	왕의 즉위
6	"	3년 10월			0	왕의 책봉과 그에 따른 太廟親享
7	"	5년 2월	0		0	왕태자 책봉
8	예 종	3년 2월	0	0	0	왕의 책봉
9	"	4월		0	0	尹瓘의 平女眞과 그에 따른 大廟親享
10	"	6년 1월		0		왕의 生辰에 따른 포상
11	인 종	5년 2월	○(判)			<判 文>
12	"	8년 12월		○(判)		<判 文>
13	"	12년 6월	○(判)			<判 文>
14	"	13년 윤2월	○(判)			<判 文>
15	의 종	16년 (5월)			0	盜의 발생 등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恩賜赦免
16	"	21년 9월		0	0	南京으로 부터의 還京
17	"	23년 4월		0	0	西京으로 부터의 還京
18	신 종	즉 위(11월)		0	0	왕의 즉위
19	고 종	40년 6월	0	0	0	왕 즉위 40년의 경축
20	충렬왕	8년 5월	0	0	0	루에 따른 恩賜와 赦免
21	충선왕	즉 위 (1월)	0	0	0	왕의 즉위
22	"	복 위(10월)	0	0	0	왕의 복위
23	충숙왕	12년 (10월)		0	0	왕비의 병환에 따른 宥赦
24	공민왕	5년 6월		0		奇轍 일당 제거 후 실시
25	"	12년 5월		0		倭寇의 내침 등 어려움에 따른 宥赦
26	"	23년 3월		0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宥赦?
27	우 왕	원년 2월		0		n,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에 의함.

이 〈표 2〉에 나타나듯이 음서는 우선 새 국왕의 즉위나 복위, 왕과 왕태후, 세자의 책봉, 기타 다른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西京과 南京을 순행하였을 때에도 음서가 시행되었으며, 기타 국가적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음서가 시행되었다.²⁷) 즉 고려시대에 국왕의

²⁷⁾ 朴龍雲, 앞의 책, 27~30쪽.

즉위 등과 같은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에 대규모의 恩赦가 베풀어지는 것이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 가운데 공신 자손·조종 묘예·5품 이상 관리의 자손 등에게 내려진 은전이 바로 이와 같은 음서의 혜택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만 본다면 고려시대의 음서는 특별한 경우에 간헐적으로 제수된 非常例의 특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 이 규정에 나타난 음서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문음과 공음 중 공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음은 공신 자손이거나 특수한 공훈을 세운 관리의 자손에게 주었던 음서였던 만큼 그 음서의 성격상 특수한 경우를 당하여 부정기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음은 어떠한 시기에 실시되었던 것인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음서의 시행 시기에 대하여 현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다.²⁹⁾ 그러나 실제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음서는 연중어느 달이나 제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려시대의 음서는 어느 때나 시행될 수 있는 恒例的인 제도였다고 보여진다.³⁰⁾

고려의 과거제도의 경우 특히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製述科의 시험도고려 전기의 경우를 살펴 보면 주로 3·4·5월에 많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2월·6월·7월·8월·9월에도 가끔 시행되었으며 10월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31) 즉 과거의 시험조차 반드시 정기적인 시기에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험의 급제자들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시기에 관리로 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2월~5월 사이의 봄에 급제한 급제자들에게 초

²⁸⁾ 許興植, 앞의 책, 210~212쪽.

²⁹⁾ 盧明鎬는 특사음서와 달리 일반음서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험-논어·효경-을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世系를 참고하여 1년에 3·6·9·12월 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음서를 제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朴龍雲은 위의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고려시대에는 常例, 즉 정기적으로 제수되는 음서(常例奏蔭)가 있었으며 그 시행 시기도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12월 무렵으로 파악하였다(朴龍雲, 앞의 책, 98~101쪽).

³⁰⁾ 金龍善, 앞의 책, 42~43쪽,

³¹⁾ 朴龍雲,〈高麗時代의 科學-製述科의 運營〉(앞의 책, 302~557쪽)에는〈科試 設行과 製述科 及第者〉라는 資料가 첨부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고려시대의 제술과가 시행된 사례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이 자료의 번호 1에서 129까지의 고려 전기 科試 시행 시기를 조사한 결과에 의거하였다.

직을 주는 시기가 정기인사가 있는 12월로 보게 되면 너무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문음과 같은 일반적인 음서가 정기적인 시기에 시행되었다고 보는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여러각도에서 검토해 보아야 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음서의 제수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험이 부과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문제도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講五經中一 四書中一"32)이라는 시험 절차를 통한 뒤에야 음서의 제수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일반 관리의 자손 뿐만이 아니라 공신 자손도 모두 이 蔭取才의 시험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33) 그러나 고려의 경우 음서시행을 위한 시험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또「특사음서」나「공신자손 음서」와 같은 공음의 경우 시험이라는 절차와 관계없이 바로 관직에「直補」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음서 즉 문음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여겨진다. 따라서 고려시대 음서는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나 관직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조선시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입사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4) 음서제도의 운영

(1) 음서의 연령

《高麗史》선거지 음서조에는 "모든 음서 출신자는 나이 18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실제의 음서 시행 사례를 조사해 보면, 44개의 사례 가운데 18세에 음서의 제수를 받은 것은 두 사례 뿐인데 비하여, 70%에 가까운 31사례가 17세 이하에서 음서를 제수받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34) 그러므로 음서조의이 명문은 적어도 死文化된 규정이었거나 아니면 고려 말에 제정된 법제였

^{32) 《}經國大典》 권 1, 吏典 取才 蔭子弟.

³³⁾ 金龍善, 앞의 책, 200~201쪽.

³⁴⁾ 金龍善, 위의 책, 76~79쪽.

을 것이라고 짐작함 수밖에 없다.

어떻든 실제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고려시대 음서를 제수받는 연령은 최저 5세에서 최고 33세로까지 나타나는데 그 총평균 연령은 15.4세가 된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고려 전기에서 의종 때까지의 평균 연령이 17.2세, 명종에서 원종까지의 기간은 18.5세, 충렬왕에서 충목왕 때까지는 13.7세, 공민왕에서 공양왕까지는 12.3세로 나타난다. 즉 후기로 갈수록 음서의 혜택을 받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려 전시기에 걸친 과거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제술과의 경우 24.4세로 조사된 바 있으며, 국자감시의 평균합격연령은 18.68세로 나타났다.35) 즉 음서 출신자들은 과거 급제자에 비하여 대략 9년 정도 앞서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음서출신자들은 조기에 관직을 받아 출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녹봉이나 토지의 지급혹은 다른 경제적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음서제도가 고려의 지배계층들에게 그 자손의 입사로로서 중요한 구실을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되어야 할 것은 20세 이상이 되어 음서를 받는 사례도 11개로 전체의 25%나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도 있었던 것이다.

(尹承解는)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18세에 司馬試에 일등으로 합격하였으나 科擧에 두 번이나 응시하여도 합격하지 못하자 門蔭으로써 관리가 되었다 (李奎報、《東國李相國集》 권 35, 尹承解墓誌銘).

즉 이 기사에서 보이듯이 尹承解는 처음부터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한 뒤에야 관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를 음서 출신의 인물 가운데에 상당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직에의 조기 진출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음서를 제수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정반대의 경우가 있었다는 점도 동시에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³⁵⁾ 朴龍雲, 앞의 책, 324쪽.

(2) 초음관직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初蔭職의 수여 규정 가운데 그 직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高麗史》선거지 음서조의 기사 중 인종대에 반포된 두 개의 判文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이 규정을 보기로 하자.

致仕 및 見任宰臣의 直子는 軍器主簿同正, 동 收養子外 內外孫・甥・姪은 良 醞令同正으로, 前代宰臣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동 內外孫은 令史同正으로, 樞密 院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등 牧養子外 內外孫・甥・姪은 良醞丞同正으로, 左・右僕射外 六尚書 이하 文武 正三品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동 收養子外 內外孫・甥・姪은 主事同正으로, 從三品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동 收養子外 內外孫・甥・姪은 主事同正으로, 從三品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동 收養子外 內外孫・甥・姪은 令史同正으로, 正從四品의 直子는 良醞丞同正으로, 正從五品의 直子는 主事同正으로 한다(《高麗史》 권 75, 志 29, 選舉 3, 銓注 蔭叙 인종 12년 6월 判文).

前代宰臣의 直子는 良醞丞同正, 内孫은 令史同正, 外孫은 史同正으로 한다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蔭叙 인종 13년 윤 2월 判文).

이 기사를 알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은데 初蔭職은 탁

⟨표 3⟩

高麗時代 初蔭職 授與規定

托蔭者		直 子	-	收 養	子	內 外	孫	甥	姪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致 仕 見 任 宰 臣	종 1~2	軍器注簿同正	정 8	良醞 令 正	정 8	良 醞 令同 正	정 8	良 醞 令 同 正	정 8
前代宰臣	"	良醞令同正	"			令史同正	吏屬		
(前代宰臣)	(")	(良醞丞同正)	(정9)			内孫:令) 史同正 (外孫:史)	(")		
樞密院	종 2	良醞令同正	정 8	良醞丞同 正	정 9	良 醞 丞同 正	정 9	良 醞 丞同 正	정 9
左右僕射 ・六尚書 以下文武 正 3 品	정 2 정 3	"	"	主事同正	吏屬	主事同正	吏屬	主事同正	吏屬
從 3 品	종 3	"	"	令史同正	"	令史同正	"	令史同正	"
正・從4品	4	良醞丞同正	정 9						
正・從5品	5	主事同正	吏屬						

음자의 관품과 치사 여부, 수음자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무반의 초음직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등 음직 수여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36) 그러나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첫째 초음직으로 수여된 관직은 實職이 아닌 散職인 同正職이었다는 점,37) 둘째 그 관품은 크게 정8품과 정9품의 품관 동정직 및 이속동정직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따라서 초음직에 차이가 있어서, 父蔭을 받는 경우에는 주로 품관직을 받게 되지만 부음 이외의음서를 받을 때에는 대체로 이속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음을통하여 입사하는 것이 음서 가운데 가장 유리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실제로 제수된 음직의 사례를 인종대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반드시 규정에 나타난 관직만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 품계는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38) 그런데 고려 전기에는 산직인 동정직도 수여되었지만 반수가까이는 실직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후기에는 초음직이 모두실직으로 바뀜과 아울러 품관으로서의 초직인 權務職이39) 음직으로 제수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제의 사례는 음서 출신자들이 조기에 실직을 가진 관리가 됨으로써, 더 빨리 고위 관품으로 승진해 갈 수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사된 127개의 사례 가운데 이들의 초사직을 분류해 보면 대부분이 무관직보다는 문반직을 제수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08:19). 이러한 사실은 음서를 통하여 무반들이 그의 자손들을 문반으로 改班시켰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외직보다는 경관직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124:3), 그것은 모두 일반 관직으로 주어진 것이고 文翰職은 특수한 사례 2개를 제외하면 전혀 제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있어서 음서의 초직은 과거 급제자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40)

³⁶⁾ 朴龍雲, 앞의 책, 54쪽.

³⁷⁾ 同正職에 대하여는 金光洙、〈高麗時代의 同正職〉(《歴史教育》11・12, 1969) 참조.

³⁸⁾ 金龍善. 앞의 책. 64~76쪽.

³⁹⁾ 權務職이 品官으로서의 初職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은 金光洙, 〈高麗時代의 權 務職〉(《韓國史研究》30, 1980), 46~53쪽 참조.

⁴⁰⁾ 金光洙, 위의 글.

(3) 탁음자의 관품

음서의 혜택을 자손들에게 주기 위하여 고려의 관리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즉 탁음자의 관품과 관직은 《高麗史》 선거지 음서조의 기사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 중 주요한 것은 앞에서 〈표 3〉으로 인용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5품 이상의 관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려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시기에는 일단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 그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자손들은 어린 나이에 유리한 관직을 받아서 관리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공정하게 시행되었다면 5품에서 1품까지의 각관품에 걸쳐서 탁음자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1~2품의 관직보다는 4~5품의 하위관품에 있을 때 그의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탁음자가 더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시행된 사례를 보면 2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된 이후에 탁음자가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사망한 다음에 탁음자가 된 관리도상당수 보인다. 즉 음서에서 가장 유리하였던 父蔭의 경우 그 탁음 때의 관직이 규정된 관품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41) 祖蔭과 같은 경우에는 생존했을 때보다 죽은 뒤 탁음자가 된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42)을 주목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관리들은 5품 이상의 직위를 가짐으로써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그 권리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두었다가 그 후 필요하게 될 때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윤승해의 경우 그는 과거의 급제에 실제한 뒤에야 음서를 통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병약하다는 이유로 과거 응시 대신에 음서로 입사할 것을 부친으로부터 강요당한 李頲이나,⁴³⁾ 집이 가난하

⁴¹⁾ 조사된 15인의 父蔭 托蔭者 가운데 2품 이상 관리가 10인, 3품 3인, 4품 2인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사망자는 2인, 미상 3인, 생존자 10인이다(金龍善, 앞의 책, 60쪽).

⁴²⁾ 祖蔭의 사례 17인 가운데 당시 생존자 5인, 사망자 9인, 불명 3인으로 나타난 다(金龍善, 앞의 책, 90~91쪽).

여 과거에 의한 진출이 어렵게 된 이후에 비로소 음서 입사를 택한 許載 등의 경우44)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음서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모두가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택해야 하는 입사로가 아니라 탁음과 또는 수음자가 필요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입사로가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자손들은 확보된 음서의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려시대 관리의 자손들은 음서의 종류가 다양했던 만큼이나 광범위한 음서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겠지만,45) 그에 비례하여 음서의 제수도 실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고려시대의 관리들은 일단 5품 이상 관직을 가짐으로써 그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권리는 몇 번이나행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즉 「1인 1회」로서 1인의 자손에게 혜택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多子」에게 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高麗史》선거지의 음서관계 기사에는 '許一子蔭職'46)·無職子許入仕'47) 등의 기록만이 나올 뿐 구체적 회수나 인원은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 다만 공신음서의 경우 태조공신이나 삼한공신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음서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이 《高麗史》기사에 나타나므로, 이러한 공신의 자손들은 동일 탁음자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8) 그런데 일반 음서 즉 문음의 경우에는 어떠하였을까. 이에 관하여 기존의 연

^{43) 〈}李頲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 280\.

^{44) 〈}許載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107\.

⁴⁵⁾ 盧明鎬. 앞의 책. 390~402쪽.

^{46)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蔭叙 숙종 5년 2월 詔.

^{47) 《}高麗史》권 75. 志 29. 選舉 3. 銓注 凡叙功臣子孫 숙종 즉위 詔.

⁴⁸⁾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특히 공신으로 책봉된 張元之에 의탁하여 그의 자손 2명이 음서의 혜택을 받은 사례를 꼽을 수 있다(〈張文緯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96~97쪽 및〈張忠義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 396쪽 참조).

구는 현재「一人 一子」를 규정짓는 명문이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관료가 5품직에 승진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재임하는데 한번만의 음서 기회 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실제로 음서 시행의 사례를 볼 때에도 1인의 관료가 여러 사람의 자손에게 음서를 준 사례가 다수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 「一人 多子」 또는 再蔭, 三蔭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49)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구체적 명문이 남아 있지 않 기 때문에 일단 실제의 시행 사례를 통하여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다. 예컨대 부음의 경우, 음서의 시행에서 이 음서를 제수받는 것이 가장 유 리하였다는 사실은 규정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부음의 탁음자들은, 앞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품 이상 고위관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또 父 가 이미 3품의 고위 관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신음 서를 받으려 한 경우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50) 또 祖蔭의 경우에도 사후에 탁음자가 많다는 사실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서 볼 때에 같은 인물이 재음, 삼음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전 체 사례에서 찾아지는 것은 그다지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실사례에 서 75명의 탁음자가 있는데 그 중 5명만이 2회 이상 탁음자가 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51) 물론 새로운 자료가 찾아지면 이러한 숫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재음 이상의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 인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이다.

또 형제 간에 여러 명이 음서를 받는 경우에도, 여러 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 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의해서 보면 이들이 받은 음서의 명칭이나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관리 한 명이 여러 차례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부음·조음등의 음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숙부음, 외숙부음과 같은 종류의 음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5품 이상의 관리는 1회의 음서 기회를 가질 뿐이었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

⁴⁹⁾ 朴龍雲. 앞의 책. 102~113쪽.

⁵⁰⁾ 예컨대 參知政事 李作仁은 太祖功臣蔭을 사칭하여 그의 子에게 음서를 받게 하다가 탄핵되기도 하였다(《高麗史》권 5, 世家 5, 현종 21년 11월 기사 참조).

⁵¹⁾ 金龍善, 앞의 책, 85쪽.

는 여러 종류의 음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여러 형제가 음서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음서는 이러한 운영 원리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음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음서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고려의 문벌귀족 계층에게 유리한 입사로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고려사회에서는 음서를 통하여 관계에 조기 진출하여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음서 출신자들은 限品의 제약없이 누구나 고위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음서 출신의 인물 가운데 41.9%나 되는 인물들이 과거에 다시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52) 이러한 사실은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이후에 다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음서를 제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서 대신에 과거로 진출하려 하였으며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가 된 이후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는 관리들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음서가 시행되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규정이나 시행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좀더 넓은 시각에서의 검토도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검토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때 고려 음서 제도의 역사적 의의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金龍善〉

⁵²⁾ 金龍善, 위의 책, 96~104쪽.

찾 아 보 기

객사사 客舍史 167 거부서 車府署 101 [7] 거자과 擧子科 372 372 거자시 擧子試 가구소 街衢所 246 거평부곡 居平部曲 194 가업전 家業田 222 검교직 檢校職 $110, 121 \sim 124, 152$ 가음 家蔭 443 견룡군 牽龍軍 288 가전 家田 333 겸임제 兼任制 149 간관 諫官 82, 145, 146, 150, 154 겸직제 兼職制 144 간수군 看守軍 351 경 京 184 간쟁 諫諍 88, 111 경군 京軍 4,5,277,304,309,313,333, 감무 監務 3, 168, 421 350, 351, 353, 361 감문군 監門軍 303 경궁 梗弓 359 감문위 監門衛 4, 271, 281, 291, 292, 경궁군 梗弓軍 357,359 351 경기 京幾 5,236~240 감시 監試 392, 431 경기제 京幾制 241,242 감작 監作 119 경기좌우도 京畿左右道 239,248 감찰방 監察房 85 경기통치제 京畿統治制 244 감찰사 監察司 87 경기 8현 京畿 八縣 247 감찰어사 監察御史 85,263 경력 經歷 256 감창사 監倉使 250 경력사 經歷司 47, 74, 239, 256, 429 감창사제 監倉使制 263 경상진주도 慶尙晋州道 253 강예재 講藝齋 384 경소사 京所司 44 강조 康兆 50, 314 **경・외군 혼성제설** 京・外軍 混成制説 강화도 江華道 303, 311 개경 關京 111 개경시 開京試 374,383 경의 經義 389, 390 경중5부 京中五部 246 개경향시 開京鄕試 383 경직 京職 111, 420 개성부 開城府 3, 237, 238, 240, 241, 244 경학박사 經學博士 163 개성부도 開城府道 246 계사 計司 62 개성부윤 開城府尹 242, 244, 246 계수관 界首官 3,44,47,174,182,236, 개심사 開心寺 314 249 개심사석탑기 關心寺石塔記 315,318 계수관시 界首官試 6,373 개정전시과 改定田柴科 122, 123, 129, 고공사 考功司 40,44 140 개주 開州 240 고려식목형지안 高麗式目形止案 79

고시관 考試官 431 《구장》 《九章》 395 고신서경 告身署經 146 9품관제 九品官制 109 고예시 考藝試 378,439 국 局 1 국자감 國子監 420 고취서 鼓吹署 101 공경 公卿 국자감시 國子監試 6,371,372 134 국자사업 國子司業 공관 公館 205 432 공병 公兵 군기 軍機 56 322 공부 貢賦 45, 58 군기감 軍器監 62 공수사 公須史 167 군반씨족 軍班氏族 5, 295, 298, 300, 공수전 公須田 302, 303, 326, 353, 354 205 공신음서 功臣蔭敍 448 군반씨족제설 軍班氏族制說 294, 299, 공신자손음서 功臣子孫蔭敍 301.311 445 공역서 供驛署 101 군부 軍部 18, 19, 284 공음 功蔭 449 군부사 軍簿司 47 공장 工匠 군사도 軍事道 246, 293, 296, 326, 331 355 공장대 工匠隊 342 군역 軍役 352, 353, 355, 356, 361 공전 公田 궁원전 宮院田 335 356 공첩상통식 公牒相通式 102 군인수조지 軍人收租地 307 공학군 控鶴軍 288 군인전 軍人田 5, 297, 298, 301, 308, 과거3층제 科擧三層制 382~384 332, 333, 335, 353~355, 361 과거제 科擧制 109,226 군인전시과 軍人田柴科 305 과거제 도입 科擧制 導入 $367 \sim 371$ 군인호 軍人戶 군적 軍籍 과시 科試 413 300 과의도위 果毅都尉 317 군전 軍田 333 관계 官階 군현병합책 郡縣倂合策 171 11, 108, 124, 125, 134, 136 관직 官職 군현제 郡縣制 178,195 108, 111, 134 관찰사 觀察使 165, 259 군현제영역 郡縣制領域 195 광군 光軍 313~318, 322, 324, 335 군호 軍戶 355 광군도감 光軍都監 314,316 군호연립 軍戶連立 356,361 광군사 光軍司 103, 314, 316 권무관 權務官 118, 120, 424 권무직 權務職 광록시 光祿寺 100 118, 120, 121, 422, 439, 광종 光宗 367 455 광평성 廣評省 1, 10, 12, 15, 16, 18, 19, 귀족제사회 貴族制社會 148,152 24, 38, 83, 151 귀주성 龜州城 345 광흥창 廣興倉 균전제 均田制 294 61 교사서 郊社署 근장 近仗 4,287 101 교위 校尉 금내 9관 禁內九官 340 104 교정도감 敎定都監 37 금내 6관 禁內六官 97 9시 九寺 9 금내 6국 禁內六局 420 구의 口義 393 금내학관 禁內學官 104

금성 禁省 30 금오대 金吾臺 58,59 금오위 金吾衛 4,271,281,289,350,351 금유 今有 2,159,161,185 급제방방교서 及第放牓敎書 409,410 기관 記官 119 기인 其人 331 기인선상 其人選上 230 기인제도 其人制度 229 기현 畿縣 238, 240, 241 김부 金傅 232 김부고서 金傅誥書 12.14~19 김치양의 난 金致陽의 亂 54

[ㄴ]

남경 南京 112, 184 남궁시 南宮試 372 남반 南班 6, 110, 365 남북원 南北院 49 남북2원 南北二院 49 남성시 南省試 372 낭계 郎階 130 낭관 廊官 14 낭사 郎舍 32, 35, 37, 86, 92, 96, 98, 145, 150, 153, 154 낭장 郎將 340 낭중 郎中 44 내군 內軍 10, 281, 284 내군장군 內軍將軍 280,281 내방고 內房庫 201 내봉성 內奉省 1, 10, 12, 15, 18, 19, 24 내사 內史 24 내사령 內史令 19,20 내사령직 內史令職 19,21 내사문하 內史門下 25 내사문하성 內史門下省 1,21,28 내사방 內史房 20 내사성 內史省 24,28 내상 內相 53,98

내성 內省 30 내시 內侍 366 내의령 內議令 20 내의사인 內議舍人 12 내의성 內議省 1,12,15,16,24,83 내장택 內莊宅 201 내재추제 內室樞制 내제사 內諸司 49 내지제고 內知制誥 내천부 內泉部 10 내한 內翰 98 노대 弩隊 341 노동부대 勞動部隊 335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185 녹과전 祿科田 247 녹봉 祿俸 16,21 녹패 祿牌 61 능회서 廩犧署 101

[=]

다방 茶房 366 단사제 單司制 40 당대등 堂大等 163, 164, 222 당리 堂吏 69 당인 堂引 402 당제 堂祭 223, 224 당후관 堂後官 57 대 隊 5,341 대간 臺諫 36, 37, 82, 86, 92, 145, 148 대간일체 臺諫一體 87 대간제도 臺諫制度 151 대관 臺官 82, 145, 146, 150 대광 大匡 16, 17, 125 대도독부 大都督府 173 대도호부 大都護府 173 대등 大等 164, 222 대리시 大理寺 100 대표서 大廟署 101 대부 大夫 134

대부계 大夫階 130,133 대부시 大府寺 101 대상 大相 125,126 대성 臺省 82 대승 大丞 125 대승서 大乘署 101 대우포 大于浦 347 대장군 大將軍 5 대장청 臺長廳 85 대정 隊正 5,331,340,341 대학사 大學士 113 도감 都監 23,103 도고시관 都考試官 433 도관 都官 40,44 도관찰출척사 都觀察黜陟使 177, 239, 동문원 同文院 97, 420 256, 257 도당 都堂 2, 38, 39, 47, 64, 69, 70, 72, 80 도독부 都督府 319 도령 都領 5,340,348 도병마녹사 都兵馬錄事 120 도병마사 都兵馬使 1, 2, 23, 35, 65, 72, 104, 106, 152 도병마사제 都兵馬使制 66 도부서 都部署 250, 251, 263 도사 都事 256 도성 都省 1,13,153 도순문사 都巡問使 266 도염원 都鹽院 62 도재고판관 都齋庫判官 120 도절제사 都節制使 266 도정사 都正司 58,59 도제 道制 177, 183 도지 都知 288 도첨의사사 都僉議使司 37 도탕군 跳盪軍 357, 359 도통 都統 239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 2,38,47,64, 명경과 明經科 369,391,415,417,424, 66, 72, 103, 104, 429 도필 刀筆 118

도필리 刀筆吏 77,118 도항사 都航司 10 도호별초 都護別抄 344 도호부 都護府 173, 182, 319 도호부사 都護府使 319 독권관 讀卷官 433 동 洞 215 동경(경주) 東京(慶州) 112,184 동계 東界 339 동계안집사 東界安集使 265 동고시관 同考試官 433 동궁관 東宮官 113 동녕부 東寧府 264, 265 동당시 東堂試 375, 376, 379 동반 東班 110 동정직 同正職 110, 121~124, 424, 427, 455 동지공거 同知貢擧 381,433,434,436 동지원사 同知院事 114,115 둔전 屯田 347

[2]

리(동) 里(洞) 208, 210, 215, 219 리제 里制 221

[🏻]

마군 馬軍 278, 281, 303, 309 마군광군 馬軍將軍 281 마대 馬隊 341 막사 幕士 119,402 만호부 萬戶府 55 망군정인 望軍丁人 328,329 면계법 面啓法 149 면리제 面里制 206, 210 427 명경급제자 明經及第者 418 명경업(과) 明經業(科) 5,392,406,407 명법업 明法業 394 [日] 명산업감시 明算業監試 395 명서업 明書業 395, 411, 430 박서 朴犀 343,345 명전 名田 356 반주 班主 4 명주도 溟州道 263 발병권 發兵權 14 목 牧 173 발화군 發火軍 357, 359 목패 木牌 390 방리제 坊里制 213, 216, 219 무과 武科 377 방목 榜目 409 무관직자 無官職者 423 방방교서 放牓敎書 417 무산계 武散階 134, 137, 153 방방의 放腸儀 436 무산계전 武散階田 137 방백 方伯 321 무신란 武臣亂 방수군 防戍軍 352 293, 344, 348 무학재 武學齋 384, 385 방수떡 防戍役 306 무훈공신 武勳功臣 368 방수장군 防戍將軍 263,348 묵의 墨義 389 방어군 防禦郡 173,182 문과 文科 방어사 防禦使 377 321, 343 문극겸 文克謙 404 방어주 防禦州 112 문반품관 文班品官 112 방어주・진 防禦州・鎭 문복 門僕 119,402 백갑 白甲 288 문산계 文散階 109, 124, 125, 130, 134, 백관공복 百官公服 126, 228 153 백부음 伯父蔭 447 문생 門生 435 백서성 白書省 10 문위 文闡 377 백성 百姓 218,336 문음 門蔭 6, 122, 449 백성층 百姓層 206 백자과 百字科 문음서용 文蔭叙用 365 372 백정 白丁 341, 360, 361, 391, 406 문하성 門下省 1,24,25,28,37 백정군 白丁軍 340,341 문하시랑평장사 門下侍郎平章事 114 백정대 白丁隊 342, 343, 360 문하시중 門下侍中 1,25,28,30,32,37, 번상입역 番上立役 297,309 114, 115, 142 번진 藩鎭 239 문하평장사 門下平章事 114 별공 別貢 197,199 문한관 文翰官 15,90 별무반 別武班 5,342,357,358,360, 문한직 文翰職 420, 424, 427 물장성 物藏省 10 361 별사 別賜 409, 415 미입사직 未入仕職 110,119,120 별장 別將 340 민부 民部 62 별청재추 別廳宰樞 72 민장 民長 216 병농일치 兵農一致 334, 361 민전 民國 332 병마권 兵馬權 14 밀직(추신) 密直(樞臣) 71 병마사 兵馬使 237, 259, 262 밀직사 密直使 55

병마사기구 兵馬使機構 260 병마사영 兵馬使營 261 병마사제 兵馬使制 265 병마판사제 兵馬判事制 23 **병** 早 兵部 1, 10, 12, 14, 15, 18, 19, 45, 164 병사 兵史 167, 403 병정 兵正 167 보군 步軍 278, 281, 303, 309, 355 보군장군 步軍將軍 281 보문각 寶文閣 97,420 보반 步班 341, 342, 357 보승군 保勝軍 4,289,296,297,309, $310, 318, 322, 325 \sim 330, 332 \sim 334, 351$ 보창군 保昌軍 340,341 보창잡군 保證雜軍 341 복시 覆試 382, 435 복업 卜業 394, 396, 397 봉의서 奉醫署 429 봉족 奉足 308, 309 봉행6조 奉行六條 188, 189, 228 부곡 部曲 3,192,193,405 부곡리 部曲吏 3,221 부곡민 部曲民 336 부곡인 部曲人 196 부곡정 部曲丁 342 부곡제 部曲制 195 부곡제영역 部曲制領域 195 부농 富農 355 부리 府吏 221 부병정 副兵正 167,403 부병제 府兵制 294, 295, 317 부병제설 府兵制說 294, 298, 311 부위제도 府衛制度 282,284 부음 父蔭 447, 455 부창전 副倉正 167, 403 부호장 副戶長 164, 167, 403 부호정 副戶正 403 북계 北界 339 분대 分臺 85, 263

분도관 分道官 344 분도장군 分道將軍 344 분도제 分道制 263 분사사헌대 分司司憲臺 82 분사제도 分司制度 184 불충 不忠 402,405 불효 不孝 402,405 비서감(전교시) 秘書監(典校寺) 101 비서성 秘書省 97,420

[시]

사 士 134 사 史 167 사간원 司諫院 154 사공 司空 114 사공대 沙工隊 342 사관 史館 97, 111, 113, 420 사농시 司農寺 100, 101 사도 司徒 114 4도호 四都護 2 4도호부 四部護府 112 사록 司錄 191, 228, 421 사마시 司馬試 372 사면도감판관 四面都監判官 120 사병 私兵 14, 322 사사청 使司廳 73 사순 司楯 366 사심관 事審官 233~235 사심관제 事審官制 232 사약국 司藥局 101 사옥사 司獄史 167 사의 司衣 366 사이 司彛 366 사장 社長 213 사재시 司宰寺 101 사천대 司天臺 101, 397 사헌대 司憲臺 82, 83 삭방도 朔方道 263 산관 散官 134,358

산업 算業 394	상의 商議 71
산업강시 算業監試 408	상의국 尙衣局 101
산직 散職 110, 123, 124	상장군 上將軍 4,5
산적체계 散職體系 122	상참 上衆 134
3경 三京 112, 173	상참관 常衆官 117,118
3경제 三京制 184	상평창 常平倉 163
3공 三公 113,114	생산물지대 生産物地代 336
3관 三館 424	생천군 鉎川軍 343
3군 三軍 351	서경 署經 36, 37, 88, 89
삼례업 三禮業 398, 399	서경(평양) 西京(平壤) 112, 159, 184
삼반내시 三班內侍 49	서경유수관 西京留守官 13
삼별초 三別抄 5	서기 書記 421
삼별초정부 三別抄政府 191	서대 犀帶 116
삼사 三司 1, 2, 22, 57, 61~63, 113, 152	
3사 三師 113,114	서리직 胥吏職 110, 118, 120
삼사청 三司廳 58	서반 西班 110
3성 三省 1,2,9,25,27,44	서북면도지휘사 西北面都指揮使 265
3성6부 三省六部 9,152	서업 書業 394, 429
3성6부제 三省六部制 1,21,22,83	
3성제 三省制 21, 26, 37	서운관 書雲觀 101
상세 三稅 196	서전인 를芸戲 101 서적점녹사 書籍店錄事 120
삼장연권 三場連卷法 387, 389, 393	
	서행도 西海道 253
삼전업 三傳業 394, 399 3품군 三品軍 325, 335	선군 選軍 305, 331, 348, 360
상공 常貢 199	선군도감 選軍都監 304
장령 常領 4,290	성 成 196
	성 전 196 성균시 成均試 372
상부(보) 尙父 16 상사국 尙舍局 101,119	
상사국 尚舍局 101, 119 상서 尚書 393	성대 省臺 82 성랑 省郎 96
상서도성 尚書都省 22, 37, 44, 47, 83,	정시 省試 376
114, 143, 241, 242	성재 省宰 32, 142, 148, 154
상서령 尚書令 25, 29, 41, 42, 44, 114	
상서사 尙瑞司 103	성중관 成衆官 366 성중애마 成衆愛馬 365
상서성 尚書省 1, 24, 28, 29, 37~39,	
44, 46, 113, 114, 142 상서6부 尚書六部 1, 21, 70, 113, 115,	성행 成行 436 세공 歲貢 161
145, 148 れるユー45年 101	소 所 3,192,193,196,198~200
상승국 尙乘局 101	소경 小經 397
상식국 尚食局 101, 119	소민 所民 194 소보 少保 113
상연국 尙辇局 101	<u> </u>

소부 少傅 113 소사 少師 113 소정 所丁 342, 350 속사 屬司 41 속현 屬縣 3, 172, 174, 183 수 戌 347 수령관 首領官 256 수령관청 首領官廳 73 수원승도 隨院僧徒 358, 360 수음자 受蔭者 447 수재과 秀才科 377 수조권 收租權 354 수조지 收租地 298, 300, 301 숙부음 叔父蔭 447 순군부 徇軍部 1, 10, 12, 14, 15, 18, 19, 284 승과 僧科 6,385 **승선** 承宣 48,52∼54,148,149 승선단 承宣團 51 승선방 承宣房 53, 153, 154 승정원 承政院 53,154 승제 承制 53 승천부도 承天府道 246 승황서 乘黃署 101 시무책 28조 時務策二十八條 151, 162 안찰사 按察使 47, 169, 176, 187, 237, 시정전시과 始定田柴科 140 식록사 食祿史 167 식목녹사 式目錄事 77 식목도감 式目都監 1, 2, 35, 76, 78, 79, 104, 106, 152 식목도감사 式目都監使 116 식목편록 式目編錄 79 식목편수록 式目編修錄 79 식목형지안 式目形止案 $337 \sim 339$ 신검군 神劍軍 277 신기 神騎 341, 342, 357 신기군 神騎軍 $357 \sim 359$ 207, 210 신라장적 新羅帳籍 신량역천 身良役賤 232 신보군 神步軍 357,360

신진사류 新進士類 383 신호위 神虎衛 4,271,281,291,351 실직 實職 110,123 10도 十道 250 10도제 十道制 165, 166, 251 12군 十二軍 317, 321, 322, 323 12도생 十二徒生 6,373,375 12号 十二牧 2, 9, 159, 162, 180, 319 12주 十二州 321 쌍기 雙冀 109,367 쌍성총관부 雙城摠管府 264

[0]

아관 衙官 14 악공 樂工 405 안남도호부 安南都護府 80, 141, 319 안동대도호 安東大都護 319 안동도호부 安東都護府 184 안렴사 按廉使 170, 253, 259 안변도호부 安邊都護府 184,261 안변책 安邊策 220 안북도호부 安北都護府 184.261 안서대도호부 安西大都護府 184 249, 250, 253, 254, 263 안찰사영 按察使營 255 안찰사제 按察使制 252 안찰사제도 按察使制度 180, 183, 186 약점사 藥店史 167 안휘원 安徽院 49 압강도부서 鴨江都部署 액정국 掖庭局 366 양계 兩界 3, 236, 237, 337 양계병마사 兩界兵馬使 3,23,112, 237, 238, 260 양광충청주도 楊廣忠淸州道 253 양반 兩班 110 양부합좌 兩府合坐 70 양호 養戶 307~309,334

어사대 御史臺 36, 59, 82, 83, 86, 87, 5도 五道 3, 5, 236, 249 92, 100, 150 5도안찰사 五道按察使 3,238,252 어사도성 御事都省 21, 25, 38, 83 5도안찰사제 五道按察使制 238, 251 어사6관 御事六官 5도제 五道制 21, 22 237, 251 업경 業經 5도호 五都護 395 166 역령 役領 5도호부 五都護府 4, 289 $321 \sim 323$ 역리 驛吏 오리정 五里亭 436 205 역민 驛民 205 5역 五逆 402, 405 역서법 易書法 391 오위 伍尉 5 역역 力役 56 지주군사 五十六知州郡事 356, 361 역정 驛丁 342 5재 五宰 32, 52 역참 驛站 5재7추 五宰七樞 32 203 역참제 驛站制 5천 五賤 402, 405 203 역호 驛戶 205 옥당 玉堂 97 연립제 連立制 옥대 玉帶 116 연속 掾屬 왕경 王京 118 239, 243 왕규 王規 연합촌 聯合村 12 209 연해도 沿海道 263 왕규의 난 王規의 亂 316 염철사 鹽鐵使 59 왕식렴 王式康 160 영군 領郡 왕융 王融 3, 183 17 영리 營吏 239, 255 외관녹봉 外官祿俸 167 영삼사사 領三司事 63 외군 外軍 304, 309 영색군 寧塞軍 340,341 외리 外吏 221 영속관계 領屬關係 외역전 外役田 205 172 영송도감 迎送都監 외조음 外祖蔭 $104 \sim 106$ 447 영송도감녹사 迎送都監錄事 외지제고 外知制誥 95 120 영업전 永業田 333 외직 外職 111,420 영주 營主 239 요물고 料物庫 201 영현 領縣 172, 174 용호군 龍虎軍 4, 271, 281, 286, 350 《예기》 《禮記》 399 용후 龍喉 53 예문관(한림원) 藝文館(翰林院) 우강 右綱 111 272, 273 예보 例補 421 우군 右軍 5, 34, 340, 360 예부 禮部 우맹 右猛 45 340, 341 예부시 禮部試 375, 376, 379, 392, 433 우복야 右僕射 114 예빈성 禮賓省 101 운중도 雲中道 263 예수 例受 421 원경기 原京畿 247 예위 禮聞 원군 援軍 376 272, 273 원봉성 元鳳省 예출 例出 10, 93, 94 421 원사 院使 114 5경 五京 393 원외랑 員外郎 5군 五軍 351

470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원정양반 元定兩班 341 위숙군 圍宿軍 351 위위시 衛尉寺 100,101 유원 留院 97, 420 유일의 천거 遺逸의 薦擧 6,365 6군 3위 六軍 三衛 295 6방녹사 六房錄事 47,73,74 6부 六部 1, 2, 9, 35, 41, 46, 153, 154 6부제 六部制 27 6부판사제 六部判事制 36,145 6상서 六尙書 9 6색장 六色掌 73.74.107 6위 六衛 4, 9, 271, 281, 283, 288, 317, 322, 327 6위장사 六衛長史 283 6위제도 六衛制度 284 6절체제 六典體制 45 6조(6早) 六曹(六部) 48,154 윤관 尹瓘 357, 359 율업 律業 394 율업감시 律業監試 408 은대 銀臺 49 은대사 銀臺司 49 은문 恩門 434,436 은사 恩賜 415,418 은사급제 恩賜及弟 409 음서제 蔭敍制 6,365,437,439,441 응양군 鷹揚軍 4,5,271,281,286,350 자연촌 自然村 206,210,211 《의례》 《儀禮》 399 의업 醫業 296, 394, 408 의첩 依貼 89 의첩서경 依牒署經 146 의학박사 醫學博士 163 의합 議合 151 의형대 義刑臺 10 2군 二軍 4,271,281,284,285,287,292 잡업 雜業 2군 6위 二軍 六衛 4,5,271,281,286, 잡업(과) 雜業(科) 303, 312 이몽유 李夢游 20 이부 吏部 45

이사장제 里社長制 213 2・3 景 己・三 品 軍 318, 324, 330, 334, 336 이서 吏胥 358 이선제 李先齊 338 이속 吏屬 118,121 이속직 吏屬職 110, 119, 120, 122 28진장 二十八鎭將 2 20현령 二十縣令 2 이정 李頲 456 이족 吏族 120 이직 吏職 222 이향죄인 移鄕罪人 인리 人吏 113 인리층 人吏層 119 인보조직 隣保組織 216 일리천전역 一利川戰役 272 일품군 一品軍 296, 318, 324, 325, 327, 330, 334, 335 임간 林幹 357 임내 任內 197 입사직 入仕職 110,119

[ㅈ]

작직 爵職 42 잡과 雜科 369, 394, 407, 419, 429 잡권무 雜權務 121 잡로 雜路 367 잡로의 승진 雜路의 昇進 6 잡류 雜類 120, 341, 405 잡류층 雜類層 119 406 잡척 雜尺 342 장 莊 192, 193, 200, 201 장고 掌固 113

장군 將軍 223 전의시 典醫寺 397, 429 장군방 將軍房 5 전장대 田匠隊 342 장단도 長湍道 246 전정 田丁 193 장리 長吏 221 전정체립 田丁遞立 140,141 장상장교 將相將校 340 전중시어사 殿中侍御史 84 장생서 掌牲署 101 전호 佃戶 336 장서기 掌書記 228 점검군 點檢軍 350 장시자 掌試者 434 절도사 節度使 249, 319, 321 장위부 掌衛部 절도사제 節度使制 164,304 284 장정 ■丁 391,406 절제사 節制使 213 장정 莊丁 202 절충도위 折衝都尉 317 장주사 掌奏事 54 절충부 折衝府 283, 294, 317 정광 正匡 125,126 제부 宰府 35, 142, 144, 153, 154 재상 宰相 32,142 정군방정인 正軍訪丁人 328 재신 宰臣 32, 37, 46, 142, 143, 148 정규음서 定規蔭敍 446 재신 5직 宰臣 五職 115 정노군 精弩軍 357,359 재5 宰五 115,142 정당문학 政堂文學 32,114,115,142 재5추7 宰五樞七 143 정두사 淨兜寺 318 재추 宰樞 2, 10, 113, 134, 143, 144, 정문 鄭文 405 정방 政房 28,37 151 재추소 宰樞所 70 정사색 淨事色 107 정요업 政要業 394.399 재추양부 宰樞兩府 23,30,48,52 재추중심 宰樞中心 145 정요업감시 政要業監試 398 정용군 精勇軍 4,289.296,297,309, 재추직 宰樞職 111,114~117 310, 318, 322, 325 ~ 330, 332 ~ 334, 340, 재추합좌제 宰樞合坐制 74 재추회의 宰樞會議 143,144 351 저작국 著作局 101 정직문무관 正職文武官 359 적현 赤縣 238, 240, 241 제고사 祭告使 250 전구서 典廐署 101 제과 制科 385 전군 佃軍 335 제관전 諸館殿 113 제기도감판관 祭器都監判官 120 제단사 諸壇史 403 전리사 典理司 47 전목사 典牧司 103 전목서 典牧署 101 제단직 諸壇直 120 제량직 諸陵直 전라주도 全羅州道 253 120 전리 電吏 119,402 제사 諸司 99 제사도감각색 諸司都監各色 66,99, 전리 典吏 429 전법사 典法司 47 103, 120 제성 諸城 337 전서박사 篆書博士 429 제술과(업) 製述科(業) 5,369,386~ 전시 殿試 383 전운사 轉運使 162, 165, 166 390, 414, 419, 427

제술업감시 製述業監試 주현군 州縣軍 5,112,313,316,322, 373, 386 제시 諸寺 1 324, 325 제주진 諸州鎭 337 주현제 州縣制 236 제찰사 提察使 중간기구 中間機構 3,236 253 제평장사 諸平章事 115.142 중군 中軍 272,273 조가전 朝家田 335 중금군 中禁軍 288 조부 調府 58 중대성 中臺省 49, 50 조위부 調位府 57, 58 중랑장 中郎將 340 조위총 趙位寵 중방 重房 5,37 348 조음 祖蔭 중서령 中書令 447 25, 114 조장 租藏 2, 159, 161, 185 중서문하성 中書門下省 1,12,23,25, 조종묘예음서 祖宗苗裔蔭敍 445 28, 35, 37, 86, 113~115, 142, 143, 152, 154 조창 漕倉 중서성 中書省 1,24,25,28,37 161 존무사 存撫使 170 중서시랑평장사 中書侍郎平章事 종정시 宗正寺 중서평장사 中書平章事 114 100 좌강 左綱 중추원(추밀원) 中樞院(樞密院) 1,22, 272, 273 좌군 左軍 35, 48~50, 53, 56, 57, 113~115, 142, 143, 5, 340, 341, 360 좌맹군 左猛軍 340,341 148, 152 좌복야 左僕射 114 증직 贈職 114 좌우복야 左右僕射 43,44 지개성부사 知開城府事 239 좌우위 左右衛 4,271,281,291,351 지공거 知貢擧 381, 433, 434, 436 좌우집정 左右執政 19.24 지도성사 知都省事 115 좌주 座主 435,436 지리업 地理業 394, 396, 397 좌창 左倉 지문하성사 知門下省事 114, 115, 142 61 주금공 呪噤工 지사군 知事郡 397 182 주금박사 呪噤博士 397 지사부 知事府 182 주금사 呪噤師 397 지성사 知省事 114 주금업 呪噤業 394, 396 지역촌 地域村 206, 207, 210, 215, 221 《주례》《周禮》 399 지원사 知院事 114 주리 州東 221, 223 지전 紙田 205 주목 主牧 지제고 知制誥 182 96, 97 주보 注寶 지주군 知州郡 119 173 지주부군 知州府郡 112 주부군현사 州府郡縣史 403 주선 注膳 119,402 지천군 支天事 273, 278 《주역》 《周易》 393 직숙원리 直宿員吏 48 주진군 州鎭軍 6,112,312,331,338, 직역 職役 354 직주제 直奏制 344, 348 145 주진둔전군 州鎭屯田軍 342,350 직첩관계 直牒關係 3, 175 주진입거군인 州鎭入居軍人 307,349 직학사 直學士 114,115 주현 主縣 3,236,312 직한림 直翰林 97

진 津 205	철행 綴行 436
진 鎮 160	철환 鐵絙 347
진각성 珍閣省 10	첨사부 詹事府 76
진강정 津江丁 342	첩서 簽書 51
진부장 鎭副將 421	침서원사 簽書院事 114
진수군 鎭守軍 318, 322, 323	첨서추밀원사 簽書樞密院事 54
진장 鎭將 340, 343	첨설직 添設職 121, 124
진장사 鎭將使 337	첨의 僉議 71
진재 眞宰 35	첨의부 僉議府 29, 37, 47, 70
진척 津尺 205	첩경 貼經 390, 393, 394
진촌주 眞村主 336	청야전술 淸野戰術 346
집정 執政 19,21	청요직 淸要職 90,111
	초군 抄軍 5,340,341,360
[ㅊ]	초맹군 抄猛軍 340, 341
	초사직 初仕職 427, 439
차촌주 次村主 336 참군사 叅軍事 421	초음직 初蔭職 438, 454
참군사 叅軍事 421	초직 初職 120
참내직 叅內職 116	촌 村 206, 208, 215, 216
참상 叅上 111, 113, 134	촌락 村落 206
참상관 叅上官 118, 424	を류2・3
참상직 衆上職 110, 116, 117	촌장 村長 205, 208, 216~218, 335 촌전 村典 192
참역 站役 205	촌전 村典 192
참외 叅外 111, 113, 134	촌정 村正 206, 208, 217, 218, 335
참외직 察外職 116, 117	촌주 村主 207
참지정사 叅知政事 32, 114, 115, 142	촌주위답 村主位畓 209
참직 祭職 116	총관제 摠管制 265
참질 <i>察</i> 秩 116	총재 冢宰 30 최승로 崔承老 20, 109, 145, 150, 151,
참하직 叅下職 110,116 창부 倉部 10.164	
,	159, 162 최지몽 崔知夢 20
*	최충현 崔忠獻 122
장정 倉正 167, 403 처 處 192, 193, 200, 201	추밀 樞密 52, 143, 148
처간 處于 202	추밀원 樞密院 48, 142, 152
처부음 妻父蔭 447	추밀원집주 樞密院執奏 54
천안도독부 天安都督府 160, 319	キョ7名 樞密七職 115
천역 賤役 352	추부 樞府 143, 153
천우비신 千牛備身 290	추신 樞臣 48, 50, 51, 53, 54
천우위 千牛衛 271, 281, 288, 290, 292,	추7 樞七 115,143
350, 351	춘관시 春官試 376
《철술》 《綴術》 395	춘위 春闡 376

춘장 春場 376 춘주도 春州道 253 춘추관 春秋館 111 《춘추3부》 《春秋三傅》 399 치사직 致仕職 29, 114 친시 親試 382, 413, 435 친어군 親禦軍 287 친종광군 親從將軍 4,285,287 7대조음 七代祖蔭 447 7시 七寺 22,100~102 75도안무사 七十五道安撫使 166,323 7주 안무사 七州安撫使 166 7추 七樞 52

[E]

456

탁음자의 관품 托蔭者의 官品

탁음자 托蔭者 447

태묘서 太廟署 101 태보 太保 113,114 태복감 太卜監 397 태복서 太卜署 101 태복시 太僕寺 100.101 태봉 泰封 1 대봉관제 泰封官制 9 태봉의 제도 泰封의 制度 125 태부 太傅 113,114 태부시 太府寺 100 태사 太師 113,114 태사국 太史局 101 태상시 太常寺 100, 101 태악서 太樂署 태위 太衛 114 태의서 太醫署 101 태의업 太醫業 296 태조공신(음) 太祖功臣(蔭) 457,458 토성리민 土姓吏民 193,194 통주토부서 通州都部署 343 투화군 投化軍 349 특사음서 特賜蔭敍 446,452

[교]

판관 判官 228, 421 판관직 判官職 36 판도사 版圖司 47 판원사 判院事 114,115 8도관찰사제 八道觀察使制 178 8도제 八道制 237 8목 八牧 2,112 팔좌 八座 43 패강진 浿江鎭 163 평양대도호부 平壤大都護府 319 평장사 平章事 32, 33 포차 砲車 347 품관 品官 121, 439 품관직 品官職 110 품군 品軍 332 풍헌관 風憲官 87

[ㅎ]

하론업 何論業 394, 398 하전 下典 119 학사 學士 434 학사원 學士院 93 한림원 翰林院 93,94,96,97,113,420 한언공 韓彦恭 22 한직 限職 367 한품서용 限品叙用 403 한품제 限品制 429 합문지후 閤門祗侯 116 항마군 降魔軍 357, 358, 360 향 鄕 3, 192, 193, 209, 405 향공 鄕頁 6,370,371 향공시 鄕貢試 373, 375, 382, 386, 394 향공진사 鄕頁進士 226 향리 鄕吏 120, 136, 221, 222, 234 향리공복 鄕吏公服 228 향리제 鄕吏制 208,223

448

향리직 鄕吏職 164 형음 兄蔭 447 향리직제 鄕吏職制 223, 225 호구 戶口 193 향리층 鄕吏層 222 호등제 戶等制 107 향사리장 鄕社里長 213 호명법 糊名法 391 향사리장제 鄕社里長制 213 호부 戶部 2,45,62,164 향역 鄕役 222 호장 戶長 164, 167, 234 향직 鄕職 217 호정 戶正 403 호족 豪族 향직제도 鄕職制度 227 222, 335 향직화 鄕職化 128 호족연합정권 豪族聯合政權 223 해군 海軍 281, 290, 340 호족연합정권설 豪族聯合政權說 13 해군장군 海軍將軍 280,281 홍로시 鴻臚寺 100 해령 海領 4, 290 홍문관 弘文館 113 행군 行軍 341 회시 會試 382,383 행수법 行守法 133,134 회의도감 會議都監 104~106 행정촌 行政村 211,221 훈공음서 勳功蔭敍 행정촌제 行政村制 212 훈직 勳職 123 허재 許載 훈직제도 勳職制度 152 457 허직 虛職 121 흑대 黑帶 116 현리 縣吏 흥위위 興威衛 4, 263, 271, 281, 291, 221 현위 縣尉 351 421

집 필 자

개 요 변태섭
I. 중앙의 정치조직
1. 중앙의 통치기구
Ⅱ. 지방의 통치조직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하현강 2. 군현제도 김윤곤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변태섭
Ⅲ. 군사조직
1. 경 군 정경헌 2. 주현군과 주진군 조인성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조인성
Ⅳ. 관리 등용제도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박용운 2. 과거제 박용운 3. 음서제 김용선

한 국 사

13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1993년 12월 24일 1993년 12월 28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발행 (No. 93-14-7-38)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위원장 박 영 석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